캘리포니아 주

총선거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정확성 증명서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인 본인 Debra Bowen은 이 안내서에 포함된 법안들이 2010년 11월 2일에 실시될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출되고, 이 안내서가 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10일에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의 대문장을 날인합니다.

Debra Bowen
총무처장관

총무처장관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은 유권자 등록을 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총무처장관실은 여러분의 결정을 돕기 위해 이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제작했으며, 이 안내서에는 Edmund G. Brown Jr. 법무장관이 작성한 법안 명칭과 요약, 법률 분석가인 Mac Taylor가 작성한 법률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납세자에 대한 잠재적 비용,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작성한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법제 전문가인 Diane F. Boyer-Vine이 작성/교정한 발의 법안 전문,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주 인쇄국장 대리인 Kevin P. Hannah의 감수를 받아 인쇄되었습니다.

주 전체 입후보자와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는 이 안내서는 각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기재될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비-주 전체 입후보자와 법안들에 대한 정보는 해당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 소책자에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의 8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투표는 쉽게 할 수 있고,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을 통해서, 또는 해당 지역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하는 마감일은 10월 26일입니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 선거일에 선거 관리인이 되어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선거관리 담당관이 집계를 완료할 때까지 투표용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전화, 브로셔, 포스터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 마감일과 투표권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 토의 그룹을 조직하거나 친구, 가족,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입후보자와 쟁점에 대해 다른 유권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과 투표 장소, 그리고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866) 575-1558로 전화하거나 *www.so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선택권과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특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선거에서는 단지 몇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든 또는 우편투표를 하든, 잠시 시간을 내셔서 각 입후보자와 투표 법안을 주의해서 읽어보고 여러분의 투표권에 대해 알아둘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 주 전체 법안에 대한 정보를 보십시오: *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운동 기부금과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cal-access.sos.ca.gov/campaign*
-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ppl.htm*
- 우편투표용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htm*
- 선거일에 투표가 마감된 후에 선거 결과를 생중계로 보십시오: *http://vote.sos.ca.gov*

목차

페이지

간편 참조 안내서 4

발의안

18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10
19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12
20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18
21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24
22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30
23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38
24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46
25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52
26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56
27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62

정당 취지문 68

주 전체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 70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72

대법원 판사 90

법안 전문 92

유권자의 권리 127

정보 페이지

투표 법안 찬반 의견에 대한 설명 9
보충 유권자 정보 9
주민 발의안 소개 9
판사 유임 선거 소개 89
선거구 단위의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89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122
투표소 위치 확인 122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하기 123
유권자 등록 정보 123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124
우편투표 126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를 위한 특별 투표 절차 126

간편 참조 안내서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발의안
제19호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21세 이상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소지, 재배 또는 운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치에 따라 매년 수억 달러의 세금 및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매년 수천만 달러의 교도 비용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21세 이상인 사람은 주법에 따라 제한된 양의 마리화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 및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상업적 활동들을 허가, 규제 및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여전히 불법입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리화나의 소유 및 재배와 마리화나와 관련된 상업적 활동들은 주법에 따라 계속 불법으로 간주되나, 단 기존의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주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찬반 의견

찬성 마리화나에 대한 상식적인 통제. 실패한 마리화나 금지법에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마리화나를 술처럼 통제하고 과세합니다. 마리화나는 성인에게 *만* 제공합니다. 마리화나를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제공하면 형사 처벌이 추가됩니다. 마약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도로 및 직장 안전을 위한 법을 집행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합니다.

반대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타기 직전까지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안전이 위험에 처합니다. 9,400,000,000.00달러의 학교 지원 자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와의 계약,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보안관, 경찰서장, 소방대원, 지방검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19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James Rigdon
Yes on Proposition 19
1776 Broadway
Oakland, CA 94612
(510) 268-9701
info@taxcannabis.org
www.yeson19.com

반대

No On Proposition 19—
공공안전 우선
info@NoOnProposition19.com
www.NoOnProposition19.com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20호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선출된 하원의원들을 하원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그러한 권한을 최근에 승인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로 이관하며, 이 위원회는 민주당원, 공화당원, 그리고 양당에 속하지 않은 대표들을 포함하는14명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 선거구 재조정 비용에는 상당한 순변동이 없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정할 책임이 2008년에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설치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이번 선거에 제출된 발의안 제27호도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다룹니다.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20호와 발의안 제27호를 모두 승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찬성"투표를 받은 법안만이 발효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정할 책임을 주의회가 계속 보유합니다.

찬반 의견

찬성 납세자와 선의의 정부 단체들은 유권자가 승인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주의회 및 연방의회에 대한 공정한 선거구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20호를 지지합니다. 정치인들은 연방의회 선거구 경계를 "의석이 보장되도록" 설정하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발의안 제20호에 찬성하십시오.

반대 발의안 제20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 개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20호는 책임을 지지 않는 14명의 관료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는 실업, 범죄, 엄청난 부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의미한 책략을 중지시키십시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20, No on 27—Hold Politicians Accountable, 납세자, 고령자, 선량한 정부 단체, 소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 연합
925 University Ave.
Sacramento, CA 95825
(866) 395-6121
email@yes20no27.org
www.yesprop20.org

반대

No on 20
6380 Wilshire Boulevard, Suite 1612
Los Angeles, CA 90048
(323) 655-4065
www.noprop20.org

발의안 제21호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상업용 차량, 트레일러 및 이동주택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이 면제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차량등록에 대한 추가요금에 의해 주정부 수입이 매년 약 5억 달러 증가합니다. 이 수입은 기존 자금원의 일부를 상쇄한 후에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해 매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개인이 차량을 등록할 때 납부하는 금액에 18달러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요금 수입은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존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추가요금이 적용되는 차량들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진입하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금원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제공 받습니다. 주립공원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료와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캘리포니아 주의 공원과 해변은 위험에 처해 있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21호는 공원을 개방하고, 관리를 개선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탁기금을 설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공원과 관련된 관광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정치인들의 자금 전용을 금지하고, 연례 감사와 주민들의 감독을 요구합니다.

반대 발의안 제21호는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려는 사기적인 계획입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이미 기존의 공원 자금을 다른 낭비적인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공원 자금은 증가하지 않고 자동차세만 증가합니다. 자동차세와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해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제21호에 반대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21: Californians for State Parks and Wildlife Conservation
info@yesforstateparks.com
www.YesForStateParks.com

반대

Rob Stutzman
Californians Against Car Taxes, No on Proposition 21
1415 L Street, Suite 430
Sacramento, CA 95814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22호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주정부가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세금 수입의 분배를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 일반기금 지출 감소 및/또는 주정부 수입 증가가 발생합니다(아마도 매년 10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교통 프로그램과 지역 재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 연료세 및 지방 재산세 수입을 사용 또는 전용하는 주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 연료세 및 지방 재산세 수입에 대한 주정부의 현재 권한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22호에 찬성하면 주의 정치인들이 지방정부의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2호는 유권자들이 교통에만 사용하도록 승인한 휘발유세를 주정부가 전용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발의안 제22호는 다음과 같은 지역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9-1-1 긴급 대응, 경찰, 소방, 도서관, 대량 수송 시설, 도로 보수. California Fire Chiefs Association,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California Library Association이 이 법안을 지지합니다.

반대 캘리포니아 주의 교사, 소방대원, 간호사, 납세자 옹호 단체들이 발의안 제22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22호가 통과되면 공립학교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잃게 됩니다. 발의안 제22호는 재개발 기관들과 그들의 친구인 개발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및 자연재해와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박탈합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법안입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22, Californians to Protect Local Taxpayers & Vital Services
1121 L Street #803
Sacramento, CA 95814
(888) 562-5551
info@savelocalservices.com
www.SaveLocalServices.com

반대

No on 22—Citizens Against Taxpayer Giveaways,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후원
Joshua Heller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www.votenoprop22.com

발의안 제23호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재정적인 영향: 온실가스 규제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이 주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소규모의 순증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입에 상당한 순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주법("주하원 법안 제32호")에 의해 승인된 특정한 기존의 규정 및 제안된 규정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 주의 실업률이 일 년 동안 5.5 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계속 효력이 정지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주하원 법안 제32호에 의해 승인된 조치들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23호에 찬성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에너지세 인상을 방지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 에너지 및 수자원법을 보존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지 못하는 자진해서 부과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3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라질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구합니다. www.yeson23.com

반대 텍사스 주의 석유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 에너지 및 대기 오염 기준을 무효화하기 위해 발의안 제23호를 작성했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대기 오염을 증가시켜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값비싼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풍력 및 태양열 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와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가 발의안 제23호에 반대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23—납세자, 소기업, 소방대원, 노동자, 농업 종사자, 교통 종사자, 식품 생산자, 에너지 및 임업회사, 대기의 질 담당관 연합
1215 K Street, Suite 2260
Sacramento, CA 95814
(866) 247-0911
info@yeson23.com
www.yeson23.com

반대

No on 23: Californians to Stop the Dirty Energy Proposition
(888) 445-7880
info@factson23.com
Factson23.com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24호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재정적인 영향: 일부 사업체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함으로써 2012-13회계연도까지 매년 약 13억 달러의 주정부 수입이 증가합니다. 2010-11회계연도와 2011-12회계연도에는 수입이 비교적 적게 증가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3개 사업세 조항이 2008년과 2009년의 법률 변경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1) 사업체가 한 연도의 손실을 다른 연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제한되고, (2) 다주적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결정할 때 3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계산해야 하고, (3) 사업체는 관련 사업체들과 세액공제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최근에 변경된 3개 사업세 조항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유지되는 경우, (1) 사업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 연도의 손실을 다른 연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고, (2) 대부분의 다주적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단일 매출 요소에만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3) 사업체는 관련 사업체들과 세액공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24호는 부유한 다주적 기업에 17억 달러의 새로운 특별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새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으면서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소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공립학교, 의료 및 공공안전을 세법의 허점보다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공정성법인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반대 캘리포니아 주에는 일자리 세금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우리의 교실을 위해 단 한 푼도 보장하지 않고, 학교와 중요한 서비스에 사용할 장기적인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이 법안은 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창출에 과세하고, 일자리를 캘리포니아 주 외부로 내보내어 144,000개의 일자리를 잃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발의안 제24호가 부과하는 새 세금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24호에 반대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24, the Tax Fairness Act,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후원
Richard Stapler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www.YESPROP24.ORG

반대

No on 24—Stop the Jobs Tax, 납세자, 고용주, 소기업, 전직 교육가, 첨단기술 및 생물공학 단체 연합
111 Anza Boulevard, #406
Burlingame, CA 94010
(800) 610-4150
info@StopProp24.com
www.StopProp24.com

발의안 제25호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주의회는 예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일의 급여 및 경비를 영구적으로 몰수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향후 수년 내에 주 예산의 내용은 이 법안의 용이한 의회 표결 요건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정도는 주의회의 미래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연간 예산 법안을 주지사에게 회송하기 위한 주의회 상하 양원의 표결 요건이 각각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연간 예산 법안을 주지사에게 회송하기 위한 주의회 상하 양원의 표결 요건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3분의 2로 유지됩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25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손상된 예산 승인 과정을 개혁합니다. 예산 승인이 지연되는 일수에 대해 의회 의원들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중지시킴으로써 의원들에게 예산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의원 과반수의 표결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하여 예산의 교착상태를 타파할 수 있으나, 세금 인상에 대한 2/3의 표결 요건은 완화하지 않습니다.

반대 정치인들과 특별이익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세금을 인상하고 나쁜 법률을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안 제25호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정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낭비적인 경비 계정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발의안 제25호에 반대하여 세금 인상과 낭비적인 지출에 반대할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25, Citizens for an On-Time Budget, 교사, 간호사, 소방대원 및 기타 공무원 단체가 후원
Andrea Landis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www.YESPROP25.ORG

반대

Stop Hidden Taxes—No on 25/Yes on 26, 납세자, 소기업, 환경 전문가, 선량한 정부 단체, 소수민족, 농장주 및 포도원 소유주 연합
(866) 218-4450
info@nomorehiddentaxes.com
www.no25yes26.com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제26호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재정적인 영향: 통치기구와 유권자들의 결정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감소합니다(매년 최대 수십억 달러). 교통 지출과 주 일반기금 비용(매년 10억 달러)이 증가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세금의 정의가 확대되어 현재 요금으로 간주되고 있는 많은 납부금들이 세금에 포함됩니다. 그 결과,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또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제안들이 증가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요금과 세금에 대한 현재의 헌법상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26호에 찬성하면 주와 지역의 정치인들이 "요금"을 세금으로 위장하고 세금 인상을 통과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회피함으로써 식품과 휘발유 같은 상품들에 대한 숨겨진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반대자들에 의해 오도되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6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엄격한 환경 및 소비자법을 보존하고, 숨겨진 세금으로부터 납세자와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반대 대기업인 석유회사, 담배회사, 주류회사들은 그들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비용을 유권자들이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일반대중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밀실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오염자들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소방대원, 경찰관, 간호사, Sierra Club 이 모두 발의안 제26호에 반대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Stop Hidden Taxes—No on 25/ Yes on 26, 납세자, 소기업, 환경 전문가, 선량한 정부 단체, 소수민족, 농장주 및 포도원 소유주 연합
(866) 218-4450
info@nomorehiddentaxes.com
www.no25yes26.com

반대

Doug Linney
Taxpayers Against Protecting Polluters
1814 Franklin Street, Suite 510
Oakland, CA 94612
(510) 444-4710
stopprotectingpolluters@gmail.com
www.stoppolluterprotection.com

발의안 제27호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주 하원, 상원, 조세형평국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권한을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를 정할 책임이 있는 선출된 주 하원의원으로 통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내년까지 약 1백만 달러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10년에 한 번씩 이 비용이 수백만 달러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의회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경계를 정할 책임이 주의회로 반환됩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에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설치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폐지됩니다. (이번 선거에 제출된 발의안 제20호도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다룹니다.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27호와 발의안 제20호를 모두 승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은 법안만이 발효됩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의회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경계를 정할 책임을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계속 보유합니다.

찬반 의견

찬성 발의안 제27호에 찬성 투표를 하여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무모한 의석 재분배 책략을 종료시키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파산했고,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실업률은 매우 높습니다. 발의안 제27호는 유권자들이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무의미한 일에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라고 주장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발의안 제2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반대 발의안 제27호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승인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의석이 보장되도록 선거구 경계를 설정할 권한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한 권한을 되찾기 위해 자금을 최대한 지출하고 온갖 주장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납세자 단체, 선의의 정부 단체, 고령자들은 권한을 장악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주장합니다. 발의안 제27호에 반대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Yes on 27
10940 Wilshire Boulevard, Suite 2000
Los Angeles, CA 90024
(310) 576-1233
www.yesprop27.org

반대

Yes on 20, No on 27—Hold Politicians Accountable, 납세자, 고령자, 선량한 정부 단체, 소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 연합
925 University Ave.
Sacramento, CA 95825
(866) 395-6121
email@yes20no27.org
www.noprop27.org

투표 법안 찬반 의견에 대한 설명

총무처장관실은 투표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은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제공합니다.

한 법안에 대해 복수의 찬반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법률은 주의회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주의회 의원들이 작성한 찬반 의견, 그리고 주민 발의 또는 주민투표 법안에 대해서는 주민 발의 또는 주민투표 법안의 지지자들이 작성한 찬반 의견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한 차후의 우선순위는 성실한 시민단체와 개인 유권자 순으로 부여됩니다. 제출된 찬반 의견의 문구는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충 유권자 정보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8월의 인쇄일까지의 최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주 전체 법안이 추가로 투표에 회부할 자격을 얻는 경우에는 보충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제작하여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이 보충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www.voterguide.sos.ca.gov*에서 그러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또는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여 추가 안내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서는 지역 도서관과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도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 견본은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서도 제공됩니다.

주민 발의안 소개

종종 "직접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주민 발의 과정은 법안을 주 전체 투표에 회부하는 주민들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법률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주민 발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지지자들은 가장 최근의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가 받은 투표 수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의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 발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지지자들은 가장 최근의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가 받은 투표 수의 8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의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 발의안은 총 투표 수 중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얻으면 발효됩니다.

발의안

제18호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제18호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발의안

제19호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 21세 이상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소지, 재배 또는 운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지방정부가 마리화나를 상업적으로 생산 및 유통하고, 21세 이상 된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규제 및 과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학교 내에서 소지하거나, 대중 앞에서 사용하거나,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흡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계속 금지됩니다.
- 고용주가 마리화나에 대처하는 권한을 업무 성과가 실제로 저하되는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이 법안의 재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방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법을 계속 시행하는 정도, (2)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허가, 규제 및 과세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한 마리화나 범죄자들을 구금 및 감독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매년 수천만 달러 절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및 수수료 수입이 매년 수억 달러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연방법.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불법약물로 분류하고 있고 마리화나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연방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주 및 지방의 법집행기관들과 공조하여 집행합니다.

주법 및 발의안 제215호. 현행 주법에 의하면, 마리화나의 소유, 재배 또는 유통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입니다. 마리화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처벌은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유하는 것은 벌금형을 받는 경범죄이나,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

1996년 11월에,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재배 또는 소유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발의안 제215호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2005년에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재배 및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환자 및 제공자들을 연방 당국이 계속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무부는 2009년 3월에 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의료용 마리화나 법률들을 준수하는 마리화나 사용 환자와 제공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의안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이 주법을 변경합니다: (1) 21세 이상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마리화나를 소유 및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 (2)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다양한 상업적 활동을 허용. 이러한 주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마리화나 관련 활동은 연방법에 따라 계속 금지됩니다. 이러한 연방법에 의한 금지는 연방기관들이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연방법을 집행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른

모든 주에서는 의료용이 아닌 마리화나와 관련된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정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리화나의 소유 및 재배를 합법화

이 법안에 의하면, 21세 이상 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유, 가공, 공유 또는 운송, (2) 개인 주택 또는 토지 구획(parcel) 당 25평방피트 이하의 사유지에서 마리화나를 재배, (3) 이러한 면적에서 재배하는 살아있는 마리화나 식물과 수확한 마리화나를 소유, (4) 위의 활동과 관련된 물품 또는 설비를 소유. 마리화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이 소비하기 위한 용도로만 소유 및 재배해야 하고, 마리화나의 사용은 주택 또는 "공공장소가 아닌 곳" 에서만 허용됩니다. (한 가지 예외로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유면허 시설에서는 마리화나를 판매 및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량의 마리화나를 소유 및 재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집행기관들은 이 법안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마리화나를 몰수 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이 법안에 의해 허용된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업무 성과를 저하시키는 마리화나 소비에 대처하는 기존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마리화나의 소유 및 재배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의 법률들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세 이상인 사람이 18세와 20세 사이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러한 법률 위반을 할 때마다 카운티 구치소에 최대 6개월 동안 수감되고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성인을 처벌하는 기존의 형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리화나와 관련된 상업적 활동에 대한 허가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와 관련된 다양한 상업적 활동을 허가, 규제 및 과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주정부도 그러한 활동을 허가, 규제 및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규제.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와 관련된 상업적인 활동(마리화나의 재배, 소유, 유통, 운송 및 소매 판매 포함)에 대한 조례 및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는 21세 이상인 사람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에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그러한 시설의 위치, 규모, 운영 시간, 간판 및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마리화나를 한 장소에 있는 유면허 마리화나 관련 시설로부터 다른 장소에 있는 유면허 마리화나 관련 시설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의 어떤 장소들에 대해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주 또는 국가 사이에 마리화나를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시설에서 마리화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으나, 실수로 마리화나를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은 유면허 마리화나 관련 시설을 소유, 운영, 지원, 출입하거나, 또는 그러한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1년 동안 금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도 마리화나와 관련된 특정한 활동에 대해 처벌을 추가하거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유면허 마리화나 관련 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정부 조례를 위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에 상관없이, 주정부는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대마초의 생산을 허가할 수 있으며,

발의안 제19호의 전문은 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마리화나 식물의 일종으로서 직물과 종이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이 법안은 유면허 마리화나 관련 시설들이 현재 다른 유사한 업종에 부과되고 있는 모든 연방세, 주세, 지방세 및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허가된 마리화나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일반세, 소비세 또는 양도세,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부과금은 지방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마리화나 규정과 관련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도 이와 유사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의 많은 조항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규정 및 과세와 관련하여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제로 그러한 조치들을 어느 정도까지 취할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지방정부들이 마리화나를 재배 또는 판매할 시설에 면허를 발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판매에 소비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2009년 3월에 발의안 제215호를 준수하는 마리화나 사용 환자와 제공자들을 더 이상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의료용이 아닌 마리화나와 관련된 활동은 계속 금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이 법안에 의해 허용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정부가 계속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정도만큼, 주법에 따라 이 법안이 허용하는 마리화나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도 비용 감소. 이 법안은 주 교도소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마리화나 범죄자의 수와 카운티의 보호관찰을 받거나 주의 가석방 감독을 받는 범죄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약 금액은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구치소의 절약 금액은 마리화나 범죄자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구치소 감방을 현재 구치소 수용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기 석방되고 있는 다른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만큼 상쇄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법집행 비용의 감소. 이 법안은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법원이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절약한 자금을 다른 법집행과 법원 업무를 위해 전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타 재정적인 영향. 또한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다른 주정부와 지방정부 프로그램들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은 마리화나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공공자금으로 제공되는 약물 남용 치료와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얼마나 증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형사범에 대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약물법원 등)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주법에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 및 소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환자 등록 시스템인 주정부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의 비용을 절약하거나 정부의 수입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에 대한 영향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법안에 의해 허용되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부과금, 수수료로부터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는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아래에 설명된 방법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세금.* 마리화나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체들과 동일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마리화나의 판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마리화나 관련 사업체는 주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사업 활동이 타주 주민들의 소비를 유발하는 정도만큼 이 주의 과세 대상 경제 활동을 순증가시킬 것입니다.
- *마리화나에 대한 새로운 세금과 수수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방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활동에 대해 세금, 부과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도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해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로부터 얻는 새로운 수입의 일부는 마리화나 관련 활동에 대한 면허 및 과세를 규제 및 집행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에 의해 상쇄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 집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결정, 그리고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와 과세에 대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부 마리화나 관련 활동의 합법화가 전반적인 사용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수입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주에서 상업용 마리화나 산업이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궁극적으로 매년 수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발의안 제19호의 전문은 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19호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19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19호: 마리화나에 대한 상식적인 통제

현재, 수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이 실패한 마리화나 ("대마초" 라고도 함) 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화나 판매자들은 신분증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마리화나를 술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로 인해 국제 마약 조직이 운영하는 폭력적인 범죄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천 건의 폭력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소비자를 단속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년 140억 달러에 상당하는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으나, 빚에 허덕이는 주정부는 아무 수입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금지법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마리화나를 술처럼 통제 및 과세하기 위해 상식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9호는 마리화나를 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발의안 제19호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성인*만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가정 또는 유면허 시설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의 권리는 보존됩니다.

우리가 술을 통제 및 과세할 수 있다면 마리화나도 통제 및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해 엄격하게 안전을 통제합니다.

발의안 제19호는 마리화나 취중 운전에 대해 계속 엄격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마리화나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장소, 학교 내, 그리고 미성년자 주위에서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의안 제19호는 고용주가 직장에서 약물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존함으로써 직장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주요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FBI에 의하면, 2008년에 61,000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유한 경범죄로 체포되었으나, 60,000건의 폭력범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소비자들을 더 이상 체포하지 않으면 경찰은 매년 수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위협인 폭력범죄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찰, 보안관, 판사들은 발의안 제19호를 지지합니다.

마약 조직과 싸우는 것을 지원합니다.

마리화나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경 외부에 마약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약 조직들은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6,290명의 민간인을 살해했고, 이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마약 조직들은 수입의 60퍼센트를 미국의 불법 마리화나 시장에서 얻습니다.

발의안 제19호는 마리화나를 통제하여 마약 조직에 대한 자금 유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발생시켜 중요한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으므로, 주정부가 예산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반대중이 납부하는 세금과 요금을 인상하고 중요한 서비스를 축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년 140억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가 거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9호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에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우리의 중요한 서비스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세금 징수 기관인 조세형평국은 마리화나에 과세하면 연간 14억 달러의 수입을 달성할 수 있고 이 수입을 사용하여 일자리, 의료, 공공안전, 공원, 도로, 교통 등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금지법을 개혁합시다.

마리화나의 불법화는 1억 명의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화나를 통제하고, 미성년자들이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마약 조직을 약화시키고, 경찰력을 폭력범죄에 집중시키고, 수십억 달러의 수입과 절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화나를 통제하기 위한 상식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9호에 찬성하십시오.

www.taxcannabis.org

JOSEPH D. McNAMARA, 산호세 경찰국장(은퇴)
JAMES P. GRAY,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은퇴)
STEPHEN DOWNING, 부국장(은퇴)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 발의안 제19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캘리포니아 주 공공안전의 리더인 저희는 발의안 제19호가 결함이 있는 공공정책이고, 우리의 도로, 직장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훼손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 발의안에 투표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발의안 제19호가 마리화나 취중 운전에 대해 엄격한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의안 제19호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타기 직전까지 마리화나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과는 달리, 발의안 제19호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에게 "마리화나 취중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취중 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 MADD)이 발의안 제19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19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고용주가 직장에서 약물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업회의소에 의하면, 발의안 제19호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할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며,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회사들이 연방의 약물이 없는 직장 기준이나 연방 계약에 대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대원 협회는 이 단 한 번의 법안 기초 실수로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발의안 제19호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경찰, 보안관, 약물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주 전체 단체들은 유권자들에게 모두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의안 제19호가 통과되면 도로, 직장, 지역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STEVE COOLEY, 지방검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KAMALA HARRIS, 지방검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KEVIN NIDA, 회장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19호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19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하더라도 발의안 제19호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주민발의안을 기초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몇 가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발의안 제19호는 버스 및 트럭 회사들이 운전기사들에게 약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은 발의안 제19호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회사들은 "약물에 취한" 운전기사들이 사고를 낼 때까지(사고를 내기 전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현재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약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발의안 제19호가 통과되는 경우에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은 학교 내에서 또는 실제로 운전을 하는 동안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나, 마리화나를 흡입한 후에 학교에 일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공교육감인 John Snavely 교육학박사는 발의안 제19호가 K-12 학교에 제공할 94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우리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 제공할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들은 주정부의 예산위기로 인해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업회의소는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가 명시한 약물이 없는 직장 요건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공공 계약과 보조금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화장품이나 학교 캔디바를 파는 것을 허용하는 고용주들은 이제 "면허"가 있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마리화나를 파는 것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출근한 근로자에게서 술 또는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경우, 고용주는 그 직원에게 위험하거나 민감한 일(병원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거나 중장비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9호가 통과되는 경우에는 마리화나에 취한 근로자를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일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경찰국장 협회는 발의안 제19호의 지지자들이 "마리화나 취중 운전"을 구성하는 기준을 "깜빡 잊고"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혈액검사 결과 마리화나에 취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지사 입후보자인 Meg Whitman과 Jerry Brown은 각각 발의안 제19호를 검토한 후에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반대" 투표를 할 것을 촉구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지사 입후보자인 Kamala Harris와 Steve Cooley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19호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이 이 법안을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9호는 어떤 방법으로든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19호는 단순히 우리의 도로, 직장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악화시키는 뒤죽박죽인 악몽 같은 법안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발의안 제19호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DIANNE FEINSTEIN, 연방 상원의원
LAURA DEAN-MOONEY, 전국 회장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 발의안 제19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선택은 명확합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진정한 통제, 또는 현상 유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정직해집시다. 우리의 마리화나법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마리화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음주를 금지했던 것처럼, 마리화나를 불법화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화는 폭력적인 마약 조직이 운영하는 범죄시장을 형성했고, 경찰력을 낭비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고갈시켰습니다. 발의안 제19호는 보다 정직한 정책이고, 마리화나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발의안 제19호는 마리화나를 술처럼 통제하고, 성인들만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운전 및 직장 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경찰이 주요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진정한 통제, 또는 현상 유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술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폭력범죄를 방지하게 하거나, 또는 수만 명의 비폭력적 마리화나 소비자들(그 중 많은 수가 미성년자)을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 경찰력을 계속 낭비하는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화나를 통제하여 마약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불법화함으로써 폭력적인 갱단들에게 계속 자금을 제공하는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화나에 과세하여 중요한 서비스에 제공할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수입을 거부하는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발의안 제19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JOYCELYN ELDERS, 연방 보건부장관(은퇴)
ALICE A. HUFFMAN, 회장
California NAACP
DAVID DODDRIDGE, 마약 전담 형사(은퇴)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발의안

제20호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선출된 하원의원들을 하원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그러한 권한을 최근에 승인된 14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로 이관합니다.
-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5명의 민주당원, 5명의 공화당원, 그리고 양당에 등록하지 않은 4명의 유권자로 구성됩니다.
- 새로 제안되는 선거구 경계는 3명의 민주당원, 3명의 공화당원, 그리고 양당에 속하지 않은 3명을 포함하는 9명의 위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 선거구 재조정 비용에는 상당한 순변동이 없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주의회의 책임을 박탈합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유권자들이 주 공직에 대한 선거구 경계를 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정합니다.

배경

주 헌법은 주정부가 주하원, 주상원, 주 조세형평국(BOE),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한 경계선을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과정을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연방법을 준수하려면 인구 수가 대략 같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주의회와 BOE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최근의 변경사항. 과거에는 위에 기술된 모든 공직에 대한 선거구 경계가 주의회가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된 법안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주의회와 주지사가 선거구 재조정 계획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선거구를 재조정했습니다.

유권자들은 2008년 11월에 발의안 제11호를 통과시켜, 2010년 인구조사 이후부터 주하원, 주상원 및 BOE에 대한 새 선거구 경계를 정하기 위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10년마다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14명의 등록 유권자(민주당원 5명, 공화당원 5명, 기타 4명)로 구성되며, 위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규칙에 따라 선정합니다.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를 정할 때는 연방법의 요건과 기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요건 중에는 특정한 정당,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 단일 선거구 내에서 시, 카운티, 이웃 및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리적 무결성을 유지. (이 위원회는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를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지리적으로 밀집된 선거구를 개발
- 1개의 상원 선거구 내에 2개의 하원 선거구를 설치하고 1개의 BOE 선거구 내에 10개의 상원 선거구를 설치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현재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과정.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435개의 연방 하원의원 의석 중 53개를 할당 받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이 53석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한 재조정 과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방 하원의원 의석에 대한 선거구 재조정 계획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1호는 주의회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할 때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들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주의회는 이제 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밀집된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고, 주의회가 정의하는 인근 지역, 이웃,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리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1호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를 설정할 때 특정한 정당,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제안.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변경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의회로부터 박탈하고, 그 대신에 이 권한을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다른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처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위원회는 정당,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시, 카운티, 이웃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지리적 무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11호와 마찬가지로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를 정의. 이 법안은 발의안 제11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기준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도,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과 주하원, 주상원 및 BOE 의석 모두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를 정의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란 "공통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접 인구"라고 정의됩니다.

이번 선거에 회부된 2건의 선거구 재조정 관련 법안. 2010년 11월의 선거에는 이 법안 이외에도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다루는 다른 법안(발의안 제27호)이 제출됩니다. 이 2건의 발의안과 현행법의 주요 조항들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2건의 법안을 모두 승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은 법안만이 발효됩니다.

발의안 제20호의 전문은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1

선거구 경계선 설정에 대한 현행법과 2010년 11월 선거 발의안들의 주요 조항 비교

	현행법	발의안 제20호	발의안 제27호
주하원, 주상원, 조세형평국 (BOE)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관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a]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주의회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관	주의회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주의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에 대한 정의[b]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주의회가 정의	"공통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접 인구"	주의회가 결정

[a] 이 위원회는 2008년에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b] 현행법과 발의안 제20호 및 발의안 제27호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를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발의안 제11호 이전과 현행법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 비용. 주의회는 2001년에 선거구 재조정 전용 소프트웨어 및 장치 구입과 같은 선거구 재조정 업무만을 위해 자체 예산에서 약 3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이외에도,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주의회 정규 직원, 시설 및 장치(주의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009년에는 발의안 제11호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따라 2010년 인구조사와 관련된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주의회가 주정부의 일반기금에서 3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청 및 선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주정부 기금에서 약 300만 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미래의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서 이 위원회에 최소한 10년 전 수준의 자금(인플레이션을 반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의회는 현재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제공할 자금을 자체 예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이 발의안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 비용. 이 법안은 2008년의 발의안 제11호에 규정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합니다. 이 위원회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주의회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상쇄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한 미래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에 대한 순변동은 아마도 경미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20호의 전문은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0호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20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20호는 주의회 의원들이 연방의회의 친구들을 위해 그들이 유권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더라도 연방의회 의원으로 재선되는 것이 사실상 보장되도록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종료시킵니다.

발의안 제20호는 우리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들이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때 투표를 통해서 쉽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공정한 연방의회 선거구를 설정합니다.

발의안 제20호는 단순히 유권자들이 2008년에 통과시킨 선거구 재조정 개혁(발의안 제11호)을 확대하여 정치인들 대신에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주의회 의원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추가하여 캘리포니아 주 연방의회 선거구 경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공정한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공식 사이트(*www.wedrawthelines.ca.gov*)를 방문하여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2011년 선거구 재조정 준비 작업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발의안 제20호는:

- 공정한 연방의회 선거구를 설정합니다.
- 연방의회 의원들이 유권자들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게 합니다.
- 그들이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때 투표를 통해서 쉽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발의안 제20호에 찬성하여 밀실 거래를 중지시키십시오.

지금은 주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유급 컨설턴트들이 연방의회의 친구들이 재선될 수 있도록 밀실에서 선거구를 설정합니다. 유권자들이 그들을 대표할 의회 의원들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연방의회의 친구들을 위해 유권자들을 선정합니다.

Los Angeles Times와 Orange County Register는 32명의 연방의회 의원들과 다른 정치인들이 재선이 보장되도록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한 정치 컨설턴트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발의안 제20호는 선거구 재조정을 완전히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고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밀실 거래를 종료시킵니다. 발의안 제20호는 비밀 회의 또는 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20호에 찬성하여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정치인들은 재선이 보장되는 경우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발의안 제20호는 공정한 선거구를 설정하므로,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위해서 일하고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어야만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캘리포니아 주가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uben Guerra, Latin Business Association

우리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선량한 정부 단체들은 정치인들에게 공정한 선거구에서 경쟁할 것을 요구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발의안 제20호에 "찬성" 투표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의견을 경시하고 유권자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발의안 제20호에 "반대"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치인 및 특별이익단체와 맞서서 유권자가 승인한 선거구 재조정 개혁을 확대하여 연방의회를 포함시켜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미 위원회를 설치했으므로, 이 위원회가 주의회 선거구는 물론 연방의회 선거구도 설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합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지금은 유권자들이 대표자를 선택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다시 정상화할 때라는 메시지를 정치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발의안 제20호를 지지합니다." —Joni Low, Asian Business Association of San Diego

저희와 동참하여 발의안 제20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YesProp20.org

DAVID PACHECO, 캘리포니아 주 회장
AARP
KATHAY FENG, 집행 디렉터
California Common Cause
JOHN KABATECK, 집행 디렉터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California

★ 발의안 제20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합니다.

발의안 제20호에 대한 유일한 자금 제공자인 Charles Munger, Junior는 아마도 선의를 가진 David Pacheco, Kathay Feng, John Kabateck을 속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0호는 어떤 수준의 공정성도 보장하지 않고, 경쟁적인 선거구를 보장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연방의회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납세자들이 MUNGER의 속임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 개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20호는 책임을 지지 않는 14명의 관료주의자들에게 주민들의 위에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20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기존의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서투른 위장을 더욱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로비스트, 변호사 및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누가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낭비적이고 난해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관료들이 의원 선거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는 실업, 범죄, 엄청난 부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무의미한 정치적인 의석 재분배 책략을 중지시켜야 할 때입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파워 브로커들에게 주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쟁 법안인 발의안 제2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MARK MURRAY, 집행 디렉터
Californians Against Waste
HANK LACAYO, 회장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DANIEL H. LOWENSTEIN, 설립 의장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발의안 제20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선거구 재조정법을 과거로 되돌립니다. 발의안 제20호는 재앙입니다 . . . 이 법안은 반드시 무효화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합니다.

발의안 제20호는 억만장자인 월스트리트의 거물 Charles Munger의 아들인 Charles Munger, Jr.의 발상입니다. MUNGER JUNIOR는 발의안 제20호에 자금을 제공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4명은 모두 합해서 7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는 단지 법안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서 330만 달러를 제공했고, 선거일까지 몇 배나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인물입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20호가 통과되면 납세자들이 Munger Junior 대신에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20호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발의안 제20호를 경쟁 법안인 발의안 제27호와 비교해보십시오.

첫째로, 초당파적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27호에 대해 찬성하면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에 대한 법률분석가와 재정국장의 추정 요약: 10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총 수백만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로, 발의안 제20호는 발의안 제27호가 피할 수 있는 낭비를 단계적으로 추가합니다. Schwarzenegger 주지사는 이미 선거구 재조정 예산을 *2배로 증액*하기 위해 원래의 방법으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하여, 주가 19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을 위해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합니다.

그리고 MUNGER JUNIOR는 발의안 제20호를 통해서 이 낭비적인 관료주의적 위원회를 더욱 확대하기를 원하며,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십시오. 이 법안은 유권자를 차별하는 경제적 선거구를 설정합니다.

발의안 제20호는 선거구 재조정법을 과거로 되돌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나, 발의안 제20호는 모든 선거구(주하원, 주상원, 연방의회 포함)를 소득 수준에 따라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발의안 제20호는 모든 선거구를 "유사한 생활 수준"에 따라 분리하고, 선거구에 "유사한 취업 기회가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20호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차별하는 선거구는 과거의 유물입니다. 발의안 제20호는 선거구 재조정법을 과거로 되돌립니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십시오." —Julian Bond, 명예회장, NAACP

유권자를 차별하는 선거구는 과거 시대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인종,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또는 부의 정도에 따라 선거구를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Munger Junior는 그의 운전기사와 같은 선거구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법안이 암시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에 "컨트리클럽만" 또는 "빈곤층만"을 포함시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십시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반드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공화주의는 할 일이 없는 2세대 부자가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20호에 반대하고, 발의안 제27호에 찬성하십시오.

DANIEL H. LOWENSTEIN, 설립 의장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AUBRY L. STONE, 소장
California Black Chamber of Commerce
CARL POPE, 회장
Sierra Club

★ 발의안 제20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20호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러분이 이 유권자 안내서에서 보신 것 중에서 가장 분노하고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의견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20호를 통과시켜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이 연방의회의 친구들을 위해 그들이 유권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더라도 연방의회 의원으로 재선되는 것이 사실상 보장되도록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권한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정치인들은 연방의회에서 "안전한" 의석을 보장 받는다면 어떤 말이라도 할 것이므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비용"에 대한 허위 주장에 의해 오도되지 마십시오.

사실: 초당파적인 주 법률분석가는 발의안 제20호가 "선거구 재조정 비용에 대한 상당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Cal-Tax와 다른 납세자 단체는 발의안 제20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20호를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지난 번 선거구 재조정에서, 중남미계 리더들은 단지 재선을 보장 받기 위해 그의 선거구에서 170,000명의 중남미인들을 잘라낸 한 캘리포니아 주 연방의회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가 발의안 제20호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단지 안전하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도시, 카운티를 분리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을 희석시키도록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기를 원하므로, 발의안 제20호가 통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발의안 제20호는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밀실 거래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킬 것입니다.

사실: 발의안 제20호가 통과되면 유권자가 승인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완전히 투명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연방의회 선거구를 설정하여 유권자가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권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California Black Chamber of Commerce, Latin Business Association,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Public Affairs Association이 모두 발의안 제20호를 지지합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십시오:
www.YesProp20.org

ALICE HUFFMAN, 회장
California NAACP
JULIAN CANETE, 집행 디렉터
California Hispanic Chambers of Commerce
RICHARD RIDER, 회장
San Diego Tax Fighters

발의안

제21호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 추가요금 수입을 새 신탁기금에 예치해야 하고, 이 신탁기금은 주립공원을 운영, 관리 및 보수하고 야생생물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상업용 차량, 트레일러 및 이동주택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이 면제됩니다.
- 주 감사원의 연례 감사와 주민감시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차량등록에 대한 연간 추가요금에 의해 매년 약 5억 달러의 주정부 수입이 증가합니다.
- 새 수입은 약 5,000만 달러의 공원 1일 사용 요금 수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고, 현재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기존의 주정부 자금을 매년 최대 2억 달러까지 대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한 자금 지원이 매년 2억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주립공원 시스템과 주정부 야생생물 보존 기관. 캘리포니아 주에는 278개의 주립공원이 있고, 그 중 246개는 캘리포니아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DPR)이, 그리고 32개는 지역 기관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 및 수렵국(DFG) 같은 다른 주 정부 기관들과 다양한 주정부 보존위원회는 야생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토지들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야생생물 보존위원회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들이 야생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해양보호위원회는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자금 제공. 지난 5년 간, 주정부는 주립공원의 운영을 위해 매년 약 3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약 1억 5,000만 달러는 일반기금에서 충당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원 사용자 요금(입장료, 캠핑료 및 기타 공원 사용 요금)과 주 휘발유세로부터 충당됩니다. 새 주립공원의 개발과 기존 공원들에 대한 자본적 개량은 대부분 과거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공채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주립공원의 유지보수 프로젝트는 매년 사용 가능한 전용 자금원이 없어 상당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DPR은 지역공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러 다른 주정부 기관들(DFG 등)이 실시하는 야생생물 보존 프로그램은 일반기금, 규제 수수료 및 공채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야생생물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약 1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공채 자금은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토지 취득과 다른 자본 프로젝트의 주 자금원입니다.

연간 차량 등록 요금. 주정부는 주민이 매년 차량을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요금을 징수합니다. 차량국(DMV)은 주정부를 대신하여 이러한 요금들을 징수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발의안

차량 등록 시 18달러의 추가요금을 부과. 이 법안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매년 18달러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나, 상업용 차량, 트레일러 및 이동주택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 추가요금은 매년 차량 등록 요금을 납부할 때 징수합니다. 이 추가요금 수입은 신규로 설치되는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법안은 이 자금을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추가요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모든 주립공원 일일 무료 사용.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립공원들은 공원에 입장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일일 사용 요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이 일회성 요금은 공원과 연중 시기에 따라 5달러에서 15달러 사이로 부과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은 주립공원 시스템에 속하는 모든 공원(현재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주립공원 포함)과 달리 지정된 주 소유 토지 및 야생생물 지역에서 입장, 주차 및 일일 사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립공원은 캠핑, 투어 및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배정. 이 법안은 신탁기금에 예치되는 수입의 1퍼센트 이하를 특정한 행정 및 감독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이 신탁기금의 나머지 자금은 주의회의 지출 승인을 받는 즉시 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배정됩니다. 표 1에 표시된 것처럼, 이 추가요금 수입은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 ***주립공원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이 자금의 85퍼센트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을 위해 DPR에 배정됩니다. 이 기관은 이 금액을 사용하여

표 1

발의안 제21호: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요금 수입 배정

(단위: 백만 달러)

목적	배정	연간 자금 제공 추정치
주립공원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 일반적인 주립공원 자금 제공	76%	$375
• 요금 수입 손실 보충을 위한 지역 기관에 대한 보조금	5	25
• 도시 하천 공원 도로에 대한 보조금	4	20
소계	(85%)	($420)
야생생물 보존 활동:		
• 어업 및 수렵국(DFG) 토지의 관리 및 운영	7%	$35
• 해양보호위원회	4	20
• 주정부 토지관리위원회	2	10
• 야생생물 보존 기금	2	10
소계	(15%)	($75)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대한 배정 금액 합계	**100%**	**$495**
행정 및 감독[a]	—	$5
배정 금액 합계		**$500**

[a] 총 추가요금 수입의 1퍼센트는 차량국, 주정부 감사관, 천연자원 기관의 행정 비용으로 배정됩니다.

발의안 제21호의 전문은 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립공원의 일일 사용 요금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해당 지역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한 차량이 주립공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에 대해 더 이상 요금을 징수할 수 없어 수입이 감소합니다.) 또한 이 기관은 이 금액을 사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 지역사회에 레크리에이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하천 공원 도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안은 DPR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주의 그룹과 지역들을 위해 주립공원 시스템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 ***DFG 토지의 관리 및 운영.*** 이 자금의 7퍼센트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 보호지역 및 기타 DFG 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DFG에 배정됩니다.
- ***기타 야생생물 보존 활동.*** 기타 야생생물 보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하며, 경우에 따라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4퍼센트는 해양보호위원회에, 2 퍼센트는 주정부 토지 관리위원회에, 그리고 2 퍼센트는 야생생물 보존위원회에 배정됩니다.

행정 및 감독.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법안은 연간 수입의 1퍼센트 이하를 신탁기금의 징수, 행정, 감사 및 감독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DMV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여 신탁기금에 예치합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 감사관이 이 자금의 지출에 대해 연례 감사를 실시한 후에 주의회에 보고하고 일반대중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천연자원부 장관이 주민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 법안의 시행 상태와 주립공원 및 천연자원 보호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새로운 수입. 이 법안에 규정된 18달러의 추가요금은 매년 약 5억 달러의 신탁기금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이 금액은 연간 차량 등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자금의 순증가. 18달러의 추가요금으로부터 발생하는 5억 달러의 연간 수입은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새로운 자금원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이 모두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신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 수입의 일부분은 현재 공원과 야생생물 보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일반기금의 자금 같은 기존의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금과 다른 특별자금에 대한 절감 금액은 매년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차량들은 주립공원 일일 사용 요금을 면제 받기 때문에, 주립공원(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주립공원 포함)의 수입은 매년 약 5,000만 달러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할 때,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프로그램에 제공될 자금의 순증가는 아마도 매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주립공원에 제공되어 상당히 지연된 주립공원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거나, 또는 기존의 주립공원 프로그램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자금의 나머지 금액은 야생생물 보존 목적으로, 그리고 신규 야생생물 서식지 복구 프로젝트(예를 들면, 해양 서식지 보호)에 사용할 주 소유 토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또한 주립공원은 투어, 캠핑 및 공원 사용 요금과 같은 다른 종류의 공원 요금으로부터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 일일 사용 요금이 면제되면 공원 시설 방문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21호의 전문은 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1호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21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캘리포니아 주의 공원과 해변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전지역에 있는 주립공원과 해변에 제공되는 자금을 반복적으로 삭감해왔습니다. 공원과 야생생물은 현재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50개의 주립공원이 부분적으로 폐쇄되거나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우리의 공원 시설들은 관리가 부실하고, 비위생적이며, 파손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들은 자금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10억 달러가 넘는 유지보수 및 수리가 적체되었습니다. 감시원과 구조원 직이 삭감되어 안전이 악화되고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캘리포니아 주의 주립공원을 미국에서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11개의 장소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주립공원과 해변을 개방하고, 관리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할 1년에 단 한 번 납부하는 18달러의 새 차량 면허료를 제정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 차량에 대해 주립공원과 해변을 하룻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즉각적으로 필요한 자금원은 공원과 해변의 폐쇄를 방지하고, 적절한 관리와 일반대중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일자리를 보호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증진시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립공원은 매년 8,000여 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인근 지역사회와 우리 주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의 사업 및 세금 수입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공원을 개방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일자리와 수입을 보존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시킬 수 없는 자연지역, 해양,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우리의 주립공원 및 해변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야생생물과 해양 보존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자연지역을 보존하고 이 주의 대기 및 물의 질을 개선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정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공원 신탁기금을 조성합니다.

발의안 제21호에는 유권자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 감독 위원회와 연례 감사를 포함하는 엄격한 재정 및 책임에 대한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입은 특히 주립공원과 해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방문객의 보호 및 안전, 자연지역과 야생생물의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특별신탁기금에 예치합니다. 발의안 제21호에 의하면, 이 신탁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정치인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전용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원들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유산으로 보존합니다.

우리의 주립공원과 해변,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삼림, 야생생물, 역사자원 및 천연 자원은 캘리포니아 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 중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공원과 해변이 손상되거나 폐쇄되면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주립공원을 개방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가족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경제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미 지지를 표시한 단체들 중에는 Ocean Conservancy,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Latino Health Access, Public Health Institute, California Travel Industry Association, California State Parks Foundation, California State Lifeguard Association, 그리고 주 전역의 기업 및 상업회의소가 포함됩니다.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존을 위해 발의안 제21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YesForStateParks.com

JIM ADAMS, 지역 집행 디렉터, 태평양 지역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MIKE SWEENEY, 집행 디렉터
The Nature Conservancy California
PAMELA JO ARMAS, 회장
California State Park Rangers Association

★ 발의안 제21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21호는 선의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자금을 "전용할 수" 없으나, 기존의 주립공원 자금을 삭감하고 그 자금을 다른 낭비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산 청문회를 하는 동안, *한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21호에 의해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공원들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삭감할 것을 공공연하게 권고했습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가장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세금을 인상하는 "투표용 예산"을 추가할 뿐입니다. 주립공원은 훌륭한 자원이기는 하지만, 학교, 대학 및 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이 삭감되고 있는 이 때에 공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해야 할까요?

진정한 개혁은 만성적인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 지출 제한,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금이 캘리포니아 주의 부채 증가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개혁 방법입니다. 발의안 제21호는 해결책이나 개혁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주립공원에 대한 자금 제공이 실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이 자동차세 인상만을 제안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사기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여전히 *공원 내에서 새로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주립공원 방문 비용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과 잘못된 우선순위에 반대하십시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21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MICHELLE STEEL, 위원
State Board of Equalization
PETER FOY, 캘리포니아 주 의장
Americans for Prosperity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1호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21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주립공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소중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공정한 법률 분석실에 의하면, 발의안 제21호는 2년에 한 번씩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려는 새크라멘토 내부자의 사기적인 책략입니다.

"자동차세"에 반대하고 발의안 제21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이 새 자동차세는 정치인들이 주립공원을 여전히 훼손시키면서 수억 달러를 다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사기적이고 형식적인 예산 책략을 허용합니다.

Sacramento Bee의 베테랑 컬럼니스트인 Dan Walters는 최근에 한 주 상원의원이 발의안 제21호를 통과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립공원 예산에서 1억 4,000만 달러를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치인들의 자동차세 부과 책략을 폭로했습니다.

Walters는 Alan Lowenthal 상원의원이 입법위원회에서 말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립공원에) 자금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면 누가 공원 무료 입장 법안(발의안 제21호)에 찬성 투표를 하겠습니까? 제 말은 이미 자금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면 공원 무료 입장 법안에 찬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Walters는 Lowenthal의 발언이 "비밀을 누설했다"는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보도는 주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화가 나게 하고, 사기적인 책략을 폭로하고,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치인들이 발의안 제21호를 제출한 진정한 의도는 유권자를 속여서 주립공원을 빙자하여 자동차세를 승인 받고 그 자금을 다른 낭비적인 지출에 사용하려는 것이 명확합니다.

발의안 제21호에 반대하여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신뢰 받는 납세자 보호 단체들은 발의안 제21호에 반대합니다.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은 발의안 제21호에 반대합니다.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도 발의안 제21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좋은 의도의 법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2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10억 달러의 자동차세에 불과하고, 주립공원을 보수하거나 계속 개방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나쁜 것은, 발의안 제21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이 낭비적인 지출을 계속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사기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허용 및 조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21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이러한 납세자 옹호 단체들에 동참하여 발의안 제21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새크라멘토는 진정한 예산 개혁과 진정한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단지 새크라멘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투표용 예산"을 추가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유권자들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평소와 같이 단지 예산의 혼란과 정략을 증가시킬 뿐이고, 교육과 일자리 창출 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가장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좋은 의도의 법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은 평소와 같은 새크라멘토의 정략이고 2년에 한 번씩 10억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려는 사기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새크라멘토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자동차세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제21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PETER FOY, 캘리포니아 주 의장
Americans for Prosperity
MICHELLE STEEL, 위원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

★ 발의안 제21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보존 프로그램을 망쳐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립공원은 매년 8,000여 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우리 주와 인근 지역사회의 경제 및 공중보건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립공원들은 최근 수년 간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의 변덕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비정상적이고, 심각하고, 공원들을 훼손시키는 자금 부족을 겪어왔습니다.

새크라멘토의 무관심은 주립공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 . 공원들은 폐쇄되었고, 화장실은 안전하지 않고 먼지가 쌓였고, 음료수는 오염되었고, 건물은 노후되었고, 등산로는 위험하고 붕괴되었고, 유지보수는 지연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연된 유지보수 비용은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일자리와 수입 감소를 포함하는 공원 폐쇄 및 황폐화의 영향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공원을 계속 개방하고 납세자들을 보호합니다.

주민과 신뢰 받는 단체들의 연합체는 공원 문제의 해결책으로 발의안 제21호를 투표에 제출했습니다. 발의안 제21호는 공원과 야생생물 보존 프로그램을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신탁기금을 설치합니다. 발의안 제21호는 주민 감독 위원회와 연례 감사를 포함하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여 자금이 적절하게 지출되는 것을 보장하고 정치인들이 신탁기금을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뢰 받는 다양한 연합체가 발의안 제21호를 지지합니다.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는 300개 단체들(아래의 단체들 포함)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그룹이 발의안 제21호를 지지합니다.

-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 California State Lifeguard Association;
- League of California Afterschool Providers;
- 지역 상업회의소.

발의안 제21호에 찬성하십시오. *www.YesForStateParks.com*

GRAHAM CHISHOLM, 집행 디렉터
Audubon California
JAN LEWIS, 주 의장
California Action for Healthy Kids
ELIZABETH GOLDSTEIN, 회장
California State Parks Foundation

발의안

제22호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주정부가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세금 수입의 분배를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주정부는 연료세와 재산세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조치(아마도 매년 10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사이의 범위에서)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일반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감소 및/또는 그 금액만큼의 주정부 수입 증가
-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교통 프로그램과 지역 재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동일하게 증가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주 헌법에 의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금 제공 및 책임은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판매세와 연료세 같은 일부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수입을 공유합니다. 또한 다수의 건강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비용을 공유합니다. 주정부는 재산세 수입을 수령하지 않으나, 이 수입을 지방정부 기관들과 학교에 분배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수년 간 지방정부의 수입과 비용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정들 중 일부는 주정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다른 결정들은 지방정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는 1990년대 초에 시, 카운티 및 특별구 재산세 수입의 일부를 학교에 영구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지방정부 기관의 자금을 절감하고 주정부의 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정부는 1990년대 말에 예심법정 프로그램 자금 제공에 대한 법률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지방정부 기관의 비용을 주정부로 이전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주의 유권자들은 최근 수년 간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주정부는 2004년 발의안 제1A호에 의해 시, 카운티 및 특별구의 재산세수입을 학교에 영구적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다른 조치들을 취할 권한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발의안 제1A호는 주정부가 주 휘발유 판매세 수입을 차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시, 카운티 및 특별구의 일부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 또는 전용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의안들은 지방정부 재개발 기관의 수입을 전용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기관은 황폐화된 도시 지역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합니다.)

발의안

표 1에 요약되어 있듯이,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 또는 제거합니다.

- 주 연료세 수입을 사용하여 주 교통 공채와 관련된 부채를 상환
- 주 연료세 수입을 차입하거나 분배를 변경

표 1

발의안 제22호의 주요 조항

✓ **주 연료세에 대한 제한 조항**
- 이 자금을 사용하여 교통 공채와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
- 주정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금지
- 자금의 분배를 변경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

✓ **주정부에 대한 기타 제한 조항**
- 재개발 재산세 수입의 전용 금지
- 시, 카운티 및 특별구의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전용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거
- 주정부가 차량 면허료 수입을 사용하여 주정부 부과하는 요구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금지

✓ **집행**
- 2009년 10월 20일 이후에 발효된 주법이 이 법안과 상충되는 경우 그 주법을 폐지
- 주정부가 이 법안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자금을 상환

- 재개발 기관의 재산세를 다른 지방정부로 전용
- 시, 카운티 및 특별구의 재산세를 학교에 일시적으로 전용
- 차량 면허료(VLF) 수입을 사용하여 주정부 요구 비용(mandated cost)을 지방정부에 상환

그 결과, 이 법안은 주정부 일반기금의 자금과 교통 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기금은 학교, 대학, 교도소,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정부의 주요 자금원입니다. 교통 자금은 별도의 계정에 예치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통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교통 공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의 사용

주 연료세. 표 2에 표시된 것처럼, 주정부는 교통 목적으로 매년 약 59억 달러의 연료세를 징수하며, 이 금액의 대부분은 갤런 당 35.3센트의 휘발유 소비세에 의해 충당됩니다. 표 2에 표시된 금액은 2010년 초에 채택된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기 전에는 주정부가 휘발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2건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갤런 당 18센트의 소비세와 구입 비용에 근거한 판매세. 주정부는 변경사항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총세금을 징수하지만 휘발유에 대해서는 주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주 연료세 변경사항은 휘발유에 대한 지방판매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주정부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채택한 부분적인 이유는 교통 공채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때 휘발유 소비세 수입을 판매세 수입보다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2

교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주 연료세 수입[a]

2010-11 회계연도
(단위: 백만 달러)

연료	소비세	판매세
휘발유	$5,100	—
디젤	470	$300
합계	**$5,570**	**$300**

[a] 지방정부도 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표에는 이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2호의 전문은 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현행 연료세 수입의 사용. 주 연료세 수입의 주요 용도는 (1) 간선도로, 가로 및 일반도로의 건설 및 유지보수, 그리고 (2) 공공수송기관과 도시간 철도 서비스에 대한 자금 제공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연료세 수입의 일부를 유권자들이 승인한 교통 공채에 대한 부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는 간선도로, 일반도로 및 공공수송기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된 공채에 대한 부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금년에 약 8억 5,000만 달러의 연료세 수입을 사용합니다. 향후의 연도에는 이 금액이 연간 약 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주정부의 권한 축소. 이 법안은 연료세 수입을 사용하여 공채를 상환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주정부는 이미 발행된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연료세 수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행될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연료세 수입을 사용하는 주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제한 조항 때문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공채 비용을 교통 계정이 아니라 일반기금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연료세 수입을 사용하여 공채 비용의 일부를 지불할 것이므로 금년에 지불할 금액은 다소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1) 주정부가 교통 프로그램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할 자금의 금액이 증가하고, (2) 주정부가 비-교통 프로그램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할 일반기금의 자금 금액이 감소합니다.

연료세 수입의 차입

현행 차입 권한. 주 연료세 수입은 보통 교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주정부는 이 자금을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현금 흐름 목적의 차입.*** 주정부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일반기금 비용을 7월과 12월 사이에 지출하나, 대부분의 수입은 1월과 6월 사이에 수령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현금 흐름의 불균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종 다양한 주정부 계정에서 연료세 수입과 같은 자금들을 일시적으로 차입합니다. 연료세 자금으로 제공하는 현금 흐름을 위한 대여금은 총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산 균형 유지 목적의 차입.*** 주정부는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세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자금을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분석의 작성을 완료했을 때 2010-11 회계연도 주 예산 제안서에는 6억 5,000만 달러의 주 연료세 수입을 주 일반기금에 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입 금지. 이 법안은 일반적으로 연료세 수입을 현금 흐름 또는 예산 균형 유지 목적으로 일반기금이나 다른 주정부 기금에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필요한 단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민간시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주정부 계정에 더 많은 준비금을 축적할 때까지 주정부의 지출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세금 수입의 징수를 앞당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예산과 관련된 차입을 하는 대신에 미래의 일반기금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 지출의 축소 또는 주세의 인상과 같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료세 수입의 분배

현행 분배. 주 연료세 수입의 약 3분의 2는 주정부가 지출하고, 나머지는 시, 카운티 및 교통구(transit district)가 지출합니다. 주법에는 지방정부 기관들이 수령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주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의 투표로 법률을 통과시켜 이 자금의 분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는 최근 수년 간 공공수송기관 자금의 배정을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분배에 대한 변경을 제한. 이 법안은 지방정부 기관에 대한 주 연료세 수입의 분배를 변경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연료소비세의 경우, 이 법안은 지방 도로 및 가로를 건설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해 이 세금 수입을 지방정부에 분배할 때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2009년 6월 30일에 발효된 공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지방정부들은 연료소비세로 징수한 18센트 중에서 6센트에 해당되는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주정부는 법을 제정하여 이 자금의 분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의 찬성 투표를 받고 캘리포니아 주 교통위원회가 일련의 청문회를 실시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젤 판매세 수입(주로 공공수송기관 및 교통 계획에 사용)의 경우, 현행법은 이 자금을 2011-12 회계연도부터 주정부에 25퍼센트, 지방정부에 75퍼센트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에는 이 자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젤 판매세 수입 분배에 대한 이 변경 조항으로 인해 현행법과 비교할 때 지방정부 공공수송기관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 제공되는 자금은 다소 감소하고 주정부 공공수송기관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은 증가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주정부는 이 자금의 분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수입의 배정

현행 재산세 분배. 캘리포니아 주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주택 및 다른 부동산 가치에 대해 1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며, 유권자들이 기채를 승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산세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법에는 카운티 감사관들이 이 수입을 지방정부 사이에 분배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 3은 지방정부들이 수령하는 재산세 수입의 평균 분배 비율을 보여줍니다.

주법은 주정부가 재산세 수입 분배를 일부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는 재개발 기관에 이 수입을 인근 학교로 전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근에 재개발 기관에 20억 달러의 수입을 2년 간 학교로 전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총 재개발 수입의 약 15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수입의 일부를 시, 카운티 및 특별구로부터 전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주정부가

표 3

1퍼센트 재산세의 지방정부 분배 비율(추정)

주 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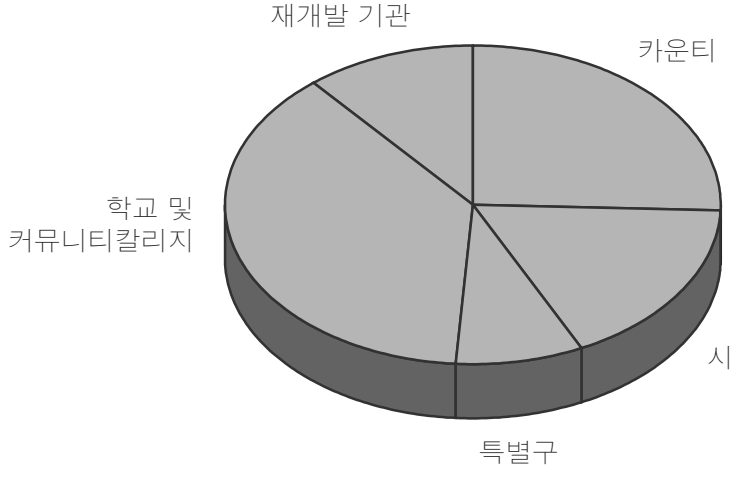

일시적인 재산세 전용의 영향은 제외

3년 이내에 지방정부의 손실 금액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최근에 이러한 기관들에게 19억 달러의 자금을 학교로 전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정부가 이러한 수입을 전용한 주요 이유는 교육 및 다른 프로그램에 지급하는 주정부 일반기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정부의 권한 축소. 이 법안은 주정부가 재개발 기관에 자금을 학교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용할 것을 요구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전용하는 권한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특정한 연도에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 지출의 축소 또는 주세의 인상과 같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VLF 수입의 사용

현행 VLF.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의 가치에 기준하여 1.15퍼센트(0.65퍼센트의 지속적인 요율과 0.50퍼센트의 일시적인 요율 포함)의 비율로 VLF를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VLF 수입은 지방정부에 분배됩니다.

현행 요구 상환금.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신규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추가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보통 연간예산법에 의한 지출을 통해서, 또는 다른 상쇄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자금을 상환합니다.

VLF 자금의 사용 제한. 이 법안에는 주정부의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을 지속적인 요율에 대해 징수한 VLF 수입의 배정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방정부에 상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다른 자금원을 사용하여 지방정부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발의안과 상충되는 주법

최근의 법률 폐지. 2009년 10월 20일과 2010년 11월 2일 사이에 제정된 법률 중에서 이 발의안과 상충되는 것들은 모두 폐지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조항의 실질적인 영향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 이 법안의 부분적인 조항들은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정부는 2010년 봄에 연료세법을 상당히 변경했으며, 이 법안이 이러한 변경에 대해 완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의 작성을 완료했을 때(2010년 초여름), 주정부는 주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새 법률과 자금 제공에 대한 변경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법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폐지해야 하는 전체 범위의 주법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법률에 의한 상환 요구. 이 법안에 의하면, 법원이 주정부가 발의안 제22호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는 경우, 주정부 회계감사원장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방정부 또는 계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관련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과 이자는 주정부 일반기금에서 상환해야 하고, 주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 일반기금

2010-11 회계연도에 대한 영향. 이 법안은 (1) 일부 부채 비용을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전용하고, (2) 일반기금이 연료세 수입을 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주정부가 2010-11 회계연도에 다른 프로그램들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할 자금을 아마도 약 10억 달러 감소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감소시킬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즉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총 일반기금 지출의 약 1 퍼센트에 해당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은 또한 이 분석을 작성한 후에 통과된 법률들 중에서 이 법안의 조항들과 상충되는 것들을 폐지합니다.

장기적인 영향. 연료세 수입을 사용하여 교통 공채 비용을 상환하는 주정부의 권한이 제한을 받는 경우, 일반기금 비용이 향후 약 20년 간 매년 약 10억 달러씩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재산세와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재개발 수입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특정한 연도에 일반기금의 비용이 증가하고 사용 가능한 자금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매년 재정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약 10억 달러(대부분의 연도에)에서 몇 십억 달러(특정한 연도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교통 프로그램과 지방정부

이 법안이 교통 프로그램과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주정부의 일반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상반*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주정부는 연료세 수입 대신에 일반기금 수입을 사용하여 교통 공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와 지방의 교통 프로그램들이 연료세 수입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전용하는 주정부의 권한이 제한을 받으면 재개발과 주 및 지방의 교통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을 차입하는 주정부의 권한이 제한을 받으면 지방정부와 교통 프로그램들이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영향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약 10억 달러(대부분의 연도에)에서 몇 십억 달러(특정한 연도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2호의 전문은 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2호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22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문제—주의 정치인들은 계속 지방정부 자금과 교통 자금을 전용합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이 지방정부와 교통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자금을 너무 오랫동안 전용해왔습니다.

주의회는 작년에 50억 달러를 전용 및 차입했고, 금년에는 수십억 달러를 더 전용할 계획입니다. 주정부의 전용으로 인해 *9-1-1 긴급 대응, 경찰, 소방, 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도로 보수, 대중교통수단 개선*과 같은 중요한 지역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해결책—발의안 제22호에 찬성하여 주정부가 지방정부 자금 및 교통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발의안 제22호에 찬성하면:

1) 시와 카운티가 9-1-1 대응, 경찰, 소방과 같은 중요한 지역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세 자금을 주정부가 전용 또는 차입하는 것이 중지됩니다.

2) 유권자들이 지역의 도로 보수, 교통 개선 및 대중교통수단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휘발유세(주유소에서 지불하는)를 주정부가 전용하는 것이 중지됩니다.

발의안 제22호에 찬성하면 공공안전과 같은 중요한 지역 서비스가 보호됩니다.

"시에서는 일반기금의 60퍼센트 이상을 경찰과 소방 서비스에 지출합니다. 발의안 제22호는 주정부가 지역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집행, 9-1-1 긴급 대응 및 기타 공공안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Douglas Fry 소방서장, 회장, FIRE CHIEFS DEPARTMENT, League of California Cities

발의안 제22호에 찬성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가 보호됩니다.

- 경찰 및 보안관 순찰
- 9-1-1 긴급 파견
- 구급 대응
- 소방
- 고령자 서비스
- 청소년 갱단 가입 방지 및 방과 후 프로그램
- 근린 공원 및 도서관
- 버스와 통근철도 같은 대중교통수단
- 지방도로의 안전을 위한 보수

발의안 제22호에 찬성하면 휘발유세가 교통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휘발유세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량수송시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정치인들은 휘발유세를 교통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전용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2호는 휘발유세 자금을 유권자들의 의도에 따라 교통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발의안 제22호는 기존의 지방정부 및 교통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발의안 제22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22호가 학교에 대한 자금 제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단지 주정부가 계속 지역 자금을 전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위협전술일 뿐입니다. 발의안 제22호는 단순히 *기존의* 지방세 자금과 *기존의* 휘발유세를 주 정치인들이 다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의안 제22호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연합단체들이 지지합니다.

- California Fire Chiefs Association
-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60,000명의 공공안전요원을 대표)
- 지역 구급 요원 및 9-1-1 급파 오퍼레이터
-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 California Library Association(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3,000명의 사서들을 대표)
- California Transit Association
- League of California Cities
- California Alliance for Jobs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 50여 개의 지역 상업회의소
- 300여 개의 시

주정부가 지역 납세자들의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발의안 제22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www.SaveLocalServices.com

DOUGLAS FRY, 회장
Fire Chiefs Department, League of California Cities
KIM BUI-BURTON, 회장
California Library Association
SUSAN MANHEIMER, 회장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 발의안 제22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해결책—발의안 제22호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제22호의 지지자들(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략을 사용하는 지방정부 관료, 개발업자 및 재개발 기관)은 정말로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위기에 대해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공립학교가 내년에 십억 달러 이상, 그리고 향후 10년 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삭감 당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수십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주민발의안을 왜 유권자들에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또한 발의안 제22호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소방대원들이 화재 및 자연재해와 싸우기 위해 사용할 자금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22호는 아동을 위한 저가 의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Silicon Valley Taxpayers Association는 발의안 제22호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Fullerton Association of Concerned Taxpayers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발의안 제22호에 포함된 재개발 기관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영리 개발업자와의 담합을 허용할 것입니다.

공교육에 제공하는 자금을 삭감하고 소방, 공공안전 및 의료 예산을 축소하여 지역 개발업자들에게 세금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은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발의안 제22호는 모든 재산세의 10%를 수령하고 이 자금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승인 없이 수십억 달러의 장기부채를 차입하는 재개발 기관을 보호합니다." —Lew Uhler, 의장, National Taxpayer Limitation Committee

여러분의 세금은 공교육, 공공안전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22호를 지지하는 지방정부 관료, 개발업자, 재개발 기관에 가장 늦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DAVID A. SANCHEZ, 회장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KEN HAMBRICK, 회장
Alliance of Contra Costa Taxpayers
LEW STONE, 회장
Burbank Firefighters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2호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22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22호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숨겨진 조항들로 가득 찬 발의안들 중 하나입니다. 이 발의안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발의안 제22호가 통과되면 우리의 학교는 즉시 1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그 후 매년 4억 달러의 자금을 삭감 당합니다. 이것은 매년 5,700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학급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가 과밀해집니다. 학과, 음악, 미술, 직업교육 및 교실의 안전을 위한 자금도 삭감됩니다.

우리의 공립학교가 이미 엄청난 예산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발의안 제22호는 학교에 심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이 주 전역의 교장 및 학부모들과 함께 발의안 제22호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나쁘지 않다면, 발의안 제22호가 주 전역의 소방대원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박탈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는 발의안 제22호가 화재, 지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축소시켜 가족에게 구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응시간이 지연되거나 또는 주요 응급상황에 대해 구급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22호는 아동에 대한 안전망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이때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삭감합니다. 발의안 제22호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수만 명의 아동이 건강보험을 잃고 저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의안 제22호에는 다른 숨겨진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개발 기관에 대한 보호조치를 주 헌법에 영구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토지수용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갈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지방재산세를 수령하며, 그 자금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지역 개발업자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의 지출에 대해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2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공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은 학교, 공공안전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개발업자 및 재개발 기관에 가장 늦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2004년에 주정부가 심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지방정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3년 이내에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발의안 제1A호를 승인했습니다. 발의안 제22호는 2004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현명하게 승인한 법안을 역전시켜, 학교, 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고령자, 맹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합니다.

리버사이드 시의 소방대원인 Timothy Strack은 "발의안 제22호는 소방차나 구급차에 단 한 명의 요원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재개발 기관들에게 공공안전 자금을 박탈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투표 발의안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2호가 이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 전체에서 예산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 더 많은 예산을 묶어놓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납세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재개발 기관과 이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개발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학교, 공공안전,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십시오. 발의안 제22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LOU PAULSON, 회장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MALINDA MARKOWITZ, 등록간호사, 공동 회장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DONNA DREITH, 3학년 교사
Riverdale Joint Unified School District

★ 발의안 제22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과거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주의 정치인들은 매년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현재 지역 서비스에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의 자금을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전용하여 그들 마음대로 지출합니다.

주정부는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전용하여 우리의 시와 카운티의 서비스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는 법률의 허점으로 보완하여 주정부가 지역 납세자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발의안 제22호를 직접 읽어보십시오.

- 발의안 제22호에 찬성하면 주의 정치인들이 시와 카운티가 9-1-1 긴급 대응, 경찰, 소방, 도서관, 공원 및 고령자 서비스 같은 지방정부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전용하는 것이 중지됩니다.
- 제22호에 찬성하면 유권자들이 교통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휘발유세를 주의 정치인들이 전용하는 것이 중지됩니다.

반대자의 위협전술에 오도되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2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방세 자금을 계속 전용하기를 원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발의안 제22호는 *기존의* 지방정부 수입을 보호하고, 주 헌법에 보장된 학교에 제공되는 금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단 한 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60,000명 법집행관들을 대표하는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California Fire Chiefs, Fire Districts Association of California, California Police Chiefs는 발의안 제22호가 지역의 소방, 법집행 및 9-1-1 긴급 대응을 위해 매년 160여 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합니다.

주 정치인들이 지방정부의 자금을 빼앗아가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on 22.

www.SaveLocalServices.com

DOUGLAS FRY, 회장
Fire Chiefs Department, League of California Cities
RON COTTINGHAM, 회장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JANE LIGHT, 사서
San Jose Public Library

발의안

제23호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주법의 효력을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이 4분기 동안 연속해서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시킵니다.
- 주정부가 재생가능 에너지 증가와 청정 연료 개선 요건, 그리고 발전소와 정유공장 같은 주요 배출원에 대한 필수 배출 보고 및 요금 요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소 프로그램을 중지시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AB 32의 효력 정지는 이 주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소규모의 순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입에 알 수는 없으나 상당한 순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정부가 미래에 시행할 배출량 할당 거래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배출권을 비용을 지불할 특정한 기업들에게 경매에 부침으로써 새로운 수입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온실가스(GHG)는 태양열을 지구의 대기 내에 가두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가스입니다. 자연현상(주로 물의 증발)과 인간의 활동(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 모두 GHG를 발생시킵니다. 과학전문가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GHG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이러한 지구 온도의 상승이 결국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고 산업경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GHG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주이고, 전세계에서 GHG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기후변화는 국제적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GHG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조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고, 미국 내의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들이 GHG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GHG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주하원 법안 제32호. 캘리포니아 주는 2006년에 2006년 캘리포니아 주 지구온난화 해결법(보통 주하원 법안 제32호 또는 “AB 32”라고 함)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이 주의 GHG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의 배출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규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0년의 GHG를 AB 32 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수준으로부터 약 30퍼센트를 줄여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하원 법안 제32호는 주 대기자원위원회(ARB)가 이러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ARB가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때 대기의 질을 개선할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주의 GHG 배출 감소 활동을 통해서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른 법률들. AB 32 이외에도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수의 다른 주법들이 주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법률들의 주 목적이 특히 GHG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제정된 한 법률은 ARB에 자동차와 소형 트럭의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법률들은 GHG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나, 이러한 효과가 있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GHG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 계획". ARB는 AB 32의 요구에 따라 2008년 12월에 AB 32의 2020년 GHG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B 32 조사 계획이라고 부르는 이 계획에는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들은 AB 32에 의해 승인된 것이고, 어떤 조치들은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의 주 목표는 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GHG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에는 전통적인 규제 조치와 시장 기반의 조치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과 같은 전통적인 규제는 개인과 사업체가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특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 기반의 조치는 규제가 적용되는 개인과 사업체에게 GHG 배출 감소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시장 기반 조치는 "배출량 할당 거래(cap-and-trade)"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ARB가 GHG 배출에 대한 *상한선(cap)*을 정하고, 배출자들에게 그들이 배출하는 GHG의 양과 관련된 제한된 수의 배출권을 발급하고,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배출자들이 이러한 배출권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조사 계획에 포함된 일부 조치들은 이미 규정의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규정들은 현재 제정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제정될 것입니다. 주하원 법안 제32호는 GHG 배출 감소 조치에 대한 모든 규정을 2011년 1월 1일까지 채택하고 2012년 1월 1일까지 발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 ARB는 AB 32가 허용하는 GHG 배출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발전소와 정유소 같은 다량의 GHG를 배출하는 사업체들은 2010년 가을부터 이러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총 8,300만 달러를 AB 32 프로그램에 대여한 다양한 주정부 특별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대여금에는 2014년까지 계속되는 시차제 상환 날짜가 적용됩니다.

조사 계획 실행과 관련된 경제적 영향. AB 32 조사 계획이 실행되면 특정한 개인과 사업체에 다양한 새 요건과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GHG 배출 및 이와 관련된 대기오염물질의 수준을 감소시킵니다. 배출 감소와 새로운 비용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계획의 실행이 캘리포니아 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환경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은 조사 계획이 주내총생산, 개인소득, 물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다른 견해를 표명해왔습니다. 조사 계획의 "손익", 즉 경제에 대한 순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사 계획의 많은 조치들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은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 규제 과정에서 어떻게 채택되는지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조사 계획의 많은 조치들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일부 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적 영향은 향후 수년 간 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조사 계획의 실행은 경제에 대해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경제 부문, 사업체 및 개인에 대해 조사 계획을 실행하는 경우, "승자"와 "패자"가 모두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발의안 제23호의 전문은 10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

AB 32의 GHG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2020년에 조사 계획의 실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경제적 영향을 비교적 광범위한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 경제 활동의 종합적인 측정치인 주내총생산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신규 투자 요건, 규제 준수 같은 요인들이 결합되어 소비자와 사업체들이 구입하는 원재료,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사 계획이 경제에 미치는 순영향은 아직도 토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발의안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이 4분기 동안 연속해서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AB 32의 시행을 정지시킵니다. 주정부 기관들은 이 정지 기간 동안 AB 32를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안 또는 채택하거나, 또는 이전에 채택된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B 32가 다시 발효되면 이 법안은 그 후에 AB 32를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 규정에 대한 이 발의안의 영향

AB 32는 오랫동안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AB 32는 즉시 정지됩니다. AB 32는 이 주의 실업률이 4분기(1년) 동안 연속해서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효력이

표 1

캘리포니아 주의 역사적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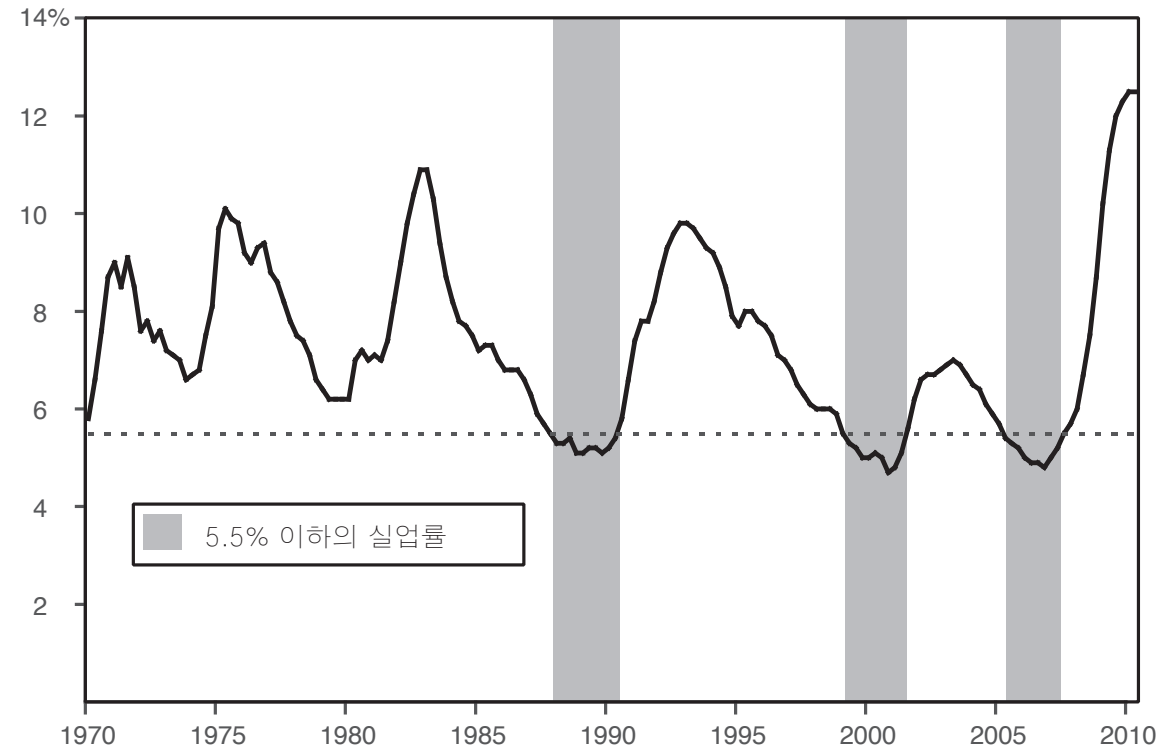

출처: 미국노동통계국, 계절 조정 자료.

정지됩니다. 저희는 AB 32의 정지가 언제 종료될지 추정할 수 없습니다. 표 1은 이 주 실업률의 역사적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 표는 이 주가 1970년 이후 세 번의 기간 동안(각 기간은 약 10분기 동안 지속) 실업률이 4분기 이상 연속해서 5.5퍼센트 이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0년의 첫 2분기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은 12퍼센트가 넘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전망은 이 주의 실업률이 8퍼센트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AB 32는 오랫동안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기후변화 규제 활동이 정지됩니다. 이 발의안은 조사 계획에 포함된, 규정이 채택되었거나 채택이 제안된 다수의 조치들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특히, 이 발의안은 다음 사항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앞에서 설명한 배출량 할당 거래에 대해 제안된 규정
- 캘리포니아 주의 수송 연료 제공자들(정유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연료 혼합 방법을 변경하여 GHG 배출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저탄소 연료 기준" 규정
- 전기를 판매하는 민간 및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 및 기타 사업체들에게 2020년까지 공급 전기의 33퍼센트 이상을 태양열 또는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획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의도로 제안된 ARB 규정. (2010년까지 민간 소유 공익사업체가 공급하는 전기의 20퍼센트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획득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은 이 발의안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AB 32를 시행하기 위한 주정부 기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조사 계획에 포함된 대부분의 규정은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GHG 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현재의 많은 활동들은 이 발의안에 의해 정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사 계획의 특정한 규정들이 AB 32 이외의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및 소형 트럭에 대한 신규 차량 배출 기준
- 주택소유자들이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
- 차량 사용 의존도의 감소를 촉진하는 토지 사용 정책
- 건물 및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요건

저희는 조사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배출 감소의 절반 이상이 AB 32와 별도로 제정된 법률로 인해 달성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AB 32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은 연쇄적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아래에서 설명됩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잠재적 영향. AB 32의 효력 정지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AB 32의 효력이 정지되면 사업체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새로운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은 2020년에 AB 32를 시행하는 경우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경우 제안된 배출량 할당 거래 규정, 그리고 전기 공익사업체들이 공급하는 전기의 더 많은 부분을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획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공익사업체들에게 전기 생산 및 공급 비용을 증가시킬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전기를 고가의 에너지원으로부터 획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AB 32가 시행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발의안에

의해 그러한 요건들이 정지되면 사업체들의 비용을 줄이고 대부분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잠재적 영향. 또한 AB 32의 효력 정지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 계획의 일부 조치들이 정지되면 사업체와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약해주는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AB 32의 목표를 지원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부문의 연구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이 발의안에 의해 둔화되어, 특정 부문의 경제 활동이 AB 32를 시행할 때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계획의 일부 조치들이 정지되면 호흡기 질환의 감소와 같은 공중보건에 혜택을 주는 대기의 질 개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건에 대한 혜택은 경제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정부와 사업체의 건강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경제에 대한 순영향. 앞에서 설명했듯이, 조사 계획의 조치들 중 일부만이 이 발의안에 의해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마도 사업체의 준법 비용의 증가 및/또는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조치들은 아마도 공중보건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과 특정한 경제 부문의 수익성 증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발의안이 발효되면 이 주의 경제 활동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변화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소득세와 판매세 수입은 이 주의 경제 활동 수준이 변동됨에 따라 증가 및 감소합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AB 32의 효력 정지가 이 주의 경제 활동을 다소 증가시키는 정도만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재정적인 영향

배출량 할당 거래 규정의 효력 정지가 미치는 영향. ARB가 제안한 배출량 할당 거래 규정의 효력 정지는 이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한 접근방법에는 주정부가 GHG 배출자에게 배출권을 경매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접근방법은 이 주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이 배출권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수입을 주정부에 발생시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수입은 주의회의 향후 조치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는 목적으로 다른 주세를 인하하거나 주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 32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주정부가 배출권과 관련하여 사업체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잠재적 비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정한 AB 32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캘리포니아 주의 에너지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관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AB 32와 관련된 규정들의 효력이 정지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에너지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주정부의 행정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영향. AB 32에 따라 규정을 제정 및 집행하는 주정부의 행정 비용은 AB 32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상당히 감소하여,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 기간 동안 AB 32가 행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승인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AB 32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한 주정부 특별자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전용 자금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정부의 다른 자금원을 대신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자금원에는 일반기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잠재적인 일회성 주정부 비용은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AB 32가 다시 발효되면 AB 32 행정 수수료 수입을 사용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기금 또는 다른 주정부 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AB 32 규정의 효력 정지가 종료되는 경우, 효력이 정지되기 전에 진행되고 있던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재평가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하므로 주정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 제23호의 전문은 10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3호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23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문제: 캘리포니아 주의 지구 온난화 요구사항은 잘못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신중하고 책임있게 대처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히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국, CARB)가 AB32가 "기후 변화의 과정을 변경" 할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캘리포니아 주의 지구 온난화법인 AB32를 시행할 때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재정적자가 이미 200억 달러에 달했고, 실업, 주택 차압, 및 부채에 있어서 미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B32를 시행하면 납세자와 소비자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우리의 경제와 가정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이러한 자진해서 부과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해결책: 발의안 제23호

발의안 제23호는 경제가 개선될 때까지 AB32를 중지시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엄격한 환경법을 존속시키지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일자리를 구하고, 세금 인상을 방지하고, 환경을 계속 보호하고,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지원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높은 에너지 세금과 비용을 수십억 달러 절약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빈곤층, 근로층, 중산층 가정들은 실직, 근무시간 감소, 일시 해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구들은 연간 3,800달러의 높은 AB32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구들은 AB32로 인해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가격에는 전기, 천연가스, 휘발유에 대한 직접 가격과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온실가스(GHG) 감소 비용과 같은 간접 가격이 포함됩니다." —CARB의 경제 할당 및 자문 위원회

발의안 제23호는 백만 개가 넘는 캘리포니아 주의 일자리를 구합니다.

다른 국가와 주들은 현명하게 지구 온난화법의 시행을 경제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연기했습니다.

발의안 제23호가 없으면 높은 에너지 가격이 소기업과 고용주에게 타격을 주어 더 많은 해고와 기업 폐쇄를 유발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법을 통과시킨 다른 국가들은 1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에 2개의 블루 칼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고임금 블루 칼라 및 노동조합 일자리를 포함하는 100만여 개의 위험에 처한 일자리를 구하면서도, 녹색 일자리의 창출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엄격한 공중보건 및 환경 보호 법률을 존속시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고,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수백 개의 법률을 약화시키거나 폐지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CARB가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고 인정한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높은 에너지 비용의 발생을 중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예산이 위험한 정도를 넘어설 때 자금을 지원하여, 교실에 교사를, 그리고 거리에 소방대원을 유지할 것입니다.

"공공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소방대원, 법집행관, 그리고 응급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Kevin Nida, 회장,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발의안 제23호는 관료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CARB의 선출되지 않은 정치적 피임명자들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숨겨진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관료가 아니라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주의 비용이 많이 드는 지구 온난화법을 시행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제23호의 상식적이고 재정적 책임을 지는 접근방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 경제, 환경에 모두 이익이 됩니다.

납세자, 소방대원, 지역 공무원, 에너지 회사, 농장주, 기업체에 동참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보호하십시오.

발의안 제23호에 찬성하십시오.

Yeson23.com

KEVIN NIDA, 회장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JOHN KABATECK, 집행 디렉터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California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 발의안 제23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2개의 텍사스 주 석유회사가 발의안 제23호를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고, 사기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발의안 제23호를 홍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더 지불했습니다.

기후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 발의안 제23호는 공중보건과 우리의 경제를 위협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부정한 에너지 발의안으로서,

-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정 에너지와 대기 오염 기준을 무효화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 풍력, 태양열 및 대체연료 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의 500,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합니다.

신뢰 받는 단체와 지도자들은 발의안 제23호가 사기적이고,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안이라고 경고합니다.

Charles D. Kolstad 박사, 학과장,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발의안 제23호는 캘리포니아 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의안 제23호는 일자리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우리 경제의 한 분야인 청정 에너지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일자리를 감소시킵니다."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발의안 제23호가 단기간 동안만 적용될 것이라는 입안자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청정 에너지와 대기 오염 기준을 효과적으로 무기한 무효화하고 에너지 효율과 오염 감소를 촉진하는 수십 개의 규정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발의안 제23호는 오염자들이 유해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사실" 을 검토해보고 발의안 제23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StopDirtyEnergyProp.com

LOU PAULSON, 회장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JANE WARNER, 회장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CHARLES D. KOLSTAD 박사, 학과장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3호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23호에 대한 반대 의견 ★

텍사스 주의 석유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 에너지와 대기 오염 기준을 무효화하기 위해 발의안 제23호를 작성했습니다.

텍사스 주의 큰 석유회사들과 석유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주의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 에너지와 대기 오염 기준을 무효화하기 위해 발의안 제23호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석유회사들은 발의안 제23호가 그들과 다른 오염자들이 책임을 피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한 사기적인 선거운동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대기 오염과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정한 에너지 발의안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23호의 주요 후원자인 Valero와 Tesoro 석유회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정유소에서 대기 오염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보건안전법의 일부분을 무효화*하기 위해 발의안 제23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대기 오염을 증가시켜, 특히 아동과 고령자에게 더 많은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발의안 제23호는 일자리를 없애는 법안으로서, 수십만 개의 캘리포니아 주 일자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청정 에너지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청정 전력을 제공할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을 바로 이곳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근로자들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청정 에너지법을 무효화함으로써 이러한 많은 캘리포니아 주 회사들을 폐업시키고, 수십만 개의 캘리포니아 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주의 성장 산업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청정 에너지 기술과 사업에 대한 기술혁신과 투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23호는 이 주의 청정 에너지법을 무효화하고, 수십억 달러의 경제 성장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Sue Kateley, 집행 디렉터, California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200여 개의 태양열 에너지 소기업을 대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법률분석실은 발의안 제23호가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민간기업의 추가 투자를 위축시켜 발의안 제23호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경제 활동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말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다음 사항을 위태롭게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된 12,000개의 청정 에너지 회사
- 거의 500,000개에 달하는 기존의 캘리포니아 주 청정 에너지 일자리
- 10억여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투자

제23호는 우리를 값비싼 석유에 중독시킵니다.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23호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효화하여 이미 고가의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감소시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석유를 구입하게 하고, 인상되는 에너지 가격을 부담하게 합니다." —Consumers Union, Consumer Reports Magazine의 발행 단체

우리의 석유 중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이것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테러를 지원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합니다.

공중보건 옹호단체, 청정 에너지 회사 및 소기업에 동참하여 발의안 제23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23호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반대합니다.

-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 Coalition for Clean Air • AARP •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 50여 개의 선도적인 환경 단체 • LA Business Council • 200여 개의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회사 •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수백 개의 다른 기업

텍사스 주 석유회사들의 부정한 에너지 발의안을 중지시키십시오.

발의안 제23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StopDirtyEnergyProp.com

JANE WARNER, 회장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LINDA ROSENSTOCK, 의사, 학장
UCLA School of Public Health
DAVID PACHECO, 회장
AARP California

★ 발의안 제23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오도되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3호는 단지 캘리포니아 주의 지구 온난화법에 만 영향을 줍니다. *이 법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의안 제23호의 반대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23호에 찬성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에너지 세금 인상을 방지하고, 가정을 지원하면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한 대기와 물 관련 법률들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3호에 반대하면 소비자에게 막대한 에너지 세금을 부과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지구 온난화를 줄이지 못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환경과 공중보건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23호는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온실가스 규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합니다. 이 법안은 대기와 물의 질을 보호하는 법률 또는 천식 및 폐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일자리를 구하고, 녹색 일자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법이 없는 다른 주들은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 발전된 풍력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연료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중 23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고, *발의안 제23호는* 이 법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라질 *100만여 개의 일자리를 구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23호에 찬성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는 새로운 에너지 세금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23호는 빈곤층 및 근로층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상 필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3,800달러의 비용을 절약시킵니다.

- 전기 및 천연가스 요금 고지서 • 휘발유 가격 • 식품 가격

발의안 제23호에 찬성하십시오. 소비자, 납세자, 소기업 및 가정에 동참하십시오.

발의안 제23호를 지지하는 다양한 연합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 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 • National Tax Limitation Committee • 건설 근로자 • 지역 공기의 질 담당 공무원

다른 국가와 주들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법을 연기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지 못하는 스스로 자진해서 지구 온난화 세금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www.yeson23.com

BRAD MITZELFELT, 관리위원회 위원
Mojave Deser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J. ANDREW CALDWELL, 집행 디렉터
The Coalition of Labor, Agriculture & Business
JAMES W. KELLOGG, 국제 담당자
United Association of Journeymen and Apprentices of the Plumbing and Pipe Fitting Industry

발의안

제24호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 사업체가 영업 손실을 이전의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영업 손실을 향후의 과세연도에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합니다.
- 기업이 계열기업과 세액공제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합니다.
- 다주적(multistate) 기업이 재산, 급여 및 매출을 결합한 것에 기준하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단지 매출에 기준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일부 사업체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함으로써 2012-13회계연도까지 매년 약 13억 달러의 주정부 수입이 증가합니다. 2010-11회계연도와 2011-12회계연도에는 수입이 비교적 적게 증가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이 발의안은 사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3개 조항을 변경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이러한 조항들은 최근에 주의회와 주지사 사이에 타결된 주예산 협정의 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러한 최근의 모든 변경조항들은 2011 과세연도까지 발효됩니다.

사업체의 영업손실 사용. 연방세법과 주세법에 의하면, 사업체가 이익보다 세금 공제 가능 비용이 더 많으면 순영업손실(NOL)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연도에 NOL이 발생한 사업체는 차후의 연도에 이익이 발생할 때 보통 이 손실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손실의 "이월"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방법은 사업체가 손실을 "소급 이월"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연방법은 사업체가 어떤 연도의 NOL을 사용하여 이전 연도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월과 소급 이월)은 사업체의 이익 및/또는 비용이 연도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의회와 주지사가 2008년에 승인한 한 법률은 최초로 2011년부터 주 사업세를 소급 이월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특히, 이 새 법률은 사업체가 2011년 이후에 발생한 NOL을 사용하여 NOL이 발생하기 전 2년간의 주세를 줄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했으나 2011년에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는 2011년 NOL을 2009년 과세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는 2009년도 수정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법률은 이월 허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캘리포니아 주가 과세하는 다주적 (Multistate) 사업체의 이익 결정.

사업체들은 여러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다주적 사업체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법은 현재 3가지 요소가 포함된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산.*** 사업체가 미국 전역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금액과 비교한 캘리포니아 주 자산의 금액
- ***급여.*** 사업체가 미국 전역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금액과 비교한 캘리포니아 주 직원의 급여 금액
- ***매출.*** 사업체가 미국 전역에서 달성한 매출 금액과 비교한 캘리포니아 주 매출 금액. (대부분의 사업체의 경우, 이 요소를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의회와 주지사가 2009년에 승인한 한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주적 사업체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이러한 사업체들에 적용합니다. 이 새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다주적 사업체들은 2011년부터 매년 2가지 공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과세할 수 있는 이익의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 중인 3 요소 공식(앞의 설명 참조), 또는 (2) 미국 전체의 매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고려하는 새로운 공식 ("단일 매출" 요소라고 함). 사업체는 보통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공식을 선택합니다. 또한 2가지 공식을 바꾸어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세액공제를 공유하는 사업체의 자격.

캘리포니아 주의 세법은 사업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가 1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주세를 1백만 달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주정부가 장려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사업체에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사업체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특정한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세액공제가 남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미사용 세액공제는 차후의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 조직은 사업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조직이 공동 운영 또는 같은 경영진에 의한 운영 같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업 조직을 "단일 그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그룹에 속한 한 회사는 제품을 개발하고 다른 회사는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단일 그룹이 아닌 개별 사업체에게 제공됩니다.

주의회와 주지사가 2008년에 승인한 한 법률은 사용 가능한 세액 공재가 있는 사업체가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사업체에 미사용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공유 가능한 세액공제는 2010년 이후의 연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세액공제의 공유와 관련된 특정한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중 일부는 이미 양도되었습니다.

발의안 제24호의 전문은 10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발의안

이 발의안은 앞에서 설명한 2008년과 2009년에 통과된 사업세법의 변경조항을 폐지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 분야에 대한 과세 정책을 최근의 세법 변경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립니다. 이 발의안의 영향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계속

영업손실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사업체의 자격을 제한. 이 발의안은 사업체가 NOL 소급 이월을 사용하여 이전 과세연도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업체들은 계속 NOL을 사용하여 차후 연도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각 NOL을 2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1

발의안 제24호가 캘리포니아 주 사업세법에 미치는 영향

항목	구법[a]	현행법	발의안 제24호가 통과되는 경우의 법률
영업손실의 사용	*소급 이월.* 영업 손실은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급 이월.* 영업 손실은 2010년부터 이전의 2년 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법과 동일
	이월. 사업체들은 손실이 발생한 이후 10년 동안 그 손실을 사용하여 이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월.* 사업체들은 2010년부터 손실이 발생한 이후 20년 동안 그 손실을 사용하여 이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구법과 동일
다주적 사업체의 이익	캘리포니아 주 사업체의 매출, 자산, 급여에 근거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과세하는 다주적 사업체의 이익 수준을 결정할 때 단일 공식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다주적 사업체는 2011년부터 매년 다음과 같은 2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과세할 수 있는 이익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1) 구법에 의한 공식, 또는 (2) 사업체가 미국 전역에서 달성한 매출에 비례한 캘리포니아 주의 매출만을 고려하는 공식.	구법과 동일
세액 공제의 공유	사업체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그 사업체의 세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체는 세액공제를 같은 사업체 그룹에 속한 다른 사업체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2010년부터 같은 관련 사업체 그룹에 속한 다른 사업체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법과 동일

[a] 변경 전의 주법은 2008년 및 2009년 예산 협정의 일부로 채택되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다주적 사업체의 자격을 종료. 이 발의안은 다주적 사업체들이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을 받는 이익의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2가지 공식 중에서 선택하는 옵션을 제거합니다.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사업체의 과세 이익은 계속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업체의 매출, 자산, 급여를 고려하는 공식에 기준하여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적용되는 주법은 이 부분의 발의안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일 그룹 내에서 세액공제를 공유하는 사업체의 자격을 종료. 이 발의안은 단일 그룹에 속한 사업체들이 차후에 세액공제를 공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사업체들은 이미 양도 받은 세액공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수입 증가. 이 발의안은 사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주정부 일반기금의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이 법안이 2012-13 회계연도까지 완전히 시행되면 매년 약 13억 달러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2010-11 회계연도와 2011-12 회계연도에는 수입이 비교적 적게 증가할 것입니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은 단일 매출 요소 옵션을 제거한 결과로 다주적 사업체들이 납부할 것입니다.

교육 자금과 주정부 일반기금에 대한 영향. 유권자들이 1988년에 통과시킨 발의안 제98호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K-12 학교와 커뮤니티칼리지에 제공하는 최소금액을 결정합니다. 발의안 제98호의 공식에 의하면, 발의안 제24호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학교와 커뮤니티칼리지에 배정됩니다. 나머지 수입은 주의회와 주지사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4호의 전문은 10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4호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24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세금 공정성법" 인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단 한 개의 캘리포니아 주 일자리도 창출 또는 보호하지 않는 17억 달러의 특별법인세의 허점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법인세법의 허점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해야 합니다!

최근의 주 예산 위기를 겪는 동안, 입법가와 대기업들은 밀실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입법가와의 거래에는 유권자에 대한 180억 달러의 세금 인상과 대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대기업들은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창출 및 보호할 것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세금 혜택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이 나쁜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4호가 캘리포니아 주의 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위협전술에 속지 마십시오. 다음의 사실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발의안 제24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체들 중 2% 미만의 가장 부유한 다주적 기업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세법의 허점을 종료시킵니다. 98%의 캘리포니아 주 기업체들(특히 소기업들)은 거의 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발의안 제24호를 부결시키고 이 세법의 허점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CEO들에게 85억 달러가 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지난 해에 650억 달러의 이익을 냈으며, 이와 동시에 100,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우리는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함으로써 주의회가 공립학교, 의료 및 공공안전 예산을 더 많이 삭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위기를 겪는 동안, 주의회는 3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여, 16,000명의 교사를 해고하고 6,500명의 죄수를 거리로 방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기업에 17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대기업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17억 달러를 우리의 학생과 교실,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경찰 및 소방 서비스와 의료에 사용하기 위해 재무국에 반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부당한 법인세법의 허점은 일반적인 개인 납세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대기업에 매년 17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같은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180억 달러 인상했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새크라멘토가 우리의 세금 제도를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공화당원들도 민주당원에 동참하여 이 법안을 지지합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이 작년에 목표한 세금 감면을 통과시킨 것은 대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기업들이 나머지 주민들과 같은 규칙을 적용 받도록 세금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우리는 거대한 타주 기업들을 위해 허점이 있는 부당한 세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소기업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17억 달러를 재무국에 반납시켜 우리의 학생, 학교, 공공안전을 위해 사용하려면 이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주의회에 학교와 공공안전을 대기업을 위한 세법의 허점보다 먼저 생각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AVID A. SANCHEZ, 회장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JANIS R. HIROHAMA,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LENNY GOLDBERG, 집행 디렉터
California Tax Reform Association

★ 발의안 제24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24호의 지지자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관대한 공공연금을 줄이지 않을 것이나,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이미 가정과 기업체에 대해 180억 달러의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합니다.

발의안 제24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대기업에만 타격을 줄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정부 조세형평국의 기록을 보면 120,000개의 기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들은 세금이 더 인상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유지하고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발의안 제24호를 적용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Terry Maxwell, T.L. Maxwell's Restaurant

캘리포니아 주는 일자리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가장 유망한 산업들(첨단기술, 생명공학, 청정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17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여 기업들에게 타격을 줌으로써, 해고가 증가하고 더 많은 회사와 일자리가 캘리포니아 주를 떠날 것입니다. 현재 2,000,000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자금이 감소합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인상한 세금에 대한 적절한 지출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을 잘못 사용하여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한 바로 그 정치인들이 이 자금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발의안 제24호가 우리의 경제 회복을 매우 지연시켜, 교실, 공공안전, 고령자 서비스 등에 사용할 장기적인 수입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 위기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우리의 경제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금 개선을 방지하고, 학교와 다른 서비스에 사용할 장기적인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발의안입니다.

일자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발의안 제24호에 반대하십시오.

www.StopProp24.com

KENNETH A. MACIAS, 주 전체 선출 소장
California Hispanic Chambers of Commerce
WILLIAM J. HUME, 전임 부의장
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
JOSEPH L. BRIDGES, 박사, 회장 겸 최고운영자
The Seniors Coalition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4호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 발의안 제24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24호에 반대 투표를 하여 일자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4호는:

- 우리의 교실, 공공안전 또는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에 단 한 푼이라도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에 사용할 장기적인 수입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 *단 한 개의 법적 허점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발의안 제24호는:

- 매년 17억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여 소비자와 고용주에게 타격을 줍니다.
-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없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제공합니다.
- 144,000개의 캘리포니아 주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가로 고용주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우리의 가장 유망한 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막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타주*로 보냅니다.

소기업은 우리의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나, 최근의 경기침체로부터 타격을 받아 직원들을 해고하고 급여를 삭감하고 사업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파산한 소기업의 수는 81%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금 인상에 불과합니다." —John Mullin, 소유주, Pacific M Painting

발의안 제24호는 소기업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살아남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세금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더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폐쇄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들은 발의안 제24호의 새 세금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 환경은 *최악*으로서, 50개 주 중에서 48위입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이러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여 소기업과 고용주에 타격을 주며, 이러한 세금 인상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 현재 *200여 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 실업률은 12.4%로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 의하면, 발의안 제24호는 120,000개의 캘리포니아 주 기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최근의 주세 개선을 무효화합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새로 창출한 일자리에 세금을 부과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저해합니다. 뉴욕 주, 오레곤 주, 텍사스 주 같은 23개의 *다른 주*는 세금제도를 개선했고, 캘리포니아 주도 뒤늦게 동참했으나, 발의안 제24호는 우리 주의 세금제도를 낙후되고 반경쟁적인 제도로 되돌릴 것입니다.

발의안 제24호는 근시안적인 방안으로서, *일자리* 가 거의 없을 때 일자리 창출을 막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학교, 공공안전 및 다른 중요한 서비스에 사용할 장기적인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24호는 경제를 크게 퇴보시킵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일자리의 증가를 저해하고, 기업이 타주로 확장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좋은 일자리와 세금 수입을 잃게 만듭니다.

발의안 제24호는 첨단기술, 청정기술, 생명공학 및 다른 유망한 산업들이 창출하는 새 일자리(우리의 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일자리)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초당파적인 법률분석실은 발의안 제24호가 채택되는 경우 "기업들이. . .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기업, 납세자 및 다음과 같은 다른 단체들에 동참하여 발의안 제24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 California Associ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 BayBio
-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 TechNet

발의안 제24호에 반대 투표를 하여 일자리 세금을 중지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의 일자리를 유지하십시오!

www.StopProp24.com

TERESA CASAZZA, 회장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MARIAN BERGESON, 전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장관
BILL LA MARR, 집행 디렉터
California Small Business Alliance

★ 발의안 제24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세금 공정성법"인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단 한 개의 새 일자리도 창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주적 기업에 대한 17억 달러의 특별 세금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7억 달러는 공립학교, 의료 및 공공안전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것이 교사, 소기업 및 공공안전 단체들이 유권자들에게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24호의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위협전술과 사실의 왜곡은 이러한 다주적 기업들과 CEO들이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동안 이 추가 세금 혜택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발의안 제24호는 다음 사항을 방지합니다.

- 6개의 다주적 기업이 2013 - 14회계연도에 각각 평균 2,350만 달러의 새로운 세금 감면을 받는 것
- 세금 혜택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87%는 0.03%의 캘리포니아 주 대기업에 제공됩니다. 그들의 총수익은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이러한 불공정한 새 세금 혜택이 발효되기 전에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 공정성법입니다!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찬성 투표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세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찬성 투표를 하더라도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찬성 투표를 하더라도 소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찬성 투표를 하면 욕심에 끝이 없는 미국의 일부 최대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불공정한 세금 혜택을 중지*시킵니다*. 이것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12개 부유한 기업이 발의안 제24호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각각 100,000달러를 기부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원합니다.

이것이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24호에 찬성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ROB KERTH, 소장
North Sacramento Chamber of Commerce
MARTIN HITTLEMAN, 회장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HANK LACAYO, 회장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발의안

제25호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주 예산 및 예산과 관련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합니다.
- 의회가 예산 법안을 6월 15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의회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까지 모든 의회 의원들로부터 매일의 급여와 경비에 대한 상환 금액을 영구적으로 몰수할 것을 규정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향후 수년 내에 주 예산과 관련 법안의 내용은 이 법안의 용이한 의회 표결 요건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정도는 주의 재정 상황, 의회의 구성 및 미래의 조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회가 예산을 주지사에게 기한 내에 보내지 못한 연도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매일 약 5만 달러의 주의회 의원 보수 비용이 절약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예산 통과 과정. 주 헌법은 주정부 자금의 지출을 승인하는(따라서, 지출을 허용하는) 권한을 주의회에 부여했습니다. 연간 주정부 예산은 주정부가 한 회계연도(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 동안 지출할 비용을 승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주 헌법에 의하면, 주지사는 1월 1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회의 상하 양원은 각각 연간 예산 법안을 6월 15일까지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주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서명하거나, 또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회의 상하 양원은 각각 3분의 2(67퍼센트)의 표결로 주지사의 거부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주 헌법에는 주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짜는 명시되어 있으나, 최종 예산을 *법률로 발효*시켜야 하는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정부예산 통과에 대한 3분의 2의 표결 요건. 주 헌법에 의하면, 즉시 발효시켜야 하는 "긴급" 법안, 주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법안, 그리고 일반기금 지출 승인(공립학교에 대한 지출 승인 제외)에 대해서는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정부 예산은 일반기금 지출 승인을 포함하고 즉시 발효시켜야 하므로 3분의 2의 표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결정과 같은 예산에 대한 특정한 조치는 주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매년 예산이 통과될 때 첨부되는 "보충(trailer) 법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회가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그러나 보충 법안을 즉시 발효시키려면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지연 예산. 1980년 이후, 주의회는 주지사에게 예산을 회송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한인 6월 15일을 5번 지켰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승인한 최종 예산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발효된 적은 10번 있었습니다(2000년 이후 3번 포함). 주정부 예산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일부 주정부 비용이 예정대로 지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같은 주 선출직 공직자들은 7월 1일 이후에 최종 예산이 발효될 때까지 급여를 수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최종 예산이 발효될 때 전액 지급됩니다.

발의안

예산 법안 및 관련 입법에 대한 주의회 표결 요건 완화. 이 법안은 주의회 상하 양원이 각각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주지사에게 회송하는 데 필요한 표결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회 상하 양원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수(50퍼센트 + 1명)로 완화합니다. 완화된 표결 요건은 자금의 지출을 승인하고 주의회가 "예산 법안에 포함된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한 보충 법안에도 적용됩니다. 예산 법안과 보충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또는 법안에 지정된 차후의 날짜에 발효됩니다. 주지사의 거부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의회의 3분의 2 표결이 요구됩니다. 이 법안의 헌법 관련 조항에는 주세 수입의 증가에 대한 주의회의 표결 요건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안의 의도가 주세에 대한 3분의 2 표결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의회 의원들에 대한 급여 및 경비 상환 금지. 이 법안은 주의회가 예산 법안을 6월 15일까지 주지사에게 회송하지 않은 연도에 주의회 의원들이 급여를 수령하거나 출장비 또는 생활비와 같은 경비를 상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6월 15일부터 예산을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이러한 급여와 경비는 차후에 주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 예산의 승인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주의회가 주정부 예산 법안을 더 쉽게 주지사에게 회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에 대한 주의회 상하 양원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원의 구성으로 볼 때, 표결 요건이 이처럼 완화되면 주의회의 다수 정당 의원들이 소수 정당 의원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 예산 법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3분의 2의 표결 요건에 도달하려면 일부 소수당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한 연도에는 완화된 표결 요건이 예산과 주의회가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한 법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정도는 주의 재정 상황, 주의회의 구성 및 향후의 조치를 포함하는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정부 예산에 발생할 정확한 변경 내용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회가 예산 법안을 6월 15일의 기한까지 주지사에게 회송하지 않은 연도에는 주의회 의원들이 연봉과 출장비 또는 생활비와 같은 경비의 일부를 지급 또는 상환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 법안이 주지사에게 회송될 때까지 주정부의 비용이 매일 약 50,000달러까지 감소합니다.

발의안 제25호의 전문은 1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5호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25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25호는 납세자, 학교, 서비스들이 보호를 받고,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심하게 손상된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승인 과정을 개혁합니다. 예산을 기한 내에 승인하지 못하면 급여도 지불하지 않고, 또한 나중에 상환하지도 않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위기에 대한 상식적인 해결책으로서, 예산이 늦게 통과되면 납세자가 아니라 의회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의안 제25호는 47개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들이 단순 과반수의 표결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의회의 교착상태를 타파하는 단순한 예산 개혁입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25호는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2/3의 표결 요건을 존속시킵니다.

예산 승인의 지연은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학교와 서비스에 피해를 주고, 캘리포니아 주의 신용등급을 손상시키고, 일반 주민의 비용으로 특별이익단체에 특별한 대우를 제공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개혁인 발의안 제25호는 다음 사항을 변경합니다.

—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예산 승인이 지연되는 일수에 대해 의회 의원들에게 해당 급여와 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여와 경비를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예산 승인을 위해 필요한 승인 요건을 변경하여, 의원 과반수의 표결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수의 의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 신규 세금 제정 또는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원 2/3의 표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건을 존속시킵니다.

작년에 예산 승인이 지연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주는 소기업, 주정부 공무원, 주정부와 거래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450,000건의 차용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만으로도 납세자들에게 8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수의 의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삼고, "몸값"으로 경비 혜택을 증가시키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거나, 또는 대기업의 제한적 이익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납세자들은 피해를 입고, 학교, 공공안전,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가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자금은 유리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책략으로 사용하면 주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작년에는 16,000여 명의 교사가 해고되었고 금년에는 26,000건의 해고통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이러한 혼란을 종결시키고, 학교가 주정부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알려주어 예산을 책임 있게 편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주 예산이 지연되면 불가능합니다.

예산의 지연은 세금을 낭비하고 학교와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작년에 예산 승인이 지연되었을 때, 도로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시작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고 캘리포니아 주의 신용등급을 더욱 손상시켰습니다.

발의안 제25호를 주의해서 검토해주십시오. 이 법안은 문안에 쓰여진 대로 의회 의원들에게 예산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예산 교착상태를 종료시키고,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2/3의 표결을 유지합니다.

예산 승인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발의안 제25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MARTIN HITTELMAN, 회장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KATHY J. SACKMAN, 등록간호사, 회장
United Nurses Associations of California/Un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NAN BRASMER, 회장
California 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

★ 발의안 제25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25호의 실제 후원자들은 현직 정치인들과 그들의 친구인 특별이익단체들입니다.

발의안 제25호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은 차입과 적자 지출 같은 더 많은 편법 예산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정치인들이 더 쉽게 세금을 인상하고 적자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과 특별이익단체 사이의 또 하나의 밀실 거래로서, 그들은 이 조항들을 예산 법안에 포함시켜 세금을 인상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작은 글자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 주의회가 판매세, 소득세 및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표결 요건을 완화합니다.
-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나쁜 입법과 높은 요금을 폐지하는 유권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 주의회가 엄청난 자체 면세 경비 계정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표결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25호가 예산 승인 지연에 대해 그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고액의 경비 계정 지급금으로 손실을 쉽게 벌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납세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이 더 쉽게 세금을 인상하고 그들을 공직에 선출되게 한 특별이익단체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법을 개정합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세금 인상, 재정적자 확대, 낭비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Jon Coupal,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발의안 제25호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법안은 의회 의원들이 더 쉽게 자신의 지갑을 채우고, 이 법안의 후원자가 제안한 400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인상하게 합니다.

발의안 제25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No25Yes26.com

TERESA CASAZZA, 회장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GABRIELLA HOLT, 회장
Citizens for California Reform
JOEL FOX, 의장
Small Business Action Committee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5호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25호에 대한 반대 의견 ★

발의안 제25호에 반대하여, 정치인들이 더 쉽게 세금을 인상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우리의 엄청난 예산 적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과 특별이익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세금 인상과 지출 증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세금을 인상하고 투표를 통해서 나쁜 법안을 거부할 우리의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주민들을 오도하는 또 하나의 투표 법안인 발의안 제25호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5호에 작은 글자로 감추어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정치인들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 투표를 요구하고 요금으로 위장한 세금을 중지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사용할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 정치인들이 단순 과반수의 표결로 세금을 예산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규 세금의 제정과 세금 인상을 3분의 2의 표결로 통과시키는 헌법상의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정치인들이 그들의 낭비적인 경비 계정을 쉽게 증가시킵니다. 현재는 이러한 특혜를 주의회의 3분의 2의 표결을 통해서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25호가 승인되면 단순 과반수의 표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5호에 반대하십시오.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5호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출을 억제하거나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낭비를 줄이고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25호에 반대하십시오. 정치인들이 경비 계정을 증가시키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그들이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를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이 오도하는 발의안을 후원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민발의안을 절대로 후원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면세 경비 계정을 2배 또는 3배까지도 증가*시켜 급여 손실 금액을 쉽게 벌충할 수 있게 합니다.

발의안 제25호에 반대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출 증가:

발의안 제25호의 숨겨진 의도는 정치인들이 쉽게 세금을 인상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금을 지출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20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차입이나 편법 예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권리 박탈:

발의안 제25호는 정치인들이 요금으로 위장한 새로운 숨겨진 세금을 예산 관련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며, 이것은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숨겨진 세금 또는 다른 나쁜 법률들을 거부하는 유권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숨겨진 세금을 거부하는 우리의 능력은 유권자를 오도하는 주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발의안 제25호의 숨겨진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을 통과시키는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완화하여, 쉽게 편법을 사용하고 균형 예산이라고 주장(그렇지 않은 경우에도)할 수 있게 합니다.
- 주의회가 세금 인상을 예산에 포함시켜 단순 과반수 표결로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 주민투표를 통해서 숨겨진 세금을 거부하고 나쁜 법률을 폐지할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 주의회가 그들의 낭비적인 경비 계정을 단순 과반수 표결로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No25Yes26.com*을 방문하십시오.

발의안 제25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JOHN KABATECK, 집행 디렉터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California
RUBEN GUERRA, 회장
Latin Business Association

★ 발의안 제25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25호는 세금을 쉽게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새크라멘토가 계속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투표권을 박탈하지도 않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매년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위기를 종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부장관과 주정부의 초당파적인 법률 분석가는 발의안 제25호가 세금 인상에 대한 표결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발의안 제25호는 "이 법안은 주의회가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적인 예산 승인 지연이 학교와 중요한 서비스에 피해를 주고, 경제를 악화시키고, 예산 승인이 지연될 때마다 납세자에게 매일 5,0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의안 제25호는 주의회에 예산 관련 직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25호는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 금액은 예산이 통과된 후에도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25호는 의회 의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발의안 제25호는 47개의 다른 주들처럼 과반수의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소수의 의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삼고 마지막 순간까지 거래를 하여 납세자와 민주주의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발의안 제25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때, 우리에게는 성실하게 일하는 주의회가 필요합니다.

JANIS R. HIROHAMA,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BILL LOCKYER, 캘리포니아 주 재무국장
RICHARD HOLOBER, 집행 디렉터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발의안

제26호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 법무장관이 작성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특정한 주정부의 요금은 주의회 3분의 2의 표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정한 지방정부의 요금은 유권자 3분의 2의 표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한 과세 법안(수입을 순증가시키지 않고 현재 과반수 표결이 적용되는 법안 포함)에 대해서 주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로 강화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새 수입에 대해 강화된 승인 요건이 적용되므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감소합니다. 감소 금액은 통치기구와 유권자들이 향후에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총액이 매년 최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최근의 요금 및 과세 법률 폐지가 주정부에 미치는 추가 재정적인 영향: (1) 교통 프로그램 지출 증가 및 매년 10억 달러의 일반기금 비용 증가, 그리고 (2) 알 수 없는 주정부 수입의 감소 가능성.**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배경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개인과 사업체에 대해 다양한 세금 및 요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와 같은 세금들은 보통 교육, 교도소,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에 비해 요금은 보통 개인 또는 사업체에 혜택을 주는 특정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요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요금—주립공원 입장료와 쓰레기 수거료 같이 사용자가 특정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요금
- 규제 요금—보건검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식당에 부과하는 요금과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음료수 용기 구입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등. 규제 요금은 특정한 공공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특정한 활동이 공중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사업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표 1

승인 요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및 요금

	주정부	지방정부
세금	주정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	• 지방정부가 자금의 사용 방법을 명시하는 경우, 지역 유권자 3분의 2의 찬성 투표 • 지방정부가 자금의 사용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지역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 투표
요금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과반수의 표결	보통 관리기구에서 과반수의 표결.
부동산 요금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과반수의 표결	보통 관리기구에서 과반수의 표결. 부동산 소유주들의 과반수 표결 또는 지역 유권자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 부동산 요금—새 개발 부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량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과 부동산 소유주에게 혜택을 주는 개량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부과금 등

주법에는 세금, 요금, 부동산 요금에 대해 별도의 승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보통 관리기구(주의회, 시의회, 카운티 감독위원회 등)의 과반수 표결로 요금을 제정 또는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때는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주정부가 제안하는 경우), 또는 주민 투표에 의해(지방정부가 제안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요금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규제 요금과 세금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 동안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공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정부는 1991년에 납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대해 규제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이 자금을 납중독의 위험에 처한 아동들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 결과를 추적하고, 중독을 일으키는 납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Sinclair 페인트 회사는 법원에서 이 규제 요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공익을 제공하나, 규제 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2) 요금을 납부하는 회사들은 요금을 납부하는 것 이외에 납중독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가 없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97년에 해당 사업체에 부과하는 이 요금은 세금이 아닌 규제 요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오염을 일으키는 제품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대해 규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논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규제 요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정 또는 인상할 수 있습니다: (1)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과반수의 표결, 또는 (2) 지역 관리기구에서 과반수의 표결.

발의안

이 법안은 세금과 세금 인상의 정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제안들이 주의회 3분의 2의 표결 또는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승인을 받게 합니다. 표 2에는 이 법안의 주요 조항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2

발의안 제26호의 주요 조항

✓ **주세 또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
- 정부가 현재 과반수 표결로 부과할 수 있는 일부 요금을 세금으로 분류합니다.
- 그 결과, 주정부 수입에 대한 더 많은 제안이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정부 수입에 대한 더 많은 제안이 지역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정부 수입과 관련된 일부 제안에 대한 승인 요건 강화**
-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률을 승인하려면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이 법률의 전반적인 재정적 영향이 주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 **이 법안과 상충되는 최근에 통과된 주법을 폐지**
- 이 법안과 상충되는 최근에 통과된 주법을 폐지합니다(주의회가 이러한 주법들을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의 표결로 재승인하는 경우는 제외). 이러한 주법들의 폐지는 2011년 11월에 발효됩니다.

발의안 제26호의 전문은 1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주세 또는 지방세의 정의

정의의 확대. 이 법안은 주세와 지방세의 정의를 확대하여 현재 요금으로 간주되고 있는 많은 납부금들을 세금에 포함시킵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표 1에 요약된 높은 수준의 승인 요건을 적용 받는 수입 관련 제안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보건, 환경 또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들이 이 법안에 의해 세금으로 전환됩니다. 표 3은 이 법안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세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제 요금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금들은 요금 납부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공익을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정부는 현재 이러한 종류의 규제 요금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한 다른 요금들도 세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체 부과금들은 정부가 사업체 소유주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상가를 개선(주차장 제공, 가로등 설치, 보안 강화, 마케팅 등)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요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의의 변경은 대부분의 사용자 요금, 부동산 개발 요금 및 부동산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요금들이 보통 발의안 제26호의 요건을 이미 준수하고 있거나, 또는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 2일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요금들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향후에 요금을 인상 또는 확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의안 제26호의 승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요금이 발의안 제26호와 상충되는 주법(2010년 1월 1일과 2010년 11월 2일 사이에 통과된)에 의해 제정 또는 인상된 경우(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

주세 법안에 대한 승인 요건

현행 요건. 현재 주 헌법에는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은

표 3

광범위한 공익을 제공하는 규제 요금

폐유 재생 요금

주정부는 석유 생산업체에 규제 요금을 부과하고 그 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 지역 폐유 수거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
- 재생 인센티브 제공 비용을 지불
- 연구개발 프로젝트
- 폐유 재생 시설에 대한 검사 및 법집행

유해물질 요금

주정부는 유해 폐기물을 처리, 폐기 또는 재생하는 사업체에 규제 요금을 부과하고 그 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독성 물질 폐기 장소를 정화
- 오염 방지에 대한 홍보
- 폐기물 발생원 축소 계획에 대한 평가
-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

주류 소매점에 대한 요금

일부 시에서는 주류 소매점에 요금을 부과하고 그 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법률 및 조례 집행
- 주류와 관련된 공적 불법 방해(주류법 위반, 폭력, 배회, 약물 거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낙서 등)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인 교육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관행에 의하면, 어떤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금액을 인상하나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을 이와 동일하게(또는 그 이상으로) 인하하는 법률은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주의회의 과반수 표결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승인 요건. 이 법안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주법은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발의안 제26호와 상충되는 주법

폐지 요건. 2010년 1월 1일과 2010년 11월 2일 사이에 채택되었으나 발의안 제26호와 상충되는 모든 주법은 이 발의안이 승인된 후 1년 이내에 폐지됩니다. 그러나 주의회가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그러한 주법들을 다시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료세법 변경. 주정부는 2010년 봄에 휘발유 공급업체들이 납부하는 연료세를 인상했으나, 휘발유 소매업체들이 납부하는 다른 연료세들은 인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주세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으나, 주정부가 그러한 수입을 사용 및 지출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이 융통성을 사용하여 10억 달러의 연간 교통 공채 비용을 주정부 일반기금으로부터 연료세 자금으로 이전했습니다. (일반기금은 학교, 대학, 교도소,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주요 자금원입니다.) 이 조치는 교통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자금의 금액을 감소시키나, 주정부가 일반기금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회가 상하 양원에서 각각 과반수의 표결로 이 세금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법은 주의회가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이 세금을 다시 승인하지 않는 한 2011년 11월에 폐지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 이 분석의 작성을 완료했을 때 (2010년 초여름), 주의회와 주지사는 주정부의 주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새 법률과 자금 제공에 대한 변경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일부는 차후에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폐지해야 하는 주법의 전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승인 요건의 변경. 이 법안은 세금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확대하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 법률을 통과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표 3에 표시된 것과 유사한 많은 환경, 보건 및 기타 규제 요금,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부과금과 기타 부과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요금을 제정 또는 확대하는 새 법률은 세금에 적용하는 더 엄격한 승인 요건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의 재정적인 영향은 주의회, 지역 관리위원회와 지역 유권자들이 향후에 취할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화된 표결 요건으로 인해 제안들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정부 수입은 표결 요건이 변경되기 전보다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주정부 지출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에 적용하는 더 엄격한 승인 요건을 부과하는 요금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경은 재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는 이러한 변경이 주 전체에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변경 전에 비해 매년 최대 수십억 달러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상충되는 법률의 폐지. 상충되는 주법의 폐지는 재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정된 연료세법을 폐지하는 경우, 주정부 일반기금의 비용이 앞으로 약 20년 동안 매년 약 10억 달러 증가할 것이고, 교통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자금이 동일은 금액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 분석의 작성이 완료된 후에 통과된 법률들을 폐지할 수 있고, 이 법안의 일부 조항들이 차후에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폐지 조항이 재정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정부가 2010년에 고려 중인 제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택된 제안들을 폐지하는 경우 주정부의 수입이 감소(또는 어떤 경우에 주정부 일반기금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발의안에 의하면, 주의회가 이러한 법률들을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표결로 재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6호의 전문은 1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6호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26호에 대한 찬성 의견 ★

발의안 제26호에 찬성하여 정치인들이 숨겨진 세금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주와 지역의 정치인들은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요금"으로 변경하여 숨겨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수준:

-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은 신규로 세금을 제정하거나 세금을 인상할 때 주의회의 3분의 2의 표결을 요구하나, 정치인들은 이것을 우회하여 세금을 *단순 과반수 표결*로 통과시키기 위해 명칭을 "요금"으로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지역 수준:

- 지역 수준에서 세금을 인상할 때는 대부분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세금을 "요금"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으며, 이것은 투표를 통해서 숨겨진 세금을 방지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이러한 허점을 개선합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숨겨진 세금을 통과시킬 때 다른 세금을 인상할 때와 동일한 표결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숨겨진 세금을 주의회의 3분의 2의 표결로 통과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 수준에서는 공개투표를 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26호는 환경 및 소비자 규정과 요금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26호의 반대자들에 의해 오도되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및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이러한 법률을 보존하고, 환경 또는 해양의 피해를 청소하고, 필요한 소비자 규정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요금과 전문가 인증 또는 운전을 위한 면허 요금과 같은 정당한 요금을 보호합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헌법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100억 달러*가 넘는 숨겨진 세금을 제안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들이 숨겨진 세금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의 몇 가지 예입니다.

- 식품
- 휘발유
- 장난감
- 물
- 휴대폰
- 전기
- 보험
- 음료
- 긴급 서비스
- 오락

발의안 제26호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주의 정치인들은 이미 180억 달러의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에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더욱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26호를 통과시켜 정치인들을 중지시켜야 할 때입니다." —Teresa Casazza,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지역의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세금을 "요금"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도피적 지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주 수준의 숨겨진 세금을 방지해야 할 때입니다.

발의안 제26호에 찬성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을 보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과 소기업은 일자리를 없애고 가정에 피해를 주는 새로운 세금과 숨겨진 높은 세금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숨겨진 세금을 인상하면 소비자와 납세자들은 일용품에 대해 인상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지금은 새크라멘토에서 낭비적인 지출을 제거할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John Kabateck,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California

발의안 제26호에 찬성 투표를 하여 숨겨진 세금을 방지하십시오—*www.No25Yes26.com*

TERESA CASAZZA, 회장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ALLAN ZAREMBERG, 소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JOEL FOX, 의장
Small Business Action Committee

★ 발의안 제26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여러분은 대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에 특별보호조항을 추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공공안전을 희생시켜 오염자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이것이 발의안 제26호의 의도입니다: 대기업인 석유회사, 담배회사, 주류회사들은 납세자들이 그들이 일으킨 피해를 청소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안 제26호가 소비자와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대기업들은 유권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중보건을 해치는 회사들이 지불한 돈을 "숨겨진 세금"이라고 생각하도록 오도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자체 웹사이트에서는 "석유 유출 청소 비용을 경감하고, 강력한 대응 및 집행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석유 소비 요금"을 숨겨진 세금이라고 인용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몇 가지 다른 요금들이며, 이러한 요금들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해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한 오염자에 대한 요금
- 석유 유출 청소를 위한 석유회사에 대한 요금
- 담배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관련된 담배회사에 대한 요금

발의안 제26호는 환경, 공공안전 및 납세자에게 해롭습니다.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Sierra Club, Planning & Conservation League, Californians Against Waste, California Tax Reform Association은 모두 이 법안이 일반 주민들에게 오염자들이 일으킨 피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의안 제26호에 반대합니다.

지방정부가 경찰서와 소방서 같은 필수 서비스를 삭감하고 있는 이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염자들이 일으킨 피해를 청소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염자가 아니라 일반대중을 보호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2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RON COTTINGHAM, 회장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WARNER CHABOT, 최고 운영 책임자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PATTY VELEZ, 회장
Californi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cientists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6호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26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오염자들이 일으킨 피해를 청소하기 위한 비용을 그들이 지불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비용을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발의안 제26호, 오염자 보호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누가 발의안 제26호를 투표에 회부했을까요? Chevron, Exxon Mobil, Phillip Morris와 같은 석유회사, 담배회사, 주류회사들이 이 법안에 대한 거의 모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러한 회사들이 일으킨 피해를 청소하는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발의안 제26호는 환경 또는 공중보건에 대한 피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세금 인상으로 재정의하기 때문에 2/3의 표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지불금, 즉 공적 불법방해에 대한 오염 요금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납세자에게 대기업이 일으킨 오염을 청소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염을 일으키거나, 공중보건을 해치거나, 또는 공적 불법방해를 일으키는 회사들은 그들이 일으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인 석유회사, 담배회사, 주류회사들은 납세자가 그들이 일으킨 피해를 청소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기업들이 일반대중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밀실에서 발의안 제26호를 작성했고, 이 법안을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한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26호는 단지 대기업들이 일반 주민들을 희생시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요금으로 "위장한" 세금이 아니라, 석유회사와 담배회사들이 진정한 목적을 감추는 것입니다.

- 오염자는 유해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석유회사들은 유출된 석유를 청소하고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담배회사들은 담배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인근 지역에 대한 경찰의 보호와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6호 캠페인이 이른바 "숨겨진 세금"이라고 밝힌 것 중의 하나는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석유 유출 청소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석유회사들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석유회사들이 일으킨 피해는 납세자가 아니라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 끝없는 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안전과 보건에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요금에는 공적 불법방해를 단속하거나 손상된 도로를 보수하는 것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금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기오염에 대처하고, 환경 재난을 청소하고, 유해 폐기물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담배회사와 같은 대기업에 그들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26호가 통과되면 이러한 비용을 납세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오염자를 보호하지 마십시오.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 California 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에 동참하여 발의안 제2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stoppolluterprotection.com

JANIS R. HIROHAMA,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JANE WARNER, 회장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BILL MAGAVERN, 디렉터
Sierra Club California

★ 발의안 제26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발의안 제26호는 정치인들이 기업체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요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허점을 제거합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정치인들이 식품, 물, 휴대폰, 그리고 긴급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숨겨진 세금을 인상하여 수십억 달러의 증가된 비용을 대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정치인들과 특별이익단체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요금"을 부과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근로층 가정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의안 제26호에 반대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순합니다.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징수하여 정치인이 과도한 공공연금 같은 것에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과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발의안 제26호는 정당한 요금을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 또는 소비자 보호법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무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석유 유출 예방 및 대응법
- 유해물질 통제법
- 캘리포니아 주 청정 대기법
- 캘리포니아 주 수질 관리법
- 계약자, 변호사, 의사에 대한 면허 발급과 감독을 규제하는 법률들

"발의안 제26호는 우리의 공기, 해양, 수로 또는 삼림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단 한 건도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며, 단순히 정치인들이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통과시키는 도피적인 요금을 중지시킵니다."—Ryan Broddrick, 전임 디렉터, Department of Fish and Game

다음은 발의안 제26호가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요금으로 위장한 *주 전체의 숨겨진 세금을 통과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세금 인상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의회의 3분의 2의 표결*을 요구합니다.
- 요금으로 위장한 *지역의 숨겨진 세금을 통과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다른 지방세 인상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일반투표*를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26호에 찬성하여 숨겨진 세금을 중지시키십시오. 우리의 환경보호법을 보존하십시오.

www.No25Yes26.com

JOHN DUNLAP, 전임 의장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MANUEL CUNHA, JR., 회장
Nisei Farmers League
JULIAN CANETE, 소장
California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발의안

제27호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공식 명칭 및 요약 **법무장관이 작성**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정부 감사관들이 고른 신청자 풀에서 선정한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 주 하원, 상원, 조세형평국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권한을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를 정할 책임이 있는 선출된 주 하원의원으로 통합합니다.
- 예산을 절감하고, 주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 유권자들은 주의회가 승인한 선거구 경계 지도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동일한 공직에 대해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정확하게 동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내년까지 약 1백만 달러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0년부터 시작하여 10년에 한 번씩 주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수백만 달러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은 주 공직에 대한 선거구 경계를 결정할 책임을 주의회에 반환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에 유권자들이 선거구 경계를 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배경

주 헌법은 주정부가 주하원, 주상원, 주 조세형평국(BOE),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한 경계선을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과정을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연방법을 준수하려면 인구 수가 대략 같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주의회와 BOE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최근의 변경사항. 과거에는 위에 기술된 모든 공직에 대한 선거구 경계가 주의회가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된 법안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주의회와 주지사가 선거구 재조정 계획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선거구를 재조정했습니다.

유권자들은 2008년 11월에 발의안 제11호를 통과시켜, 2010년 인구조사 이후부터 주하원, 주상원 및 BOE에 대한 새 선거구 경계를 정하기 위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10년마다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14명의 등록 유권자(민주당원 5명, 공화당원 5명, 기타 4명)로 구성되며, 위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규칙에 따라 선정합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를 정할 때는 연방법의 요건과 기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요건 중에는 특정한 정당,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 단일 선거구 내에서 시, 카운티, 이웃 및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리적 무결성을 유지. (이 위원회는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를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지리적으로 밀집된 선거구를 개발
- 1개의 상원 선거구 내에 2개의 하원 선거구를 설치하고 1개의 BOE 선거구 내에 10개의 상원 선거구를 설치

현재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과정.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435개의 연방 하원의원 의석 중 53개를 할당 받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이 53석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한 재조정 과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방 하원의원 의석에 대한 선거구 재조정 계획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1호는 주의회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할 때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들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주의회는 이제 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밀집된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고, 주의회가 정의하는 인근 지역, 이웃,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리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11호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를 설정할 때 특정한 정당,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발의안

이 법안은 주하원, 주상원, BOE,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의석에 대한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헌법과 다른 주법들을 개정합니다.

의회 및 BOE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의회에 반환. 이 법안은 주하원, 주상원, BOE에 대한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할 권한을 주의회에 반환합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정할 책임은 계속 주의회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연방 하원의원 및 주 공직 모두에 대한 선거구 경계가 주의회가 통과시키는 법안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설치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폐지됩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은 종료되고, 주의회가 2010년과 그 이후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을 실시합니다.

선거구 경계 재조정 및 과정에 대한 새로운 요건. 발의안 제27호는 선거구 경계에 대한 특정한 요건들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각 선거구의 인구는 같은 공직에 대한 다른 선거구의 인구와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인구 차이가 한 사람 이하). 또한 이 법안은 주의회가 선거구 경계 지도를 작성하기 전후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일반대중이 특정한 선거구 재조정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27호의 전문은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기존 요건 중 일부를 폐지. 또한 이 법안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다음과 관련된 요건과 같은)에 대한 기존의 규칙 중 일부를 폐지합니다.

- 정당,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을 금지
- 지리적으로 밀집된 선거구를 개발
- 1개의 상원 선거구 내에 2개의 하원 선거구를 설치하고 1개의 BOE 선거구 내에 10개의 상원 선거구를 설치

이번 선거에 회부된 2건의 선거구 재조정 관련 법안. 2010년 11월의 선거에는 이 법안 이외에도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다루는 다른 법안(발의안 제20호)이 제출됩니다. 이 2건의 발의안과 현행법의 주요 조항들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2건의 법안을 모두 승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은 법안만이 발효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발의안 제11호 이전과 현행법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 비용. 주의회는 2001년에 선거구 재조정 전용 소프트웨어 및 장치 구입과 같은 선거구 재조정 업무만을 위해 자체 예산에서 약 3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이외에도,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주의회 정규 직원, 시설 및 장치(주의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009년에는 발의안 제11호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따라 2010년 인구조사와 관련된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주의회가 주정부의 일반기금에서 3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청 및 선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주정부 기금에서 약 300만 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 발의안 제11호는 미래의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서 이 위원회에 최소한 10년 전 수준의 자금(인플레이션을 반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의회는 현재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제공할 자금을 자체 예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

선거구 경계선 설정에 대한 현행법과 2010년 11월 선거 발의안들의 주요 조항 비교

	현행법	발의안 제20호	발의안 제27호
주하원, 주상원, 조세형평국 (BOE)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관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a]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주의회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관	주의회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주의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에 대한 정의[b]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주의회가 정의	"공통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접 인구"	주의회가 결정

[a] 이 위원회는 2008년에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b] 현행법과 발의안 제20호 및 발의안 제27호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를 단일 선거구 내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이 발의안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 비용. 이 법안은 10년마다 1번씩 수행하는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위해 250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지출 한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10년마다 조정됩니다.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경사항을 고려할 때 2020년부터 시작하여 10년에 1번씩 수행하는 주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수백만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설치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이미 일부 자금을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인구조사와 관련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절약하는 금액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해 내년까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7호의 전문은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27호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발의안 제27호에 대한 찬성 의견 ★

초당파적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27호에 대해 찬성하면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에 대한 법률분석가와 재정국장의 추정 요약: 10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총 수백만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의안 제27호, 선거구 재조정 재정 책임법(FAIR)에 찬성하십시오. 발의안 제27호는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주고, Arnold Schwarzenegger의 정치적 의석 재분배 책략을 종료시킬 것입니다.

Arnold Schwarzenegger는 2005년에 주로 선거구 재조정 개혁이라고 하는 발의안 제77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거의 3,900만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했으나, 유권자들은 이 법안을 60퍼센트 대 40퍼센트의 차이로 거부했습니다.

Schwarzenegger는 2008년에 1,600만 달러의 특별이익단체 자금을 모금 및 지출하여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적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간신히 통과시킴으로써,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부터 박탈하여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로부터 누적 급여로 최대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마추어 그룹에게 부여했습니다. 발의안 제27호에 찬성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이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줄 기회입니다. 주지사는 선의로 행동했을 수 있으나, 더 이상 무의미한 의석 재분배 책략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주지사님, 우리 주는 파산했고, 실업률은 12%가 넘고, 센트럴밸리의 비옥한 농지에는 물이 없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적인 의석 재분배 책략에 매달릴 것입니까?

2008년 발의안이 통과된 후에 법률로 확정된 Schwarzenegger 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hwarzenegger의 계획에 의하면, 무작위로 선정된 3명의 회계사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료주의적 조직을 운영할 14명의 비선출 위원을 선임합니다. Schwarzenegger의 계획과는 달리, 발의안 제27호에 찬성하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발의안 제27호는 책임을 지는 유일한 개혁 법안입니다.
- Schwarzenegger의 계획에 의하면, 불공정한 연방의회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유권자들의 권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란 유권자들이 주의회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유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chwarzenegger의 계획과는 달리, 발의안 제27호에 찬성하면 모든 선거구 재조정 계획(연방의회 선거구에 대한 계획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최종 결정은 항상 유권자들이 내려야 합니다.
- Schwarzenegger의 계획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집계될 수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 다른 선거구보다 거의 100만 명이나 더 많은 유권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패선거구"가 수세기 동안 존속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Schwarzenegger의 계획과는 달리, 발의안 제27호에 찬성하면 모든 선거구가 정확하게 같은 규모로 설정되고 모든 유권자가 균등하게 집계되는 것이 보장됩니다.

Schwarzenegger 주지사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당파적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27호에 대해 찬성하면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에 대한 법률분석가와 재정국장의 추정 요약: 10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총 수백만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중지합시다. 정치적인 의석 재분배 책략을 종료합시다. 발의안 제27호에 찬성하십시오!

DANIEL H. LOWENSTEIN, 설립 의장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HANK LACAYO, 회장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 발의안 제27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San Francisco Chronicle의 편집인인 John Diaz는 발의안 제27호가 실제로 "현직 의원 보호법"이라고 말합니다.

발의안 제27호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11호를 통과시킴으로써, 그들의 재선을 보장하는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권한을 박탈하고 독립적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과 특별이익단체들이 발의안 제27호를 통과시킴으로써 주 전역의 유권자들로 구성된 주민 위원회를 해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주장 중에서 유일하게 맞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정치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여 유권자들을 오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10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권자가 승인한 주민 위원회는 단지 10년에 한 번씩 지도를 작성하고, 위원들은 작업을 할 때에 한해 소액의 일당을 받습니다. 이것이 납세자들과 선량한 정부 단체들이 이 위원회를 지지하고, 발의안 제27호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새크라멘토의 역사로 볼 때, 독립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에 주의회보다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입법가들의 은밀한 밀실 거래와는 달리 공개될 것입니다." —George Skelton, Los Angeles Times

사실: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지역사회, 도시, 카운티를 잘라내던 구제도와는 달리,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회의를 열고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사실: 유권자들은 이미 주민투표에 의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읽고 검토해보십시오: *www.noprop27.org*

정치인들이 권한을 장악하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발의안 제27호에 반대하십시오.

KATHAY FENG, 집행 디렉터
California Common Cause
RUBEN GUERRA, 회장
Latin Business Association
JOEL FOX, 의장
Small Business Action Committee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7호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발의안 제27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우리는 발의안 제27호에 대해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새 선거구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의안 제27호에 "반대" 투표를 하면 2008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독립적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발의안 제27호에 "찬성" 투표를 하면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해체되고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선거구 경계를 설정합니다.

발의안 제27호에 반대하여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승인한 개혁을 번복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유권자들은 2008년에 발의안 제11호를 통과시켜, 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여 선거 때마다 선출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거의 없고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종료시켰습니다.

유권자들은 발의안 제11호에 의해 공정한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치했으므로, 입법가들은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민주당원, 공화당원 및 무소속 유권자가 포함되며, 캘리포니아 주의 전주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wedrawtheline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이제 인명록 리스트에 들어있는 현직 정치인들은 발의안 제27호를 통과시킴으로써 유권자가 승인한 선거구 재조정 개혁을 무효화하고 선거구 경계를 설정할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특별이익단체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발의안 제27호를 통과시켜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라도 지출하고 어떤 말이라도 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27호에 반대하여 정치인을 보호하고 유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밀실 거래를 중지시키십시오.

Los Angeles Times와 Orange County Register는 정치인들이 지난 번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그들의 의석이 보장되도록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한 정치 컨설턴트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발의안 제27호를 통해서 입법가들이 단지 그들의 재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밀실에서 기이한 형태의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고 도시와 지역사회를 분리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발의안 제27호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 주가 직면하는 힘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도록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기를 원합니다." —Maria Luisa Vela, Los Angeles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정치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7호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안전한 선거구를 원하고, 컨설턴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자신의 의석을 보호하도록 선거구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납세자의 세금과 특별이익단체의 자금을 지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안 제27호는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27호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이미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7호는 정치인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 개혁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발의안 제27호를 통과시켜 그들의 의석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구 경계를 설정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저지해야 합니다." —Kathay Feng, California Common Cause

2011년에는 선거구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독립적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또는 공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치인 중에서 누가 실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발의안 제27호에 반대하면 유권자와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적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계속 권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27호에 찬성하면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재선이 보장되는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권한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발의안 제27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www.NoProp27.org

JANIS R. HIROHAMA,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DAVID PACHECO, 캘리포니아 주 회장
AARP
GARY TOEBBEN, 의장
Los Angeles Area Chamber of Commerce

★ 발의안 제27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현재의 선거구 재조정법은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고 또 하나의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주의적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발의안 제27호에 찬성 투표를 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무의미한 의석 재분배 책략을 종료시키십시오.

개혁의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은 허위 및 오도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다음의 4가지 항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 발의안 제27호는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합니다. 초당파적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27호에 대해 찬성하면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에 대한 법률분석가와 재정국장의 추정 요약: 10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선거구 재조정 비용이 총 수백만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발의안 제27호는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의회의 정치인들은 2001년에 유권자들이 선거구 재조정법에 "반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획책했습니다. 발의안 제27호는 주의회가 연방의회에 대한 선거구 재조정을 거부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방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발의안 제27호는 1인 1표 선거구를 요구합니다. 현행법은 선거구 당 1,000,000명의 인구 차이를 허용합니다!

4) 단 1명의 주의회 의원도 발의안 제27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27호가 비용과 재조정 과정의 무결성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파산했고,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실업률은 매우 높고, 우리의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7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이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무의미한 일에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라고 주장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발의안 제2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MARK MURRAY, 집행 디렉터
Californians Against Waste
DANIEL H. LOWENSTEIN, 설립 의장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 녹색당 ★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 구입 가능한 저가 주택, 지속 가능한 에너지, 단인 지불자 건강보험, 누진 과세가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활기 있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보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 개발을 지지합니다. 녹색당은 기업의 긴급 구제와 법인화를 반대합니다.

녹색당은 다음 사항을 지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 직장 대표,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구입 가능한 저가 주택, 대중 교통 수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지
- 개인의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누진 과세 시행,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탄소세 시행
- 정부 부채 및 적자 지출 종료

헌법상의 권리:

- 인신보호법 지지, 강제적 양형 폐지 및 삼진법 개정 지지
- 애국법 폐지, 이라크에서 철군, 선제 공격을 하는 전쟁 종식
- 직접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토론 및 주 선거에 대한 평등한 참여, 순위 선택 투표, 신뢰성 있는 집계 방법 요구

환경 보호:

- 공공 소유의 안전하고 청정한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 효율 개선, 보존 및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구 온난화 완화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종과 농업용 토지 보호 및 난개발 반대

사회 정의:

- 단일 지불자 건강보험과 무료 공교육 지지
- 불법 이민자의 일할 권리 지지
- 고문과 부당한 감시 종식

녹색당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의 책임, 활기있는 경제,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정의, 헌법상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Green Party of California
P.O. Box 2828, Sacramento, CA 95812

(916) 448-3437
웹사이트: www.cagreens.org

★ 평화자유당 ★

평화자유당은 부자와 대기업이 그들을 위해 운영하는 이 나라에서 근로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지구를 희생해서는 안됩니다. 부유층의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이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지합니다.

- 모든 미군의 즉시 귀환
- 모든 차별 금지
- 이민자들에게 완전한 권리 제공
-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 제공
-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 환경을 회복시키고 보호
-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적 대표
- 모든 사람에게 유아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무료 교육 제공
-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와 완전한 노동권 제공

우리의 시스템이 부유층을 먼저 고려하는 한, 우리는 전쟁, 경찰의 만행, 저임금, 위험한 직장, 오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경제를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주의를 옹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업과 천연자원을 되찾아오는 일에 동참하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예속될 필요가 없고 공동선을 위해 민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평화자유당 입후보자에게 투표하십시오.

Peace and Freedom Party
P.O. Box 24764, Oakland, CA 94623

(510) 465-9414
이메일: info@peaceandfreedom.org
웹사이트: www.peaceandfreedom.org

★ 자유당 ★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우리 주를 운영하기 위한 자유당의 해결책은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지난 10년 간 시행했더라면 우리의 주는 강력해져서 적자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당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정부 지출 축소
-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 개발 촉진
- 주, 카운티, 시를 파산시키는 공무원 연금 개혁
- 저비용의 제공자들이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민영화
-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법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
- 성인들이 사용하는 마리화나를 엄격하게 규제, 통제 및 과세하여 미성년자의 사용을 제한
- 주의회의 회기를 2년에 한 번 소집하는 것으로 축소

자유당은 이러한 개혁을 실행할 입후보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먼저 금년 11월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Libertarian Party of California
Kevin Takenaga, *의장*
14547 Titus Street, Suite 214
Panorama City, CA 91402-4935

(818) 782-8400
이메일: office@ca.lp.org
웹사이트: www.ca.lp.org

정당 취지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당 취지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 ★

민주당은 우리 주의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은 Obama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 기존의 질환을 이유로 아동들에게 혜택 제공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들의 관행을 종료시키고, 수백만 미국인들의 의료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능력이 *증명된 지도자*인 Barbara Boxer와 Jerry Brown을 지지합니다.

Barbara Boxer는 우리 주에 좋은 일자리를 가져오고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 왔습니다.

Jerry Brown이 주지사로 재직했을 때는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의 연간 대학 수업료가 1,194달러였으나, 현재는 연간 9,285달러이고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Cal State 시스템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연간 수업료가 441달러였으나, 현재는 연간 4,827달러이고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주가 현재의 근로층과 중산층 가정들을 위해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강력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강력한 캘리포니아 주를 건설하십시오. *www.cadem.org*에서 등록하십시오.

California Democratic Party
Senator John Burton (은퇴), *의장*
1401 21st Street #200, Sacramento, CA 95811

(916) 442-5707 / **팩스:** (916) 442-5715
이메일: info@cadem.org
웹사이트: www.cadem.org

★ 공화당 ★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은 세금을 감면하고, 낭비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에서 우리 주를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리더로 회복시키는 것을 지원합니다. 활기있는 경제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과 가정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공화당원들은 우리의 비대하고 낭비적인 정부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고 가정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나, 가정을 부양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 온 일반적인 주민들의 옹호자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개인의 미래와 가족을 위해 저축 및 투자를 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적인 자유와 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선량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여러분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에 가입하여 캘리포니아 주를 보호하고,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결정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저희 웹사이트 *www.cagop.org*를 방문하시면 공화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California Republican Party
Ron Nehring, *의장*
Ronald Reagan California Republican Center
1903 West Magnolia Boulevard, Burbank, CA 91506

(818) 841-5210
웹사이트: www.cagop.org

★ 미국독립당 ★

미국독립당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에서 부여된 자유를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저희는 성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신봉합니다. 저희는 헌법이 미국이 스스로와 체결한 계약이라는 것을 신봉합니다. 헌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수정 제10조에 보장된 작은 정부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과중한 세금이 필연적으로 부과됩니다. 헌법의 성실한 적용은 이러한 부담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통치의 무법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에너지와 창의력을 인간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자유롭고 책임있는 기업을 설립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하고, 낙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신봉하고, 가족이 자유, 연민, 책임, 근로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양육, 훈육 및 교육할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합니다.

저희는 강력한 공동 방어와 결합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수정 제2조에 보장된 절대적이고 공존하는 개인적인 권리를 옹호하며, 이러한 공동 방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조약에 의해 침해 받지 않는 국가 주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불법 이민에 반대합니다.

저희는 국경 보안과 우리와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이민 정책을 지지합니다.

American Independent Party
Nathan Sorenson, *의장*
476 Deodara St., Vacaville, CA 95688

(707) 359-4884
팩스: (707) 222-6040
이메일: mark@masterplanner.com

정당 취지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당 취지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 전체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주 전체 공직(연방 공직 제외) 입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지정된 달러 금액 이하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원장, 재무국장, 법무부장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조세형평국 입후보자들은 이 주 전체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지면을 구입하여 최대 250 단어의 입후보자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에 표시된 별표 (*)는 캘리포니아 주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했고, 따라서 이 유권자 안내서에 입후보자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입후보자를 나타냅니다. (일부 적격 입후보자들은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은 74-88페이지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 2일 총선거에 대한 주지사 입후보자의 지출한도는 12,946,000달러입니다.

2010년 11월 2일 총선거에 대한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원장, 재무국장, 법무부장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입후보자의 지출한도는 7,768,000달러입니다.

2010년 11월 2일 총선거에 대한 조세형평국 입후보자의 지출한도는 1,942,000달러입니다.

다음의 주 전체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 리스트는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대해 요구하는 공공 게시 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8월 9일 현재의 최신 정보입니다. 입후보자의 최종 리스트를 보시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htm*을 방문하십시오.

주지사

* Carlos Alvarez	평화자유
Jerry Brown	민주
* Chelene Nightingale	미국독립
* Dale F. Ogden	자유
* Laura Wells	녹색
Meg Whitman	공화

부지사

* Pamela J. Brown	자유
* James “Jimi” Castillo	녹색
* Jim King	미국독립
* Abel Maldonado	공화
* Gavin Newsom	민주
* C.T. Weber	평화자유

주 전체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

총무처장관

* Debra Bowen	민주
* Marylou Cabral	평화자유
* Damon Dunn	공화
* Ann Menasche	녹색
* Merton D. Short	미국독립
* Christina Tobin	자유

회계감사원장

* Lawrence G. Beliz	미국독립
* John Chiang	민주
* Andrew "Andy" Favor	자유
* Ross D. Frankel	녹색
* Karen Martinez	평화자유
Tony Strickland	공화

재무국장

* Charles "Kit" Crittenden	녹색
* Robert Lauten	미국독립
* Bill Lockyer	민주
* Debra L. Reiger	평화자유
* Edward M. Teyssier	자유
* Mimi Walters	공화

법무부장관

* Peter Allen	녹색
* Steve Cooley	공화
* Robert J. Evans	평화자유
* Timothy J. Hannan	자유
Kamala D. Harris	민주
* Diane Beall Templin	미국독립

보험국장

* William Balderston	녹색
* Richard S. Bronstein	자유
* Dave Jones	민주
* Dina Josephine Padilla	평화자유
Clay Pedersen	미국독립
* Mike Villines	공화

공교육감

* Larry Aceves	초당파적
* Tom Torlakson	초당파적

조세형평국 제1선거구

* Sherill Borg	평화자유
* Kevin R. Scott	공화
* Kennita Watson	자유
* Betty T. Yee	민주

조세형평국 제2선거구

* Willard D. Michlin	자유
* Toby Mitchell-Sawyer	평화자유
* Chris Parker	민주
* George Runner	공화

조세형평국 제3선거구

* Mary Christian Heising	민주
* Jerry L. Dixon	자유
* Mary Lou Finley	평화자유
* Terri Lussenheide	미국독립
* Michelle Steel	공화

조세형평국 제4선거구

* Peter "Pedro" De Baets	자유
* Shawn Hoffman	미국독립
* Jerome E. Horton	민주
* Nancy Lawrence	평화자유

캘리포니아 주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는 연방상원을 포함하는 연방공직 입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방상원 입후보자는 이 유권자 안내서의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구입할 *옵션*이 있습니다. (일부 연방상원 입후보자들은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은 7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방상원

Barbara Boxer	민주
Marsha Feinland	평화자유
Carly Fiorina	공화
Gail K. Lightfoot	자유
Edward C. Noonan	미국독립
Duane Roberts	녹색

공직별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 연방상원 ★

- 연방상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이익을 대표할 2명의 상원의원 중 1명을 선출합니다.
- 새 연방법을 발의 및 투표합니다.
- 연방판사, 미국 대법원판사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민간 및 군 고위직을 인준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합니다.

DUANE ROBERTS
녹색
P.O. Box 5123
Anaheim, CA 92814
info@voteforduane.org
www.voteforduane.org

www.voteforduane.org를 참조하십시오.

MARSHA FEINLAND
평화자유
2124 Kittredge St., #66
Berkeley, CA 94704
(510) 845-4360
mfeinland@att.net
feinlandforsenate.org

모든 미군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즉시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미국의 부를 사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합시다.

GAIL K. LIGHTFOOT
자유
P.O. Box 598
Pismo Beach, CA 93448
(805) 709-1130
www.gailklightfoot.com

직업 정치인, 로비스트 및 *정권을 잡은 정당*들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대기업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한 임기만 재임하기로 약속한 저는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고, 세금, 지출, 규제를 삭감하기 위해 투표하고, 미군을 해외에서 철수시키고,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고, 연방준비은행을 감사할 것입니다.

BARBARA BOXER
민주
P.O. Box 411176
Los Angeles, CA 90041
(323) 836-0820
info@barbaraboxer.com
www.barbaraboxer.com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계획은 *www.BarbaraBoxer.com*에서 읽어보십시오.) 첫째로, 저는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회사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종료시키고, 그 대신에 중산층 가정과 이 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유럽, 인도 또는 중국으로 내보내는 회사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저는 캘리포니아 주를 새로운 청정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 일자리, 그리고 엔지니어, 건설 근로자, 영업사원 및 사무실 직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오염을 줄이고 외국산 석유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청정 에너지에서 "미국 제품"이라는 표시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제가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를 위해서 교통 자금을 2배로 증가시키도록 지원하고, 우리의 도로, 교량, 대량수송기관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계속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원의원으로서 백만 명의 자녀들을 거리로 내보내지 않고 갱단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최초의 연방 방과 후 프로그램과 우리의 공기, 물, 해안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1,000여 개의 조항들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역 상이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켰습니다. 지금은 손쉬운 해결책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각 가정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CARLY FIORINA
공화
915 L Street, Suite C-378
Sacramento, CA 95814
(877) 664-6676
info@carlyforca.com
carlyforca.com

저는 비서로 직장 경력을 시작했고, MBA를 취득한 후에 Fortune 20에 속하는 대기업인 Hewlett-Packard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급증하는 연방의 지출과 재정 적자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속 불가능한 미래의 부채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경기부양책 같은 실패한 연방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있었으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당파성, 이념 및 차기 선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엄격한 재정적 보수주의자로서 지출을 줄이고, 연방의 재정 적자를 삭감하고, 경제에 대한 연방의 통제 확대를 중지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생활방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CIA의 외부자문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테러리스트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테러리스트를 민간법원에서 심리하는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당파적 정치에 싫증이 나셨으면 저 같은 정치적 국외자를 워싱턴으로 보내십시오. 저는 정당을 초월하여 진정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정부를 되찾아서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Carly Fiorina입니다. 저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DWARD C. NOONAN
미국독립
1561 N. Beale Rd.
Marysville, CA 95901
(530) 743-6878
ednoonan@4xtreme.org
http://www.4xtreme.org

http://www.4xtreme.org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지사 ★

- 주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부분의 주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감독하고 판사를 임명합니다.
- 새 법률을 발의하고 통과된 법률을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 주의 연간 예산을 작성 및 제출합니다.
-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 자원을 동원하고 지휘합니다.

LAURA WELLS
녹색

P.O. Box 10727
Oakland, CA 94610

(510) 225-4005
info@laurawells.org
www.laurawells.org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교, 보건, 환경, 일자리, 사회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기업 및 초부유층과 타협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캘리포니아 주를 완전히 파산시켰고, 실업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는 *주립은행*을 설립하여 월스트리트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법인 발의안 제13호의 장점을 확대하여 사람들을 계속 주택에서 살게 하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에 대해 1/3의 소수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정 과세를 실행하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LauraWells.org를 참조하십시오.

CARLOS ALVAREZ
평화자유

137 N. Virgil Ave., #203
Los Angeles, CA 90004
www.votepsl.org

(323) 810-3380
carlos4gov@votepsl.org
www.peaceandfreedom.org

전쟁과 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건강관리에 자금을 제공합시다!

DALE F. OGDEN
자유

3620 Almeria Street
San Pedro, CA 90731-6410

(310) 547-1595
dfo@dalefogden.org
www.daleogden.org

제가 주지사로 선출되면 부분 항목 거부권과 주민 발의안 같은 주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적 책임과 건전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상당히 낮추고(특히 소득세), 해롭고, 쓸모없고,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에 대해 직원 수를 줄이고, 미래의 지출을 영구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기업 친화적이고, 세금이 낮은 환경을 제공하면 수천 개의 기업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캘리포니아 주에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으로부터 얻는 추가 세금 수입은 부채를 상환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세금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정부 직원들의 과도한 급여와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현재와 미래의 주정부 직원에 대한 은퇴 연령을 현재의 55세(또는 5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 관료 및 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사이의 담합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또한 저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마리화나 소지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할 것입니다. 저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발의안 제19호를 지지합니다. 성인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중독성 물질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지 혜택을 줄여, 일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복지 수당 케이스의 35%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합니다(그러나 인구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결혼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배제), 정부는 개인생활과 경제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과거와 같은 좋은 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유당에 투표하십시오.

CHELENE NIGHTINGALE
미국독립

P.O. Box 901115
Palmdale, CA 93550

(310) 237-5590
contact@nightingaleforgovernor.com
www.nightingaleforgovernor.com

저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어머니, 의식이 있는 주민, 그리고 여성 자영업자로서 우리의 주를 구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황금의 주를 회복시킬 해결책이며, 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준수하는 캘리포니아 주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민들과 *더불어* 이 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자신의 창의성이므로 "우리 주민" 협약을 제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가장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지키고, 자유시장체제를 지지하고, 일자리를 되찾고,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표를 당부 드립니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부지사 ★

- 주지사가 탄핵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면직되거나, 또는 주 내에 부재 중인 경우, 주지사의 직위와 직무를 승계합니다.
- 주상원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표결 결과가 찬부 동수인 경우 결정짓는 한 표를 행사합니다.
-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주 토지위원회 위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JAMES "JIMI" CASTILLO
녹색

305 N. Second Avenue, #297
Upland, CA 91786

ltgov@jimicastillo.org
www.jimicastillo.org

수감 대신에 교육. 모든 사람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촉진합시다. 환경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주립공원, 공기, 물, 토지를 보호합시다.

C.T. WEBER
평화자유

1403 Los Padres Way
Sacramento, CA 95831

(916) 422-5395
ctwebervoters@att.net
ctweberforlieutenantgovernor.org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적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불안하고,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초부유층에게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합시다.

PAMELA J. BROWN
자유

14547 Titus Street, Suite 214
Panorama City, CA 91402

(877) 884-1776
pamecon@sbcglobal.net
www.cawantsfreedom.com

저는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침몰시키는 것을 주시해온 경제학 교수입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고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지사의 직위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직자들은 선거운동 기부금과 교환하여 보호 받는 그룹들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최저 비용,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와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억 달러의 수감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연금 비용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아야 하며, 그 이유는 이러한 때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농장주들은 수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작은 어류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안선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주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관광객들과 이 주에서 살기를 원하는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발의안 제25호를 반대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한 정당이 주 재정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분의 2 표결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거나 사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합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발의안 제19호를 지지합니다. 성인들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수정헌법 2조를 평생 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기를 소유하는 범죄자들은 가장 중형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동의했을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우리 주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GAVIN NEWSOM
민주
4104 24th Street, #766
San Francisco, CA 94114
(415) 412-3455
gavin@gavinnewsom.com
www.gavinnewsom.com

제가 부지사에 입후보하는 이유는 주정부가 파산했고 캘리포니아 주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개의 다양한 소기업을 설립했고 모두 합해서 1,00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시장 겸 카운티 감독관으로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고임금의 녹색 산업 일자리를 창출했고, 학교에 투자하여 시험 성적을 향상시켰고, 경찰과 소방 활동에 대한 전체 자금을 제공했고, 환경을 보호했고, 전주민 의료보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적은 *균형 예산과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는 건전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달성되었습니다.* 저는 *Time Magazine*이 저를 *"미국 최고의 대도시 시장"*으로 지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지사로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능률적인 학교를 만들고, 청정한 공기 및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업료 인상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효과가 증명된 직업 훈련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소중한 해안을 시추하기를 원하는 텍사스 주의 석유 회사들과 맞서서 싸우고 우리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새크라멘토에서 소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관료들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교사, 간호사, 경찰과 소방대원, 사업계 지도자, 주요 환경 단체, 그리고 Dianne Feinstein 연방 상원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혁을 위한 저의 선거운동에 동참하시려면 *www.gavinnewsom.com*을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ABEL MALDONADO
공화
150 Post St., Suite 405
San Francisco, CA 94108
(831) 206-6460
abel@abelmaldonado2010.com
www.abelmaldonado2010.com

새크라멘토의 혼잡스러움에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혼잡을 제거하기 위한 저의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저는 입법가 겸 부지사로서 주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주가 재정 적자를 겪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작성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새크라멘토의 무책임한 지출을 중지*시키기 위해 주정부 지출의 상한선을 정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을 비축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인들의 손을 묶었습니다. 저는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제거*하고 고용주가 새 일자리를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혁했습니다. 저는 *정당을 초월하여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세금을 오용하여 호화주택을 수리한 UC 공무원들의 엄청난 급여를 공개하여 우리의 학교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수업료와 기타 요금을 포함하는 학비를 인상하려는 시도에 반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새크라멘토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저는 갱단의 폭력과 다른 약물 관련 범죄들을 줄임으로써 *이웃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Crime Victims United 단체로부터 "올해의 입법가"로 지명을 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저는 부지사로 선출되면 경제를 재건하고, 우리의 학교에 우수성을 요구하고, 세금을 낭비, 사기,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독립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www.abelmaldonado2010.com.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총무처장관 ★

- 주의 선거 최고 책임자로서, 주 전체 선거를 감독하고, 선거운동 및 로비에 대한 자금 관련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합니다.
- 특정한 종류의 사업체와 상표를 등록 및 인증하고, 공증인을 규제하고,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보호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 역사적 보물들을 취득, 보호 및 공유함으로써 이 주의 역사를 보존합니다.
- 동거관계와 사전 의료지시서를 등록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비밀주소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특정한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ANN MENASCHE
녹색

6266 Snowbond St.
San Diego, CA 92120

(619) 795-4392
ann@voteann.org
www.voteann.org

저는 초부유층과 대기업들이 금권 선거를 하고, 정치인들을 부패시키고,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민권변호사와 정치활동가로 오랜 경험을 쌓은 저는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싸우고, 대기업의 범죄를 엄중히 단속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돈에 매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Ann에게 투표하십시오! *www.voteann.org*

MARYLOU CABRAL
평화자유

137 N. Virgil Ave., #203
Los Angeles, CA 90004
www.votepsl.org

(323) 810-3380
marylou@votepsl.org
www.peaceandfreedom.org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투표권을 이민자와 죄수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선거일을 휴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CHRISTINA TOBIN
자유

P.O. Box 470296
San Francisco, CA 94147

christina@tobinforca.org
www.tobinforca.org

Christina는 성인이 된 후 평생을 개인 유권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DEBRA BOWEN
민주

600 Playhouse Alley, #504
Pasadena, CA 91101

(626) 535-9616
info@debrabowen.com
www.debrabowen.com

지난 4년 간 총무처장관으로 봉직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최대의 주의 최고 선거 책임자인 저의 목표는 투표 시스템이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이 모든 표가 투표한대로 정확하게 집계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직에 취임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독립 컴퓨터 과학자의 검토 결과 투표 시스템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저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선거 보안을 개선했고, 이것은 타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강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당파보다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복에게 주는 John F. Kennedy Profile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공직에 취임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 시스템을 개선한 것 이외에도 이 기관의 운영을 능률화하여 예산을 25% 이상 삭감했고, 선거 사기 방지 노력을 강화했고, 기업 및 비영리 단체들과 제휴하여 더 많은 적격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에 투표하도록 권유했고, 입후보자와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운동 기부금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했고, 제가 내리는 결정을 여러분이 추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했습니다. 저는 주 전역에서 소방대원, 교사, 고속도로 순찰대원, 치안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가 재선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리더십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DAMON DUNN
공화
925 University Avenue
Sacramento, CA 95825
(916) 648-1222
damon@damondunn.com
www.damondunn.com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파산했습니다. 가정과 소기업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Damon Dunn이 총무처장관에 입후보하는 이유입니다. Damon은 16살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Damon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Damon은 단순히 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Damon은 Stanford University를 졸업했고, NFL 선수로 활약했으며, 성공한 소기업주가 되었습니다. Damon은 Latino Educational Attainment Initiative, Make a Wish, St. Augustine Soup Kitchen, Cops-N-Kids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희망과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Damon은 총무처장관으로서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사업 환경 개선, 2) 최고 선거 책임자로서 투표의 정직성 보장.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있고, 우리는 일자리를 다른 주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총무처장관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등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Damon은 그의 사업 경험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업들과 만나서 그들이 이 주를 떠나는 이유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는 면담 결과를 캘리포니아 주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 주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정직한 선거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투표를 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의 정직성을 향상시키고 부정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Damon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간단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www.DamonDunn.com

MERTON D. SHORT
미국독립
P.O. Box 180
Durham, CA 95938
(530) 345-4224
mertfly@aol.com

미국독립당(헌법당 전국 지부)의 의장으로 2번 봉직하는 동안 총무처장관실의 직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선거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2차대전 중에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항공기장을 받았을 때 국내외의 모든 적들로부터 연방헌법을 보호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약화된 것은 대부분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헌법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총무처장관으로 선출되면 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권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 참여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원장 ★

- 주정부의 최고 재정 책임자로서, 모든 공공자금의 회계 및 장부 기장을 관리합니다.
- 주정부 급여 시스템을 관리하고 미청구 재산법을 시행합니다.
- 조세형평국과 감사원을 포함하는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 주 운영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실시합니다.

ROSS D. FRANKEL
녹색

P.O. Box 607
Lawndale, CA 90260

electross2010@earthlink.net
www.electross.com

www.electross.com

KAREN MARTINEZ
평화자유

1403 Los Padres Way
Sacramento, CA 95831

(916) 599-6223
hello_karen@rocketmail.com
peaceandfreedom.org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이 조정하는 정치인들이 싫증나지 않으십니까? *유권자의* 의견을 밝히십시오! *Karen Martinez*에게 투표하십시오.

ANDREW "ANDY" FAVOR
자유

24422 Avenida De La Carlota, #275
Laguna Hills, CA 92653

(949) 697-1224
andy@andyfavor.net
www.andyfavor.net

친기업, 자유. 검약.

JOHN CHIANG
민주

c/o SG & A Campaigns
600 Playhouse Alley, Ste. 504
Pasadena, CA 91101

(626) 535-9616
johnchiang2010@gmail.com
www.johnchiang2010.com

John Chiang은 우리의 세금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독립적인 감시자입니다. John Chiang은 주 회계감사원장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을 더 투명하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의 책략과 속임수에 적극 반대합니다. John Chiang은 주지사와 주의회가 무능하여 예산을 적시에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지방정부와 중요한 공공 서비스(법집행 및 교육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싸웁니다. 중립적인 재정 전문가에 의하면, 그의 전문적인 현금 관리 능력이 주정부의 신용 등급이 정크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절약했습니다. John Chiang은 그의 독립적인 감사권을 사용하여 낭비적인 정부 지출을 단속했습니다. 그는 이미 20억 달러가 남는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적발했으며, 이것은 어떤 전임 회계감사원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John Chiang은 연금 자금의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금 증가와 이중 수령을 금지하고 공공자금을 투자할 책임이 있는 연금위원회의 이해의 상충을 제거하는 입법을 후원했습니다. John Chiang은 주의 미청구 재산법을 개혁하여, 10억여 달러에 달하는 보험회사, 모기지회사, 공익사업체, 은행의 채무를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환불했습니다. John Chiang은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 중요한 고령자와 근로 가정에 대한 면세 지원을 제공하여, 세금 환불과 공제를 통해서 3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절약해주었습니다. 그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복잡한 세법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JohnChiang2010.com*을 방문하십시오.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감시자에게 다시 선택하십시오. John Chiang을 회계감사원장으로 선출하십시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무국장 ★

- 주정부의 재정 책임자로서, 주의 투자를 관리합니다.
- 주정부 장단기 공채의 판매를 시행하고, 대부분의 주 기금에 대한 투자 책임을 집니다.
- 대부분 공채 판매와 관련된 몇 개의 위원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거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회계감사원장과 다른 주정부 기관들이 지출한 주정부 기금을 지불합니다.

CHARLES "KIT" CRITTENDEN
녹색
11300 Foothill Blvd., #19
Lake View Terrace, CA 91342
(818) 899-1229
ccrittenden@csun.edu
crittendenforstatetreasurer.com

주립은행을 설립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자금을 캘리포니아 주에 예치할 것입니다. 대기업에게 그들의 몫을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석유추출세를 부과하면 녹색 에너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rittendenforstatetreasurer.com을 참조하십시오.

DEBRA L. REIGER
평화자유
P.O. Box 22234
Sacramento, CA 95822
www.reigerfortreasurer.com

주정부 자금을 안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전쟁 부당 이득자, 인권 위반자, 대기업 오염자들에게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고, 주립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을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DWARD M. TEYSSIER
자유
3200 Highland Ave., #300
National City, CA 91950
taxfighters1776-caltreasurer@yahoo.com
www.teyssier.com/edward

소기업주이고 변호사인 저는 납세자들을 대신한 정부기관과의 소송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과도한 공공연금의 제거, 세금 인하, 주정부의 과잉 규제 제거, 자유 기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서 재정적 건전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BILL LOCKYER
민주
1230 H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 444-1755
bill@lockyer2010.com
www.lockyer2010.com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재난으로부터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더 많은 타격을 받았고, 우리의 경제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무국장으로서 65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은 금융시장이 붕궤했을 때 수백만 달러를 잃었으나, 우리는 단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견실한 수익을 달성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투자 자금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했고 중요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의 신용평가기관과 투자은행들에 이의를 제기하여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의 세금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신용시장을 통해서 도로와 학교 건설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최저 이자율을 적용 받기 위해 힘든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해내어, 100,000개의 급여가 좋은 민간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사업체들이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10여 년 전에 진정한 균형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는 주상원의 원내총무였습니다. 저는 재무국장으로서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캘리포니아 주는 매년 정직한 균형예산을 기한 내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자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제공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입 내에서 지출했습니다. 저의 기록을 보시면 제가 다음과 같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현명하게 투자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주정부의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공채 자금을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지출할 것입니다. 저는 재무국장으로서 새크라멘토의 재정적인 무모함과 부도덕한 특별이익단체의 부당 이익에 반대하는 의사를 항상 정정당당하게 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저를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MIMI WALTERS
공화
250 El Camino Real, Suite 105
Tustin, CA 92780
www.mimiwalters.com

캘리포니아 주는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낭비적인 지출과 잘못된 재정 관리로 인해 우리 주는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금융기관들을 정비하기 전에 새크라멘토의 주의회와 주정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업과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저는 우리의 세금이 새크라멘토에서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주정부는 낭비가 심하고 주의회는 특별이익단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익단체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이 되면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는 저를 재무국장으로 추천했고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로부터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투자로부터 세금을 보호, 낭비적인 정부의 지출 축소, 가정과 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정부의 모든 자금 지출에 대해 책임을 부과. 저는 기업, 금융, 지방정부에 대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전에 주요 투자은행의 투자 담당 임원으로 7년 간 재직했습니다. 저는 UCLA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California Women's Leadership Association을 설립했고 다음과 같은 단체의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American Cancer Society, South Coast Medical Center Foundation. 과거의 정치인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새크라멘토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새크라멘토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의 웹사이트 *www.MimiWalters.com*을 방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OBERT LAUTEN
미국독립
P.O. Box 121
Brea, CA 92822
www.robertlauten.com

저는 미국을 경제적인 붕괴로부터 구하기 위해 1933년 대공황 시대의 금융 개혁 입법인 Glass-Steagall 법의 복원을 지지합니다*(www.LaRouchePAC.com/credit).* 상원에서 Glass-Steagall 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은 Obama 대통령을 탄핵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23호, "캘리포니아 주 일자리 주민발의안"에 찬성 투표를 할 것입니다 *(www.SuspendAB32.org).* 저는 헌법을 구체화한 연방 이민법을 주법으로 채택하여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애리조나 주의 노력을 지지합니다*(www.BuyCottArizona.com/FACTS.html).*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

- 주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주법을 균등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 주정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의 수장입니다.
- 주정부 소송에서 최고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카운티 지방검사와 보안관을 포함하는 법집행기관을 감독합니다.

PETER ALLEN
녹색

www.peterallenforag.com

환경 보호, 마리화나 합법화, 사형제도 종료, 기업의 책임, 사회정의를 위해 저에게 투표해주십시오.
www.peterallenforag.com

ROBERT J. EVANS
평화자유

1736 Franklin St., 10th Floor
Oakland, CA 94612

(510) 238-4190
redrobert@prodigy.net
www.justiceforcalifornia.org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사회정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기업 범죄자 수감, 시민적 자유 옹호, 경찰 범죄 기소, 사형제도 폐지를 의미합니다.

TIMOTHY J. HANNAN
자유

576 B Street, Suite 2-A
Santa Rosa, CA 95401

(707) 578-0903
tim@timhannanlaw.com
www.votefortimhannan.org

저는 작은 정부, 개인의 권리, 재정적인 책임과 같은 자유당의 원칙들을 신봉합니다. 주정부는 규제와 과세가 너무 과도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선출되면 캘리포니아 주법을 집행하는 데 자유당의 원칙들을 적용할 것입니다. 저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발의안 제19호를 지지합니다. 저는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 및 소지할 개인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을 위해 주택 및 사업체를 몰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토지수용권 개혁을 지지합니다. 법무부장관실은 경찰 비행 사건을 지방검사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은 인근지역의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 특히 갱단의 폭력과 싸워야 합니다. 삼진법은 폭력범죄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는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와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모든 형태의 사기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제가 이러한 중요한 개혁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EVE COOLEY
공화

10153½ Riverside Dr., Suite 155
Toluca Lake, CA 91602

(213) 598-5058
info@stevecooley.com
www.stevecooley.com

저는 Steve Cooley 지방검사입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닌 전문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선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간 미국 최대의 지방검사실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선출되면 정부의 사기, 부패 및 권한 남용을 척결하고, 새크라멘토의 정직성과 재정적 책임을 회복시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L.A. 카운티의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정치인, 정부 공무원과 부패한 법률가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공공 정직성부*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강력히 지지하고*, 저의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지방검사들보다 더 많은 사형 유죄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피해자 영향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고령자와 아동 학대 및 성적 학대 피해자와 같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제사건" 과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DNA*와 법과학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 오염 행위를 중지시킨 강력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Narcotic Officers' Association는 저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강인한 지방검사" 라고 부릅니다. 저는 일선 경찰관과 검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법무부장관 입후보자입니다. 수천 명의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법집행 단체들은 제가 일반대중의 안전을 항상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를 지지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선출되면 "주민의 법률가" 가 되어 정부가 납세자와 주민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폭력 범죄를 철저히 방지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할 것입니다.

DIANE BEALL TEMPLIN
미국독립

1016 Circle Drive
Escondido, CA 92025

(760) 807-5417
dianetemplin@sbcglobal.net
templin4attorneygeneral@blogspot.com

templin4attorneygeneral@blogspot.com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보험국장 ★

- 보험국의 모든 기능을 감독 및 지휘합니다.
- 보험회사들을 인가, 규제 및 조사합니다.
- 보험업계와 관련된 공중의 질문과 불만에 답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보험법을 시행하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합니다.

WILLIAM BALDERSTON
녹색

2321 Humboldt Ave.
Oakland, CA 94601

(510) 436-5138
bbalderston@earthlink.net
healthforall2010.net

보험회사의 비행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healthforall2010.net

DINA JOSEPHINE PADILLA
평화자유

7564 Watson Way
Citrus Heights, CA 95610

(916) 725-2673
dinajpadilla@gmail.com
padilla4insurancecommissioner.com

Dina J. Padilla가 보험국장이 되는 것은 보험업계에 최악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www.padilla4insurancecommissioner.com*

RICHARD S. BRONSTEIN
자유

14547 Titus St., #214
Panorama City, CA 91402

(818) 342-9200
insure@greensky.com
www.vote4rick.com

제가 보험국장으로 선출되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무의미한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인상합니다.

DAVE JONES
민주

1005 12th St., Ste. H
Sacramento, CA 95814

(916) 349-4236
assemblymemberdavejones@gmail.com
www.davejones2010.com

우리는 보험회사와 맞서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용기있고, 정직하고, 독립적인 보험국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Dave Jones가 필요합니다.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는 Dave Jones를 주의회의 "소비자 옹호자"로 지명했습니다.* Anthem Blue Cross가 최대 39%의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을 때, Dave Jones는 이러한 인상을 중지시키고 미래의 엄청난 요금 인상을 방지하는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Dave Jones는 보험회사가 같은 건강보험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급등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통제하기 위한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Dave Jones는 피부양 고령자들이 권한을 악용하는 후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Dave Jones는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연방자금을 확보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에 건강관리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Dave Jones는 Capitol Weekly로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유능한 입법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Los Angeles Times*는 Jones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San Francisco Chronicle*은 그를 "활기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강력한 보험업계를 규제하는 문제에 용기있게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Sacramento Bee*는 Jones가 "소비자를 위한 불독"이 될 것이고, 그의 "독립적인 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중요한 직위에 안성맞춤"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보험국장 입후보자인 *Dave Jones는 보험회사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독립성을 보유할 것입니다. Dave Jones는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보험국장 입후보자인 Dave Jones에게 투표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avejones2010.com*을 방문하십시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MIKE VILLINES
공화

1127 11th Street, Suite 427
Sacramento, CA 95814

(916) 446-4898
joinmike@mikevillines.com
mikevillines.com

저는 보험국장으로 선출되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경제를 재건하고, 사기를 척결하는 3가지 주요 목표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의 최우선 과제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항상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처럼 힘든 시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주요 세법 개혁을 위해 싸웠고 새로운 세법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요금을 낮게 유지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는 비용을 줄이는 비용 억제 법안을 지지합니다. 보험 사기는 캘리포니아 주민 1인당 평균 5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인상하게 만들므로 우리 모두에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소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료를 낮출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기존 질환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거부 당한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돕기 위한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타주의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비용에 대한 주세 공제를 확대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타주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저가의 건강보험 제공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 건강보험도 함께 옮기는 것을 지지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3 자녀의 아버지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사기를 척결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추진하여 건강관리와 우리의 경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www.mikevillines.com을 방문하십시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교육감 (초당파적 공직) ★

- 주의 최고 공교육 책임자로서, 교육 정책과 지역 학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고, 주 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 주 고등교육 시스템 관리위원회에 직권상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협력합니다.

LARRY ACEVES

(408) 288-8181
larry@larryaceves2010.com
www.larryaceves2010.com

*Los Angeles Times*는 Larry Aceves를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고, "은퇴 교육감 Larry Aceves는 이 주의 거대한 교육 관료주의를 관리하고 예산 축소로 인해 혼란에 빠진 학교들에게 이성과 낙관주의를 되찾게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느낌을 주고, 학업 성취 목표에 미달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ra Costa Times*는 *"Aceves는 비정치적 국외자고 유능한 공교육감이 되기 위한 경험, 지식 및 독자성을 갖추고 있다"*고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학부모인 동시에 교사, 교장, 교육감을 역임한 Larry Aceves는 우리의 학교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유치원 교사였을 때는 과밀한 교실에서 가르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가 교장이 되었을 때는 학부모 및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교를 개선했습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수백 명의 교사들을 관리했고 낭비를 없애고 책임을 요구하여 7,000만 달러 예산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Larry의 리더십 하에서는 시험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유아원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학교에서 갱단을 추방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올해의 교육감"으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Larry Aceves는 임기가 끝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새크라멘토에서 로비스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만나서, 학교에서 정치를 추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Larry의 선거운동에 동참하십시오. www.larryaceves2010.com 또는 페이스북을 방문하십시오.

TOM TORLAKSON

P.O. Box 21636
Concord, CA 94521

(925) 682-9998
tom@tomtorlakson.com
tomtorlakson.com

지난 37년 간 교육은 저의 삶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교과 담임 교사, 코치, 입법가 및 부모로서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로, 저는 낭비와 관리의 오류를 줄여서 절약한 자금을 새 교과서와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기 위해 재정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직무 교육 프로그램, 멘토십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저는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거의 모든 *주요 공공 안전 단체*와 각 지역의 교과 담임 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인격이 중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신뢰, 존중, 책임, 돌봄, 훌륭한 시민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 학보모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업 기술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운동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California Task Force on Youth and Workplace Wellness의 의장 겸 설립자*인 저는 학교 교정에서 정크푸드를 금지하고 체육 필수 과목을 확대하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우리의 학교를 개혁하기 위한 경험, 에너지 및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함께 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조세형평국 ★

주의 선출직 과세위원회인 조세형평국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판매 및 사용세, 담배세, 주류 및 연료세를 포함하는 20여 개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및 면허세 사건에 대한 상소 기구 역할을 합니다.
- 주 전체의 재산세 관리를 감독합니다.

제1선거구

SHERILL BORG
평화자유
www.peaceandfreedom.org

대기업에 과세할 것입니다.

BETTY T. YEE
민주
601 Van Ness Avenue, #E3-438
San Francisco, CA 94102
(415) 759-8355
info@bettyyee.com
www.bettyyee.com

저의 부모님은 이민자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1956년에 작은 세탁소를 개점하고 30여 년 동안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였지만 제 부모님이 호경기 또는 불경기에 상관없이 이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현재 근로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 주의 경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무료 납세자 서비스와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주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보장하고, 주정부의 수입에 대해 책임감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조세형평국 위원으로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과제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공직을 수행하면서 주정부의 수입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고, 이 수입이 여러분의 돈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저의 의무와 책임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가장 능률적인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저의 경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 소유 소기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25년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정직성에 대한 깨끗한 기록에 비추어볼 때, 제가 조세형평국에서 저의 서비스와 리더십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권을 갖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KEVIN R. SCOTT
공화
www.kevinscott2010.org

저는 우리 주민들과 사업체가 과도한 과세와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세형평국 위원에 입후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들은 기록적인 숫자로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과세 기반이 축소되어 경찰, 소방, 학교 및 다른 중요한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1,000,000개의 캘리포니아 주 사업체를 감독하고 있는 조세형평국은 사업체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주정부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선출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 및 사업체들의 공정한 대변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PricewaterhouseCoopers 회계법인의 파트너였고, 20여 개의 소기업 및 재단에서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저는 "반사업적"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좌절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3 자녀를 둔 학부모인 저는 교사의 눈에서 학교의 쇠퇴로 인한 절망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세형평국에는 납세자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초당파적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민주당원, 공화당원 또는 독립당원인 것에 상관없이, 저에게 투표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조세형평국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의 황금의 주를 회복시키려면 여러분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www.kevinscott2010.org*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선거구

TOBY MITCHELL-SAWYER
평화자유
33 La Fresa Ct. #4
Sacramento, CA 95823
(916) 459-0439
yankeesoderland@netzero.net
peaceandfreedom.org/2010/toby-mitchell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를 회생시킬 것입니다.

CHRIS PARKER
민주
P.O. Box 161527
Sacramento, CA 95816-1527
(916) 208-2136
chris@parkerforboe.com
www.parkerforboe.com

우리의 주와 경제를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새크라멘토의 직업 정치인들이 최근에 제의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면 절도있는 리더십,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주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주세 변호사이고 인정 받는 재정 전문가인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특별이익단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새크라멘토의 내부자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정 행위를 찾아내고, 사기와 남용을 근절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능력이 증명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교사, 사업계 지도자, 농장주, 소방대원, 정부 개혁자들이 저를 지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제가 정부의 능률을 개선하고 수백만 달러를 주정부에 되돌려주어 중요한 교육과 공공안전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한 공로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세형평국에서 여러분을 대표할 저는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여러분이 힘들게 벌어 납부한 세금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소기업에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21세기 산업을 유치하고, 좋은 급여를 받는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경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ParkerforBOE.com*을 방문하십시오. 저는 임기가 끝난 정치인이 아니라 재정적 무결성을 달성하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GEORGE RUNNER
공화
925 University Avenue
Sacramento, CA 95825
(916) 648-1222
info@georgerunner.com
www.georgerunner.com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과 사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이 저를 지지합니다. 주 전체 납세자 감시 단체의 *납세자 옹호자*, 사업가 및 주 상원의원(면세 서약을 지킨)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저는 납세자이신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할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와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규제와 관료주의로 일자리의 증가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조세형평국 위원으로 선출되면 현상유지를 타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일입니다. 주정부 예산은 세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낭비를 없애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과세와 비대해진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인 저는 과도한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증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모와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범죄자 처벌법인 Jessica법을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주의회가 Jessica법을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에 회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Amber 경고를 설립하여 거의 200명에 달하는 유괴된 아동들을 부모와 재결합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의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의 임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GeorgeRunner.com을 방문하십시오.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선거구

MARY LOU FINLEY
평화자유
2866 Calle Salida Del Sol
San Diego, CA 92139-3541
(619) 434-5582
celticwomanwicklow@hotmail.com
peaceandfreedom.org

대기업들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MARY CHRISTIAN HEISING
민주
P.O. Box 524
La Jolla, CA 92038
marychristianheising@yahoo.com

샌디에고 민주당 중앙 위원회. 패시픽비치의 전임 명예 시장. 전임 위원: San Diego Housing Advisory Board, California Retardation Board, Mesa College Advisory Board. San Diego State University 졸업.

MICHELLE STEEL
공화
27520 Hawthorne Blvd., #270
Palos Verdes, CA 90274
(310) 697-9000
michellesteel@shawnsteel.com
www.steelforboe.com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은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무모하고 방만한 지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계속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저는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모든 레벨에서 즉시 허리띠를 조이고, 낭비를 줄이고, 방만한 지출 증가를 종료시키고, 세금 인상 *없이* 예산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 세무 기관들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디지털 인터넷 다운로드에 대해 5억 달러의 세금(이른바 I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정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정부가 5,500여 소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4,200만 달러의 예납세 환급을 지연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싸웠고,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들을 주 밖으로 몰아내는 요건과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소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요건 때문에 매일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정부가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축소하여 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의 납세자 옹호 단체인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세형평국에 있는 한, 저는 납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강력한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선거구

NANCY LAWRENCE
평화자유
P.O. Box 741270
Los Angeles, CA 90004
(323) 960-5036
coz42001@mail2world.com
www.peaceandfreedom.org

부유층에 과세할 것입니다!

PETER "PEDRO" DE BAETS
자유
pedro@voteforpedro.com

www.VoteForPedro.com

정견 발표문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견 발표문은 정당들이 제공했으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견 발표문은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입후보자가 인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정견 발표문을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사 유임 선거 소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사들은 임기가 12년입니다.

주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 판사의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유권자들은 그 판사를 한 임기 더 유임(계속 재임)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임 선거라고 합니다.

유임 선거에서는 판사들이 상대 입후보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현직 판사가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받으면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과반수의 "반대" 투표를 받으면 현재 임기가 종료될 때 퇴임하고, 주지사가 새 판사를 임명합니다.

주 대법원 판사는 주 전체 공직이므로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대법원 판사 유임 선거에 참여합니다. 이번 11월에 실시되는 유임 선거에 해당되는 각 대법원 판사에 대한 배경 정보는 91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 또는 *www.courtinfo.ca.gov*를 방문하십시오.

항소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6개 항소지구 중 하나에 소속됩니다. 항소지구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만이 그 지구의 판사들을 유임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번 11월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유임 선거에 해당되는 항소법원 판사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 또는 *www.courtinfo.ca.gov*를 방문하십시오.

선거구 단위의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모든 주 전체 투표 법안과 일부 주 전체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 상원 및 하원 공직은 한 개 또는 몇 개 카운티의 유권자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직에 대한 일부 입후보자의 정견발표문은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 견본 책자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주의회 공직(연방 상원 및 하원 같은 연방 공직은 해당되지 않음) 입후보자들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지정된 달러 금액 이하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주의회 입후보자들은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 책자의 지면을 구입하여 최대 250 단어의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 지출을 제한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주 상원 입후보자는 총선거에서 1,165,000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 지출을 제한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주 하원 입후보자는 총선거에서 906,000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한 주의회 입후보자들의 리스트를 보시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_stat.htm*을 방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는 연방 하원의원 입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방 하원의원 입후보자는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 책자의 입후보자 정견발표문 지면을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방 하원의원 입후보자들은 정견발표문을 게재할 지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사

대법원판사와항소법원판사에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 또는 *www.courtinfo.ca.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선거 절차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사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대중은 각 판사의 유임 여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사직은 초당파적 공직입니다.

주지사가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려면 후보자의 이름을 일반인 위원과 변호사로 구성된 법관 피지명자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의 의견을 참고하여 후보자의 배경과 자격을 철저히 심사한 후에 후보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주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주지사는 이 위원회의 평가를 검토한 후에 후보자를 정식으로 지명하며, 이러한 후보자들의 자격은 일반대중의 의견을 참조한 후에 법관임명위원회의 심사 및 검토를 받습니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장,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장관, 항소법원 수석 재판장으로 구성됩니다. 법관임명위원회는 심사 후 지명을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피지명자만이 판사가 됩니다.

승인을 받은 판사는 선서를 한 후 취임하고, 다음 주지사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각 임기가 끝날 때마다 유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 판사와 항소법원 판사의 임기는 12년입니다. 판사는 다음 주지사 선거 때까지만 법관임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4년 또는 8년)가 있는 경우, 이 선거에서 그 임기에 대해 유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선거법 제9083조)

MING WILLIAM CHIN,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

면허 취득: 1970년에 캘리포니아 주 면허 취득

학력: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 법학석사(J.D.), 1967년, University of San Francisco 학사, 1964년

법관 경력: 1967 - 1971년, 미육군 대위, 1970 - 1972년, 지방검사, 알라메다 카운티, 1973 - 1988년, 변호사, Aiken, Kramer & Cummings—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판사 경력: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 1996년 - 현재, 제1 항소지구 3부 항소법원 재판장, 1995 - 1996년, 제1 항소지구 3부 항소법원 판사, 1990 - 1994년,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 1988 - 1990년

CARLOS R. MORENO,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

면허 취득: 1975년에 캘리포니아 주 면허 취득

학력: Stanford Law School 법학석사, 1975년, Yale University 학사, 1970년

법관 경력: 시 변호사, 로스앤젤레스 시 변호사실, 1975 - 1979년. Attorney, Kelley Drye & Warren 법무법인, 1979 - 1986년

판사 경력: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 2001년 - 현재(Gray Davis 주지사의 지명과 법관임명위원회 및 유권자의 승인, 2002년), 캘리포니아 주 중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 판사, 1998 - 2001년(Bill Clinton 대통령의 지명과 연방 상원의 승인),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판사, 1993 - 1998년(Pete Wilson 주지사의 임명과 유권자의 유임 승인, 1994년), 캠톤 시법원 판사, 1986 - 1993년(주지사의 임명과 유권자의 유임 승인, 1988년)

제3 항소지구 항소법원의 Tani Cantil-Sakauye 판사는 2010년 7월 21일에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로부터 차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의하면, Cantil-Sakauye 판사에 대한 지명은 법관임명위원회에서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Cantil-Sakauye 판사가 이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2010년 11월 2일의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에 회부됩니다.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이 위원회가 Cantil-Sakauye 판사에 대한 지명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 전인 2010년 8월 9일부터 인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관 선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안내서의 9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시려면 *www.voterguide.sos.ca.gov* 또는 *www.courtinfo.ca.gov*를 방문하십시오.

TANI CANTIL-SAKAUYE, 제3 항소지구 항소법원 판사

면허 취득: 1984년 11월

학력: U.C. Davis School of Law, 법학석사, 1984년, U.C. Davis 학사 - 수사학, 1980년, Sacramento City College, 준학사, 1978년

법관 경력: George Deukmejian 주지사의 입법 비서관(1989 - 1990년), George Deukmejian 주지사의 법무 비서관(1988 - 1989년),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검사실 검사(1984 - 1988년)

판사 경력: 제3 항소지구 항소법원 판사(2005년 임명, 2006년 유임), 새크라멘토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1997년 임명 후 선거에서 승인), 새크라멘토 시법원 판사(1990년 임명 후 선거에서 승인)

발의안 제19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보건안전법에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므로 추가 발의된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2010년 대마초 규제, 통제 및 과세법

제1조. 명칭.

이 법안은 "2010년 대마초 규제, 통제 및 과세법"이라고 명명한다.

제2조. 사실 확인, 의도 및 목적.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이 채택했으며,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의도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A. 사실 확인

1.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화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실패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비폭력적인 대마초 사용자를 구속해왔지만 대마초 통제에 실패했거나 사용을 줄이지 못했다.

2.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억 명의 미국인(미국 인구의 약 1/3)이 자신이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고 이 중 1500만 명은 지난 달에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마초 사용은 미국인 다수에게 생활의 현실이다.

3. 일부 국가에서 엄격한 대마초 관련 법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대마초 관련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사용자 수는 가장 많다. 대마초를 사용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대마초의 판매와 성인 소지가 허용된 네덜란드의 2배이다.

4. 대마초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미국 11개 주에 대한 National Research Council(국가연구위원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과 사용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5. 대마초는 성인 사용자에게 사용이 허용된 술이나 담배보다 덜 해롭다. 대마초는 신체적으로 중독성이 없고 인체에 대한 장기적인 독성 효과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폭력을 유발하지 않는다.

6.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년 150억 달러 규모의 불법적인 대마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및 규제와 마찬가지로 대마초에 대한 과세 및 규제는 취업, 의료, 학교, 도서관, 도로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7.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법을 위반하는 비폭력적 주민을 추적, 체포, 재판, 판결 및 구금하는 데 연간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폭력적인 범죄나 갱단을 퇴치하는 데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8. 대마초를 불법화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범죄시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으며 다른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유발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판로를 마련한다면 위험한 거리 판매를 단절시킬 것이다.

B. 목적

1. 캘리포니아 주 대마초 법을 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

2. 술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규제: 성인이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

3. 캘리포니아 주에 대마초의 재배, 가공, 운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더욱 강력한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규제 기반을 마련.

4. 캘리포니아 주 미성년자들이 대마초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을 더욱 단속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기반을 마련.

5. 음성적이고 위험한 불법 거래를 단절시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거.

6. 대마초를 의학적 용도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더 쉽고 안전한 접근 방법을 제공.

7. 시에서 대마초 판매에 대해 과세 및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이 도시에서 대마초 구입 및 판매는 불법이지만 시민들은 보건안전법 제11362.5조 및 제11362.7조부터 제11362.9조까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소량을 소지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8. 어떤 도시에서 대마초 구입 및 판매(성인에 한함)에 대해 과세 및 규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대마초의 재배, 유통 및 판매를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법률체제를 시행할 것이며, 해당 시는 보건안전법 제11362.5조 및 제11362.7조부터 제11362.9조까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될 대마초의 양 및 거래 방법을 통제한다.

9. 캘리포니아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 의료, 학교, 도서관, 공원, 도로, 교통 등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마초에 대해 과세 및 규제를 실시한다.

10. 수천 명의 비폭력적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여 경찰 자원을 확보하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며, 이 자금은 위험한 범죄자들을 체포 및 구금하고, 기타 자금이 부족한 필수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1. 주의회가 상용 대마초 산업을 위한 주 전체의 규제 체제를 채택하도록 허용한다.

12. 대마초를 과학, 의학, 산업,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13.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건, 도덕, 공공복지, 안전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는, 연방헌법 하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허용한다.

14. 개인적 용도로 소량의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한다.

C. 의도

1. 이 법은 대마초의 소유, 운반, 재배,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주법 및 지방법의 적용 및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채택 예정인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건안전법의 제11014.5조 및 제11364.5조(약물 소지 관련), 제11054조(대마초 또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관련), 제11357조(소지 관련), 제11358조(재배 관련), 제11359조(판매를 위한 소유), 제11360조(운반 및 판매 관련), 제11366조(현장 관리), 제11366.5조(소유물의 사용 관련), 제11370조(징벌 관련), 제11470조(몰수 관련), 제11479조(압수 및 구제 관련), 제11703조(불법적인 약물에 대한 정의 관련), 제11705조(관리대상 불법 약물의 사용에 대한 조치) 및 차량법 제23222조 및 제40000.15조(소지 관련).

2. 이 법은 공공 보건 및 안전이나 어린이 및 기타 개인의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캘리포니아 주 법률의 적용 또는 집행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건안전법의 제11357조(교내 소지 관련), 제11361조(미성년자 관련 개정), 제11379.6조(화학물질 관련), 제11532조(범죄 목적으로 배회 또는 불법 행위 관련), 차량법의 제23152조(약물 사용 후 운전 관련), 형법 제272조(미성년자의 범죄 동조 관련), 또는 직장에서 관리 대상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공공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특정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제3조. 제5절(제11300조로 시작)은 보건안전법의 제10부 제5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5절. 합법적 행동

11300. 개인적 규제 및 통제.

(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21세 이상의 개인이 다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

(1) 판매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1온스 이하의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소지, 가공, 공유 또는 운반.

(2) 소유자, 기타 합법적 거주자 또는 개별 소유자의 손님 또는 합법적 점유자의 개인 소유지 등 면적 25평방 피트 이하의 개인 소유지 또는 소유자가 없는 장소에 개인적 용도로 대마초를 재배. 임차 또는 임차 소유지에서의 재배는 소유주의 승인 여부에 따른다. 단, 이 조의 어떠한 조항도 공공 장소에서 대마초를 불법적 또는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대마초를 기르고 수확환 장소에서 대마초 소지 및 (2)목에 따라 개인적 용도로 합법적으로 재배한 대마초의 수확 및 가공물.

(4) 이 항에 따라 허용된 행동과 관련된 대상물, 항목, 도구, 장비, 생산물, 자재 등의 소지.

(b) "개인적 용도"에는 주거지 또는 기타 비공공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대마초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11301조에 따라 지방 정부가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였고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포함된다.

(c) "개인적 용도"에는 대마초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 법률은 그러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제11301조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조건에 따라 그러한 행동이 허가 또는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 양에 관계 없이 판매하기 위해 대마초 소지.

(2) 공개적으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사용.

(3)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 운행자가 운전하는 동안 사용하거나 대마초의 영향을 받을 때 사용.

(4) 미성년자가 있을 때 대마초 사용.

11301. 상업적 규제 및 통제.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역 법률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는 조건에 따라 다음을 통제, 허가, 규제, 허용 또는 승인할 법적 권한이 있는 조례, 규정 또는 기타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a)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과 양에 한하여 대마초의 재배, 가공, 유통, 안전한 운반, 판매, 판매를 위한 소지.

(b) 허가된 장소에서 21세의 성인에게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1회 거래당 1온스 이하의 양을 소매 판매.

(c) 21세 미만의 개인이 대마초에 대한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대마초 재배, 운반, 판매 및 소비를 적절하게 통제.

(d) 그러한 허가된 장소에 있거나 고용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 21세 이상이 되도록 연령 제한 및 통제.

(e) 허가를 받은 장소 내에서 대마초 사용.

(f) 재배 또는 가공이 허가된 장소에서 판매 또는 대마초 사용이 허가된 장소까지 대마초를 안전하게 운반.

(g) 본 조항과 제11300조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입수한 대마초를 소지, 판매, 판매를 위한 소지, 재배, 가공 또는 운반하는 행동을 금지하거나 또는 벌금이나 기타 구제책으로 징벌.

(h) 대마초의 판매, 재배, 가공이 허가된 장소에 대한 적절한 통제, 또는 구역 및 토지 사용을 포함한 대마초의 소유지내 사용, 장소, 규모, 운영 시간, 점유, 주변 소유지와 의도하지 않게 대마초에 노출되는 사람의 보호, 광고, 표지판, 디스플레이, 기타 공공보건 및 복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통제방법.

(i) 인가된 장소에서 환경, 주변의 토지 소유자, 지나가는 행인에 대한 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 및 공공 보건 통제방법.

(j) 대마초의 공개 진열 또는 공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방법.

(k) 제11302조에 따른 적절한 세금 및 수수료.

(l) 이 조항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 가공, 운반 및 판매를 위해 그러한 행동이 허용된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제11300조 (a)항에 따라 개인적 소지 및 재배 목적으로 정해진 양보다 많으며 지방의 상황에 따라 지방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상당한 양.

(m) 공공 보건 및 복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 통제방법.

11302. 세금 및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a) 제11301조에 따라 채택된 조례, 규정 또는 기타 법률에는 일반, 특별 또는 소비세 부과, 양도세 또는 거래세, 혜택 평가 또는 수수료 부과가 포함될 수 있으며 지방 정부가 세수를 늘리거나 승인된 행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을 공제하거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허가 또는 인가 제도가 포함: 행정, 면허나 허가서 신청 및 발행, 인가된 소유지의 검사, 위반 행동에 대한 집행을 비롯하여 제11301조에 따라 채택된 기타 조례의 집행 등.

(b) 인가된 소유지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세, 수수료, 벌금,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의 사업체, 시설, 또는 소유지에 부과되는 기타 재정적 책임이 있으며 사업체의 종류 또는 판매할 품목이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소득세, 법인세, 인가 수수료, 재산세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303. 압수.

이 법률 또는 다른 조항의 제11470조 및 제1147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또는 이 법안에 따라 채택된 지방 정부 조례,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여 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재배, 가공, 운반, 소지, 판매를

위한 소지, 판매 또는 사용된 대마초 식물, 대마초 씨앗, 대마초를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기관이나 공직자가 압수 또는 파괴하려고 시도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

11304. 법안의 효력 및 정의.

(a) 이 법안은 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동안 판단 능력 저하를 금지하거나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생이 등록한 학교에 대마초를 가져오는 것을 처벌하는 법령에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b) 이 법안의 대마초를 국내 또는 해외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제정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다른 주 법률 또는 관할 도시 또는 국가에서 그러한 조례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그러한 도시나 국가에서 채택한 조례에 따라 한 도시나 국가의 인가된 소유지에서 다른 도시의 인가된 소유지로 안전한 방법으로 대마초를 운반하도록 허락하기 위한 것이다.

(c) 이 법안이 허용하거나 제11301조에 따라 승인된 행동에 합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별하거나 권리나 특권을 부정하지 못한다. 단 직원의 업무 성과에 실제적으로 해를 주는 대마초 사용을 고용주가 처리하는 기존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 정의. 이 법안의 목적:

(1) "마리화나" 및 "대마초"는 성장 여부에 관계없이 대마 속(Genus Cannabis)의 모든 부위, 식물의 모든 부위에서 추출한 수액, 농축 대마초,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는 식용 생산물, 모든 활성 화합물, 대마초 또는 수액의 생산물, 파생물 또는 조제물을 가리키므로 서로 대체 가능한 용어이다.

(2) "1온스" 란 28.5g을 의미한다.

(3) 제11300조 (a)항의 (2)목의 목적에 따라 "대마초" 란 살아 있는 대마초 식물의 모든 부위를 의미한다.

(4) 특정 대마초의 양이 이 법안이 허용하는 양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A) 식용 대마초 생산물에서 활성 대마초의 양만 인정한다.

(B) 제11300조의 (a)항에 명시된 양을 결정할 때 살아 있고 수확한 대마초 식물을 무게가 아닌 평방 피트 단위로 평가한다.

(C) 형사 소송에서 이 법안에서 한도를 위반했다고 기소된 사람은 대마초가 자신의 개인적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권리를 가진다.

(5) "거주지" 란 개인 소유지 또는 공공 장소에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점유할 용도의 거주지 또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상업 및 주거 목적을 위한 구조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6) "지방 정부" 란 도시, 카운티, 도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7) "인가된 소유지" 란 지방 정부가 제11301조 또는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지방 정부가 채택한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대마초를 소유지 내에서 재배, 가공, 운반,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 소재지, 시설, 건물, 토지 또는 영역을 의미한다.

제4조. 보건안전법 제1136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1136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 공급에 대한 규정.*

(a)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마리화나의 운반, 소지, 판매, 제공, 판매를 위한 조제, 거리 판매를 하는 일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마리화나를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 또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 투약 또는 증여하는 개인 또는 미성년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마리화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개인은 3, 5 또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b) 마리화나를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제공, 투약 또는 증여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제시하는 18세 이상의 개인은 3년, 4년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c) 고의적으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개인에게 마리화나를 제공, 투약 또는 증여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제안한 21세 이상의 개인은 카운티 감옥에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하며 위반 시마다 최고 천 달러($1,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d) 위의 벌칙 이외에도 제11301조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도록 인가 받거나 허가되거나 승인된 개인으로서 그러한 행동이 허용된 기간에 21세 미만의 개인에게 마리화나를 부주의하게 제공, 투약, 증여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한 사람은 1년 동안 제11301조에 따라 승인된 소유지를 소유, 운영, 취업, 지원 또는 들어갈 수 없다.

제5조. 개정.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10조 (c)항에 따라 이 법안은 주 선거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제출한 후속 법안에 의해 수정되거나 법안을 더 구체화할 목적으로 주지사가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허용된 수정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보건안전법 제11300조의 제한사항에 대한 수정. 이 제한사항은 최소한의 한계이며 주의회가 덜 엄격한 제한사항을 채택할 수 있다.

(b) 보건안전법 제11301조 및 제11302조에서 참조하고 있는 일부 또는 전체 항목을 다루는 상업용 대마초 업계에 대한 주 전체의 규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더욱 구체화하는 법령 및 승인된 규정.

(c) 원예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대마 또는 비활성화된 대마초 생산을 승인하는 법.

제6조. 가분성.

이 법안의 규정 또는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법안의 적용들은 무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법안의 조항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의안 제20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발의 법안은 조항을 수정하여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명시적으로 수정하므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의 규정은 ~~삭선 형식~~으로 인쇄되며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연방의회를 위한 유권자 우선법

제1조. 명칭.

이 법은 "연방의회를 위한 유권자 우선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목적.

캘리포니아 주 주민은 다음의 사실 확인을 하며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a) 현재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은 연방의회를 위한 선거구 경계를 정한다. 정치가들이 이러한 경계를 정하도록 하거나 현직 공직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구를 자신이나 친구들을 위한 선거구로 맞춤화하거나 상대 정당의 선거 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해를 주는 심각한 위반 행동이다.

(b) 정치가들은 지역사회가 아닌 자신의 이해 관계가 관련된 선거구를 정한다. 시, 주 및 지역사회는 특정 정당 및 특정 현직 공직자에게 안전한 선거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매우 불규칙한 의회 선거구를 분할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통일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c) 이 개혁은 연방의회의 재조정 절차를 개방하여 권력을 가진 정당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주의회와 조세형평국을 위한 선거구 경계를 정할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시민 재조정 위원회가 연방의회를 재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5명의 민주당, 5명의 공화당을 비롯하여 현재 절차에서 완전히 소외된 개인과 소수계 유권자의 의견을 대신하게 될 무소속 등록자 4명 등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재조정 계획을 승인할 때 이들 3개 그룹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구는 공정한 선거구가 될 것이다.

(d) 독립적인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공정한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정한 엄격하고 초당파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선거구 경계를 결정한다. 이러한 개혁은 주의회의 당파적 분쟁 속에서 연방의회를 재조정하고 공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연방의회 재조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보장한다. 모든 회의록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이 과정의 모든 사항은 일반인과 언론이 감시하도록 공개한다.

(e) 현재 과정에서 유권자가 진정한 선택권을 가지는 대신 정치가들이 유권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

제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제XXI절의 개정.

제3.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10년마다 첫 번째 연도에 연방의회의 지시에 따라 전국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연도에 ~~주의회~~ *제2조에 설명된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제2조에 명시된* ~~다음의~~ 표준 및 절차에 따라 ~~주 의회 선거구~~ *주 의회, 주 상원, 주 하원, 조세형평국 선거구("재조정"이라고도 함)*의 경계를 조절한다.~~:~~

~~(a) 각 연방의회 구성원은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b) 모든 연방의회 선거구의 인구는 동일하다. 이 기준을 따른 후 주의회는 제2조 (d)항의 (2), (3), (4), (5)목에 명시되고 우선 순위를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를 조절한다. 주의회는 최종 지도와 함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설명한 보고서를 발행하며 최종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된 용어나 표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c) 의회 선거구는 캘리포니아 주 북부 경계에서 시작하여 남부 경계에서 끝나도록 순서대로 열거한다.~~

~~(d) 주의회는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시민 재조정 위원회와 조율하여 동시 청문회를 개최하여 재조정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재조정 과정에 일반인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주의회는 정부법 제8253조 (a)항의 (1), (2), (3), (7)목 및 (b)항의 공개 청문회 요건 또는 법령의 후속 조항을 준수한다.~~

제3.2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2조. (a)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주 상원, 주 하원,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새로운 경계("재조정"이라고도 함)를 정한다. 이 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성되며 그 후부터 0으로 끝나는 연도에 결성된다.

(b) ~~시민 재조정 위원회(이후 "위원회"라 칭함)~~ *위원회*는 (1) 선거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일반인의 고려 사항과 의견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실시하고, (2) 이 절에 명시된 재조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결정하고, (3) 정직과 공정을 실천한다.

(c) (1) 선정 과정은 입법상의 영향에서 독립적이며 캘리포니아 주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 *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 ~~시민 재조정 위원회~~ *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등록 시점에 캘리포니아 주의 최대 정치 정당에 등록한 5명의 위원, 등록 시점에 캘리포니아의 두 번째 규모의 정치 정당에 등록한 5명의 위원, 등록 시점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1-2위 규모의 정치 정당에 모두 등록하지 않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3) 각 위원회 구성원은 동일한 정당에 또는 정당 미가입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지속적으로 등록했으며 지명된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정치 정당을 바꾸지 않은 유권자이다. 각 위원회 구성원은 자신이 신청한 직후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3개 총선거 중에서 2개에서 투표를 마쳐야 한다.

(4) 위원회의 각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 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원을 임명할 때 만료된다.

(5) 위원회의 9명의 구성원이 정족수를 형성한다. 공식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9표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 9표

이상의 찬성 투표가 ~~3개~~ *4개의* 최종 *재조정* 지도를 승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등록 시점에 캘리포니아 주 최상위 2개 정치 정당에 등록한 구성원에서 얻은 3개와 이들 두 개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구성원에서 얻은 3개가 포함된다.

(6) 각 위원회 구성원은 공정하며 재조정 과정에서의 정직성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절을 적용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지명일로부터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차원에서 공직을 보유할 수 없다. 위원회 구성원은 지명된 날짜로부터 5년 동안 연방, 주 또는 지방 임명 공직을 보유하거나 유급 직원, *유급 고문, 조세형평국, 연방의회*, 주의회 또는 개별 주의회 위원으로 일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다.

(d) 이 위원회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지도 제작 절차에 따라 상원, 하원, *연방의회*, 주 조세형평국을 위한 단일 구성원 선거구를 형성한다.

(1) 선거구는 미국 헌법을 따른다. ~~상원~~ *의회 선거구는 최대한 인구 형평성을 달성하며 상원,* 하원 및 주 조세형평국 선거구는 동일한 공직에 대해 다른 선거구와 동일한 인구를 가지며 연방 선거권법 또는 법으로 허용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편차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2)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및 다음)을 따른다.

(3) 선거구는 지리학적으로 근접해야 한다.

(4)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 인근도시, 또는 *지방* 이해 공동체의 지리학적 통일성은 전술한 항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해당 부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존중된다. *이해 공동체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의사 표현을 위해 단일 선거구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의 사회 및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인접 인구이다. 그러한 공통의 이해관계의 예에는 도시 지역, 전원 지역, 산업 지역, 농업 지역 등에서 공통적이며 유사한 생활 표준을 공유하거나 동일한 교통 수단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선거 과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통신 매체에 액세스하는 지역이 공통적인 것이 포함된다.* 이해 공동체에 정치 정당,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와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실행 가능하며 다른 상기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는 지리적 단위를 권장하여 먼 곳의 인구와 가까운 지역의 인구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결정된다.

(6) 실행 가능하며 상기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원 선거구는 2개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주변 하원 선거구로 구성되며 각각의 조세형평국 선거구는 10개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주변 상원 선거구로 구성된다.

(e) 현직 공직자 또는 정치 입후보자의 거주 지역은 지도 작성에 고려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직 공직자, 정치 입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f) 연방의회, 상원, 하원 및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의 선거구는 캘리포니아 주 북부 경계에서 시작하여 남부 경계에서 끝나도록 순서대로 열거한다.

(g) 2011년 ~~9월~~ *8월* 15일까지, 그리고 이후부터 1로 끝나는 연도마다 위원회는 ~~상원~~ *의회, 상원*, 하원 및 주 조세형평국 선거구를 위한 선거구 경계를 별도로 명시한 *4개의* ~~3개~~ 최종 지도를 승인한다. 승인이 되면 위원회는 주총무처장관에게 *4개의* ~~3개~~ 최종 지도를 승인한다.

(h) 위원회는 *4개의* ~~3개~~ 최종 지도 마다 (d)항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 기준을 설명한 보고서를 발행하며 각각의 최종 지도를 작성할 때 사용한 용어 및 표준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킨다.

(i) 제II절 제9조에 따라 법령이 주민투표 법안을 거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인증된 최종 지도는 주민투표 법안을 거친다. 주총무처장관의 최종 지도 인증 날짜는 제II절 제9조의 목적에 따라 법안 통과 날짜로 간주된다.

(j) 위원회가 필수 투표수 이상으로 최종 지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주민투표 법안에서 인증된 최종 지도를 유권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주총무처장관은 (d), (e), (f)항에 명시된 재조정 기준 및 요건에 따라 지도의 경계선을 조절하도록 특별 전문가 임명을 지시하는 명령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내리도록 즉시 청원한다. 전문가 지도 승인 후 대법원은 완성된 지도를 주총무처장관에게 승인하며 이 지도는 선거구에 대해 인증된 최종 지도가 된다.

제3.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a) 위원회는 인증된 최종 지도와 관련된 조치를 옹호할 유일한 합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공된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의회에 통보한다. 주의회는 인증된 지도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보유한 기타 법률 고문이 인증된 최종 지도 옹호를 지원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단독 권한을 가진다.

(b) (1)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인증된 최종 지도를 재검토할지 또는 *시기 적절하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모든 소송에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2) 캘리포니아 주의 등록된 유권자는 위원회가 주총무처장관에게 최종 지도를 인증한 지 45일 이내에 직무 집행 영장 또는 금지명령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여 접수한 계획이 본 헌법, 미국 헌법 또는 연방이나 주 법령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주총무처장관이 계획을 구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유권자는 인증된 최종 지도의 시기 적절한 구현을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민투표 법안을 최종 지도가 따르도록 하는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직무 집행 영장 또는 금지명령에 대한 청원도 접수할 수 있다.*

(3)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목에 따라 접수한 직무 집행 영장 또는 금지명령에 대한 청원을 판결할 우선권을 제공한다. 최종 인증 지도가 본 헌법, 미국 헌법 또는 기타 연방이나 주 법령을 위반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할 경우, *제2조 (j)항에 명시된 구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한다.*

제4조. 충돌되는 선거 발의안.

(a) 이 법안 및 기타 법안이나 상원, 하원, 연방상원 또는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재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 이 법안은 다른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으며 이 법안은 전체에 대해 통제하며 기타 법안은 효력이 없고 다른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 된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이 법안을 승인했지만

다른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법안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b) 이 법안을 유권자가 승인했지만 유권자가 승인한 기타 대립 법안의 조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하며 동일한 선거에서 찬성 투표를 더 많이 획득한 경우, 대립하는 법안 또는 대체 조항은 무효가 되며 이 법안에서 이전에 대체된 것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가분성.

이 법의 조항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의 조항 또는 적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가 된 조항 또는 적용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들은 그러한 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의안 제21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공공자원법 및 세입과세법에 조항을 추가하므로 추가 발의된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법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 사실 전체를 확인하며 밝힌다.

(1) 캘리포니아 주의 천연자원 및 야생생물은 미래의 세대를 위해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체제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야생생물 보호 및 보존 기관과 함께 주립공원 체제는 주의 고유한 야생생물, 자연 영토, 해양 자원 등을 보존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주립공원 체제와 야생생물 보존에 대한 자금 조달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 수리 및 개조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예비로 남겨두게 되며 주 전체 공원을 폐쇄할 위험에 처하거나 주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 및 문화 자원, 레크리에이션 기회, 야생생물 서식지 등이 손실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4)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체제는 레크리에이션, 자연교육, 문화 및 역사 유적지 보존의 기회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공기와 수질을 개선할 천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

(5) 캘리포니아 주민은 미래 세대를 위해 주의 독특한 천연자원 및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할 세계적 수준의 주립공원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주립공원 체제를 재구성하고 주의 야생생물 자원을 보호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경제가 성장하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십억 달러의 관광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7) 이 법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주립공원 체제 및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자금 출처를 확보함으로써 주 자원을 보호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그러한 자원을 더 많이 평등하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 또한 주립공원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하고 유지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공원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주의 방문객이 주립공원 이용시 이용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주의 천연자원 및 문화적 자원, 레크리에이션 기회, 야생생물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제1조. 제1.21장(제5081조로 시작)은 공공자원법의 제5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21장.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법

제1절. 신탁기금

5081. 주 재무국에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이 기금에 귀속된 모든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신탁 보관되며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만 지출이 가능하다.

(a) 주립공원 체제의 관광객 안내소, 화장실, 캠프장, 공원 순찰소 등을 포함한 시설의 운영, 유지 및 수리.

(b) 삼림, 기타 자연 영토, 청정수, 청정 공기 등을 제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건강을 보호하는 영토를 포함한 야생생물 보존 및 천연자원 보호.

(c) 봉사활동, 공공 교육, 개선된 교통편 등을 통한 주립공원 및 자연구역의 일반인 이용을 확대하고 공원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

(d) 일반인 이용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립공원 시설을 개발, 관리 및 확장.

(e) 강, 호수, 개울, 연안, 해양 자원을 보호.

(f) 이 장에서 설명한 일상적 자금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주립공원 체제를 운영하는 지방기관과 강변 공원을 관리하는 주 및 지방 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

(g) 주립공원 문화 및 역사 자원의 보호와 복원.

(h)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장의 조항 이행을 감사하고 감독.

(i) 주립공원 체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타 비용.

(j) 주립공원 이용권에 대한 수금 비용.

5082. 공원 및 휴양지 관리국은 주립공원 체제의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주 각 지역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며 그룹 및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립공원 및 주립공원 서비스와 혜택의 이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이 장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규정을 파악한다.

5082.5. 이 장의 목적에 따라 "자금"이란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을 의미한다.

5082.6.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관리국"이란 공원 및 휴양지 관리국을 의미한다.

5082.7. 이 장의 목적에 따라 "야생생물"은 어획 관리법(Fish and Game Code) 제711.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절. 재정 책임성 및 감독

5085. (a)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은 일반에게 공개되며,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되고, 주 예산의 일부로서 검토하도록 주의회에 제출된 주 감사원이 실시한 독립적인 연례 감사를 받는다.

(b) 자금 연례 수익의 1퍼센트까지 이 절의 감사, 감독 행정 비용 및 주립공원 이용권의 징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c) 천연자원처 장관은 시민 감독 위원회를 마련하여 연례 감사를 검토하고 이 장의 구현 및 효율성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발행한다. 구성원에는 비즈니스와 금융 관련 전문가, 공원 관리, 천연 자원 보호, 문화 및 역사 자원 보호,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원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085.5.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 기금에 귀속되는 자금은 이 기금에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기타 다른 용도로 지출, 전환 또는 이체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일반 자금이나 기타 자금으로 대출되거나, 일반보증채와 관련된 이자, 원금 또는 기타 비용 지불에 사용될 수 없다.

5086. 법의 다른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립공원 요금과 사용권 수익은 제5010조에 따라 주립공원 및 휴양지 기금에 귀속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함께 관리국이 주립공원 체제의 운영, 관리, 기획 및 개발하는 데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지출, 전환 또는 이체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일반 자금이나 기타 자금으로 대출되거나, 일반보증채와 관련된 이자, 원금 또는 기타 비용 지불에 사용될 수 없다.

5086.5. 이 장을 제정하는 의도는 관리국에 안정적이고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관리국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일반 자금은 주의회가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 및 주립공원 및 휴양지 기금이 제공하는 재정적 자원이 주립공원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용도로 재할당될 수 있다.

제3절. 주립공원 이용권

5087. (a) 주립공원 이용권 대상이 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 차량은 이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립공원 체제의 모든 시설 및 지정된 주립 구역과 야생생물 구역에 무료로 입장한다.

(b) 이 조의 목적에 따라 "무료 입장"이란 모든 주립공원 체제의 모든 시설에서 무료 차량 입장, 주차, 사용을 의미하며 정원 초과와 자연 및 문화적 자원에 대한 손상을 피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주립공원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국이 판단할 경우에만 제한된다. 기타 주 및 지방 기관은 차량 무료 입장을 위해 이 장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금을 지원 받을 구역을 지정하며 이러한 입장은 해당 구역의 관리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무료 입장에는 캠핑, 투어 요금, 수영장 요금, 보트 시설의 사용, 박물관, 특별 행사 요금, 보조 요금 기타 특별 행사 패키지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087.1. 관리국은 제5011.5조에 따라 공원요금 면제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에게는 주립공원 이용권 할증료를 환불해준다.

제4절.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 기금 수익의 할당

5088. 감사, 감독 및 수금 비용의 제2절(제5085조로 시작)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 기금에 귀속된 모든 자금은 다음의 기관 및 본 조에 명시된 경우에만 할당된다.

(a) 85퍼센트는 자금에서 관리국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5088.1조에 따른 보조금 및 보조금 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관리국 지출을 위해 할당된 모든 자금은 주립공원 체제의 운영, 관리, 기획 및 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b) 야생생물 피난소, 생태학적 보호지, 기타 어획 관리국이 야생생물 보존을 위해 소유 및 관리하는 기타 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어획 관리국에 7퍼센트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c) 해양 야생생물 보존과 해수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위원회에 4퍼센트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해양 보존 구역의 개발,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한다.

(d) 관리위원회가 공원 및 야생생물 서식지를 위해 관리하는 주 소유 구역의 관리, 운영 및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주 관리위원회에 2퍼센트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주 관리위원회는 관할지의 주 소유 구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 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e) 지방 공공 기관의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자금으로서 야생생물 보존 위원회에게 2퍼센트를 지출할 수 있다.

5088.1. 관리국은 도시의 소외된 지역사회에게 넓은 공간과 야생생물 구역에 대한 혜택과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 도시 강변 공원의 운영, 관리 및 복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관리국은 제5088조 (a)항에 따라 수령한 자금에서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기금에 귀속된 자금의 4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년 할당한다. 이 조의 목적에 따라 "공공 기관"이란 주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 공원 구역, 공동 운영 기관 등을 의미한다. 관리국은 캘리포니아 주 강변 공원 프로그램(제3.8장 (제5750조로 시작))과 참조하여 도시 강변 공원의 관리, 운영, 경영을 위해 최선의 경영 사례를 채택한다. 관리국은 최선 경영 사례를 고려하고 이 조에 따라 보조금을 할당할 때 도시 강변 공원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관리국은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도시 강변 공원에 대한 보조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5088.2. 관리국은 주립공원 체제의 부서의 운영과 유지를 돕기 위해 이를 운영하는 지역 기관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관리국은 이 장의 조항을 구현하기 전에 차량의 입장이나 주차 비용을 부과하는 주립공원 체제의 부서를 운영하는 지방 기관에게 제공 가능한 자금을 우선 제공하며 나머지 자금은 해당 지방 기관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인증한 대로 지난 3년 동안 해당 부서의 연간 평균 운영 지출비를 기준으로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주립공원

부서의 운영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기관에게 비례 배분으로 계산하여 제공한다. 제5088조 (a)항에 명시된 자금에서 이 자금에 귀속된 금액의 5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 조의 용도를 위해 지출할 수 있다. 관리국은 이 조의 구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5089. 이 장의 목적에 따라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지출에는 적응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비롯하여 천연자원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영, 관리, 개발, 복원, 유지, 법률 집행 및 공공 안전, 해석, 적절한 공공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 기타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과 보조금이 포함된다.

5090.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과 그러한 자금의 지출이나 이체는 어획 관리법의 제3부, 제9장(제2780조로 시작)의 목적에 따라 자금의 이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조. 제10751.5조는 세입과세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10751.5. (a) 제10751조에 따른 인허가 수수료 이외에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인허가 및 갱신에 대해 (b)항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서 부과한 인허가 수수료 대상이 되는 각 차량에 대해 18달러($18)의 주립공원 이용권이라는 연간 할증료도 부과된다. 할증료에서 얻은 모든 수익은 공공자원법 제5081조 (a)항에 따라 주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신탁 기금에 귀속된다.

(b) (a)항에 마련된 할증료는 다음 차량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1) 영업용 차량 등록법의 대상이 되는 차량(차량법 제 4000.6조).

(2) 차량법 제5014.1조의 대상이 되는 트레일러.

(3) 차량법 제635조 명시된 이동 주택차.

발의안 제22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수정, 수정 및 번호 변경, 철회한 후 조항을 추가하므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의 규정은 ~~삭선 형식~~으로 인쇄되며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은 "2010년 지방 납세자, 공공 안전 및 교통 보호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을 확인하며 밝힌다.

(a) 지방 납세 자금에 대한 지방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지방 화재 보호 및 9-1-1 응급 대처, 법률 집행, 응급실 치료, 공공 교통편, 교통 개선 등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은 새크라멘토의 정치가들이 지방 정부 서비스를 위한 전용 자금과 교통 개선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위한 전용 자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반복적이며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왔다.

(b)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권자들은 중요한 지방 정부 서비스와 교통 개선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위한 전용 자금을 주에서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c) 주가 지방 정부 서비스와 교통 개선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위한 전용 자금을 주에서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반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새크라멘토의 주 정치인들은 지방 정부 및 교통 자금에서 수십억 달러를 차용했다.

(d) 최근 몇 년 동안 새크라멘토의 주 정치가들은 특히 다음을 실시했다.

(1) 지방 경찰, 화재, 구급 의료 처치, 기타 중요한 지방 서비스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되었을 지방 재산세 세금 수입에서 수십억 달러를 차용.

(2) 진행 중인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을 연료세 세금 수입에서 수십억 달러를 차용하여 교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

(3) 지방 지역사회 재개발 자금을 수 차례 인출하여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

(4) 버스, 셔틀, 경전차, 지역 통근 기차 등과 같은 지방 공공 교통편에서 수십억 달러를 인출하여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

(e) 지방 정부 서비스 전용 자금 및 교통 개선 프로젝트 전용 자금에서 지속적으로 횡령 및 차용할 경우 경찰, 화재 및 구급 의료 처치 인력의 일시 해고, 소방소 폐쇄, 의료보조비 삭감, 도로 안전 개선의 지연, 공공 교통비 인상, 공공 교통 서비스 감축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f) 새크라멘토의 주 경찰은 유권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무시했으며 정치가가 이러한 전용 자금을 인출 또는 차용하는 것에 대해 현재 법률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g) 투표 발의안이 승인을 얻는다면 새크라멘토의 주 정치인들이 지방 정부 서비스 전용 자금 또는 교통 개선 프로젝트 및 서비스 전용 자금을 위한 세금 수입을 점유, 전환, 변환, 차용, 이체, 이전, 지불정지나 인출 또는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제2.5조. 목적 진술.

이 법안의 목적은 새크라멘토의 주 정치인들이 지방 정부 서비스 전용 자금 또는 교통 개선 프로젝트 및 서비스 전용 자금을 위한 세금 수입을 점유, 전환, 변환, 차용, 이체, 지불정지나 인출 또는 방해하는 것을 확실하고 완전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제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절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 주의회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 주의회는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의 목적을 위해 부과하거나 징수된 세금 수입에 대해 재할당, 양도, 차용, 지출 승인, 사용의 제한 등을 할 수 없다.

(c) 주 자금에서 지방 정부의 용도를 위해 지출 승인된 자금은 법률이 명시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d) 제25조에 따라 지방 정부에게 지원된 자금은 주 또는 지방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절 제25.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5조. (a) 2004년 11월 3일 이후부터 주의회는 법령이 다음을 이행하도록 법제화하지 않는다.

(1) (A) (B)호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 11월 3일자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회계연도에 기관 사이에 할당된 총 수익금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카운티의 모든 지방 기관에게 할당된 카운티의 종가 재산세 총수입액 비율을 줄이도록 종가 재산세 수입을 제XIII A절 제1조 (a)항에 따라 할당하는 방법을 수정한다. 이 목의 목적에 따라 "비율"에는 (2)목에서 언급한 재산세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B) ~~2008-09 회계연도부터~~ *2009-10* 회계연도에 *한하여* (C)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부합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A)호는 지불정지될 수 있다.

(i) 주지사는 주회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A)호의 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행한다.

(ii)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2/3의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A)호의 정지를 포함하며 다른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비상 법령을 제정한다.

(iii) (ii) 항목에 설명된 법령의 발효일 이전에 지방 기관에 대한 종가 재산세 수입 할당금을 수정하여 발생하였으며 법률로 제공되는 이자를 포함한 총 수입 손실금액을 지방 기관에 전액 상환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 이 전액 상환은 수정이 적용된 회계연도 직후부터 세 번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C) (i) (A)호는 10년 연속의 회계연도에서 2년의 회계연도 이상 지불정지되지 않으며 이 기간은 (A)호가 정지된 최초의 회계연도로부터 시작된다.~~

~~(ii) (B)호의 (iii)항목에 따라 법령이 필요로 하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A)호는 어느 회계연도에도 지불정지되지 않는다.~~

~~(iii) 2004년 11월 3일자 세입과세법 제10754.11조에 따라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B)호 (ii)항목에 명시된 법령의 유효일 이전에 전액 지불하지 않을 경우 (A)호는 어느 회계연도에도 지불정지되지 않는다.~~

~~(iv)~~ *(C)* (A)호의 지불정지는 (A)호가 지불정지되기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카운티 내에 모든 지방 기관들에게 할당된 종가 재산세 총수입액의 8퍼센트를 초과하는 카운티 내 모든 지방 기관에 대한 종가 재산세 총수입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

(2) (A) (B)와 (C)호에 제공된 경우를 제공하고 세율을 낮게 부과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2004년 11월 3일 발효된 세입과세법의 제2항 제1.5편(제7200조로 시작)에 명시된 Bradley-Burns Uniform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서 파생된 수익 분배 방법을 변경한다. 이 호가 부과한 제한사항은 2004년 11월 3일자 세입과세법 제7203.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익 변경 기간 마지막에 얻은 세율 변경에 대한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자격부여에도 적용된다.

(B) 주의회는 주간 협약에 참여하거나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Bradley-Burns Uniform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부과된 사용세에 따라 파생된 수익 배분 방법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C) 주의회는 한 카운티에서 2개 이상의 특별히 지정된 지방 기관을 각 기관의 통제 기관의 승인을 얻어 Bradley-Burns Uniform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율에서 파생된 수익 중에서 종가 재산세 수익의 할당을 교환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법령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세율에서 파생된 수익의 이 호에 따른 교환은 그러한 수익이 파생된 기존 세율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2)목 (C)호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록에 기재된 호명투표로 2/3의 동의를 얻어 주의회의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을 따르지 않고 카운티에서 종가 재산세 수익이 지방 기관에 할당된 회계연도의 비례 배분에 대한 변경. *주의회는 이 목에 따라 종가 재산세의 비례 배분을 변경하거나 주의회나 다른 주 기관이 지방 정부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지방 정부에 변상하기 위해 제XI절 제15조에 명시된 수익의 배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4) 2004년 11월 3일자 세입과세법 제7203.1조에 정의된 수익 변경 기간을 연장하여 Bradley-Burns Uniform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에 따라 이 날짜에 해당 조에 명시된 판매세 및 사용세율을 부과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권한을 정지

(5) (4)목에서 설명한 비율 권한 정지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세입과세법 제97.68조에서 요구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에 대한 지불을 2004년 11월 3일자 기준으로 감축.

(6) 거래 및 사용세법(세입과세법 제2부 제1.6편(제7251조로 시작))에 따라 거래 및 사용세율을 부과하거나 2004년 11월 3일자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거래 및 사용세율에 따라 파생된 수익 배분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 기관의 권한을 제한.

(7) (A) 주, 주 기관 또는 관할권의 이익을 위해 제XVI절 제16조에 따라 기관에 할당된 종가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해 직간접적 세금을 납부, 상환, 대출 또는 양도하거나 (B) (i)보건안전법 제33607.5조와 제33607.7조 또는 2008년 1월 1일자 법령과 같이 지불에 필요한 유사한 법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과세 기관에 납부, (ii) 적절한 주택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세금을 주, 주 기관 또는 관할구의 이익을 위한 특정 용도로 사용, 제한 또는 할당하는 지역사회 개발 기관이 필요.

(b) 이 조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 "종가 재산세 수익" 이란 이러한 수익이 법령으로 별도 분류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제XIII A절 제1조 (a)항에 따라 카운티가 징수한 세금으로 파생된 모든 수익을 의미한다.

(2) "법률 기관" 은 2004년 11월 3일자 절과 명시된 의미와 세입과세법의 제95조에 명시된 의미가 동일하다.

(3) "관할구역" 은 2004년 11월 3일자 절과 명시된 의미와 세입과세법의 제95조에 명시된 의미가 동일하다.

제5조. 제1조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조. 주의회는 고속도로 사용세 계정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그 후속 계정을 차용하지 않으며 이 절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 이외의 목적이나 방법으로 그러한 수익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5.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1조.~~ *제2조.* 공공 도로와 고속도로의 차량에 사용되는 차량연료에 대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거둔 수익, 초과 징수 비용 및 법률이 허용하는 환불 비용은 *고속도로 사용세 계정(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0조) 또는 그 종속 계정에 귀속되어 신탁 자금이 되며 제4조에 따라 매월 할당되고*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a)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및 비차량 교통을 위한 관련 공공 시설)의 연구, 계획, 건설, 개조, 유지 및 운영. 환경적 영향의 완화, 그러한 목적을 위해 몰수 또는 손상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 전술한 목적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b) 환경적 영향의 완화, 그러한 목적을 위해 몰수 또는 손상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 전술한 목적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 구조물의 유지보수, 공공 교통 안내로를 위한 우선권 등을 포함한 과도한 공공 교통 안내로(및 관련 고정 시설)의 연구, 계획, 건설 및 개조. 하지만 공공 교통 전력 체계, 공공 교통 시설, 차량, 장비 및 서비스 등을 위한 유지 및 운영 비용은 제외된다.

제5.2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2조.~~ *제3조.* 차량이나 차량의 사용 또는 작동에 대해 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세금에서 얻은 수입, 초과 징수 금액, 법이 허용한 환불 비용 등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a) 캘리포니아 주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사용, 운행, 또는 등록을 규제하는 주 행정 및 법률 집행. 여기에는 주 기관의 교통 및 차량법 이행, 공기와 소음 방출로 인한 차량 운행의 환경적 영향 완화 등이 포함된다.

(b) 이 절의 제~~1~~ *2*조에 명시된 목적.

제5.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3조.~~ *제4조. (a) (b)항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9년 6월 30일자로 유효한* ~~기존의~~ 법령의 ~~할당을 지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본 절의 제1조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익 할당금을 제공한다~~기본 원칙은 *제2조에 설명된 수익을* 시,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지역에 *할당하며 효력을 유지한다.*

(b) 주의회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할 때까지 *2009년 6월 30일자로 법령 할당을 수정하지 않는다.*

(1) 주의회는 ~~이 의회는~~ *본 항에 따라* 공정하게 지리학적으로 사법권을 분배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할지를 결정한다.~~즉,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절의 제1조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시, 카운티 또는 주 지역이 그러한 수익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지역의 지출에 대한 기존 법령 할당금으로 귀속된다.~~ 향후 법률 개정은 *(A)* 다른 유사한 수익과 함께 주 전체 지역 및 모든 인구의 교통편 수요를 공평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수익의 할당금을 제공*하고 (B)* 지역 일반 계획, 구역 교통편 계획, 캘리포니아 주 교통 계획에서 지상 교통편에 대한 지역, 구역 및 주 전체 목표 달성에 맞추어 갈 것이다.

(2) (c)항에 설명된 절차를 완료.

(c) 주의회는 다음 모두가 모두 발생할 때까지 (b)항에 따라 법령 할당금을 수정하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 주 교통 위원회는 주의 다양한 장소에서 4회 미만의 공개 청문회를 열어 지역 및 구역의 지상 교통편 목표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법률 할당금에 대한 수정이 지역 일반 계획, 구역 교통 계획, 캘리포니아 주 교통 계획에서 지상 교통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율하는 방법을 기술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3) 캘리포니아 주 교통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행한지 90일이 경과되었다.

(d) 법률 할당금을 수정하는 주의회 제정 법령은 주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2/3의 찬성을 얻어 통과해야 하며 이 경우, 이 법안에는 관계 없는 다른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e) 법령이 이 절에 따라 주, 카운티, 주 기타 지역에 할당한 수익은 할당된 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절의 제2, 5, 6조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f) 주의회는 다음 중 하나를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 고속도로 사용세 계정의 상태를 신탁 기금으로 변경, (2) (e)항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수익금을 차용, 전환 또는 지출 승인, (3) 제2조에 설명된 세금을 2009년 6월 30일자로 유효한 절차에 따라 시, 카운티, 주 기타 지역에 지급, 할당, 분배, 지출 또는 이체하는 것을 지연, 보류, 정지 또는 방해.

제5.4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4조.~~ *제5조.* 제~~3~~ *4*조에 따라 할당된 수익은 제~~1~~ *2*조 의 (b)항에 명시된 용도를 위해 지출될 수 없으며, 카운티 전체 또는 해당 수익이 지출된 카운티의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선거에서 그러한 수익의 사용을 승인하는 발의안에 대해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할 때까지 연구 및 계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의회는 이 조에서 할당 또는 지출을 승인한 수익을 제~~1~~ *2*조의 (b)항에 명시된 용도로 발행된 유권자 승인 채권의 원리금 지불을 위해 보증 또는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5.5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5조.~~ *제6조. (a)* ~~주의회는~~ 제~~1~~ *2*조의 (a)항에 명시된 용도로 제4조에 따라 주에 할당된 ~~시, 카운티 또는 주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수익의 *최고* 25퍼센트를*유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그러한 목적으로~~ *2010년 11월 2일 이후 주가 그러한 목적으로* 발행한 유권자 승인 채권의 원리금 지불을 위해 *주의회의 지출로* 보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b) 제4조에 따라 이 절의 제2조 (a)항에 명시된 용도로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할당된 최고 25퍼센트의 수익은 그러한 용도로 시나 카운티에서 발행한 유권자 승인 채권의 원리금 지불을 위해 시나 카운티만 보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철회한다.

~~제6조. 이 절에 따라 마련된 세금 수입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 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다.~~

~~(a) 대출을 한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에 빌린 자금에 전액 상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법안의 입법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상환을 지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b) 대출한 금액은 대출한 시점에서 3년의 회계연도 이내에 전액 상환하며 다음 중 하나가 발생.~~

~~(1) 주지사가 주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그 결과 일반 자금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선언.~~

~~(2) 주지사가 현재 회계연도의 5월에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예상했듯이 현재 회계연도의 일반 자금 수익의 합계가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 자금 수익 합계보다 적으며 현재 회계연도의 제IV절 제12조에 따라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활비 및 인구의 변화에 따라 조절됨.~~

~~(c) 이 조의 이때한 사항도 주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 교통 기관,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에게 이 절에 따라 승인된 용도로 이 절의 적용을 받는 자금에서 대출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이 항에서 설명한 대로 승인된 대출은 대출 날짜로부터 4년 이내에 조성 기금 투자 계정(PMIA) 또는 이 계정의 종속 계정에 있는 자금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율로 대출된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제5.7조. 제7조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7조. 주의회가 제2조에서 설명한 세금을 줄이거나 철회하고 그러한 세금에서 파생되는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대안적인 수익 출처를 채택할 경우, 대체 수익은 고속도로 사용세 계정으로 귀속되며 제2조에 열거된 전용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시, 카운티, 주 전역에 할당된다. 이 절의 다른 모든 조항은 주의회가 제2조에 명시된 세금에서 파생된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채택한 수익에 적용된다.

제5.8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7조.~~ *제8조.* 이 절은 판매세 및 사용세법 또는 차량면허 수수료법과 그러한 법령에 대한 이후의 모든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나 세금에 영향을 주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제5.9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8조.~~ *제9조.* 이 절의 제~~1 및~~ *2 및 3*조에도 불구하고 주 이외의 기관이 이러한 조에서 승인한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나 더 이상 그러한 용도가 불필요한 세금 수익의 지출로 인해 획득한 재산은 지역 공원이나 휴양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5.10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절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9조.~~ *제10조.* 이 헌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제~~1 및~~ *2 및 3*조에 명시된 세금 수입의 지출로 획득한 주의 잉여 재산으로서 해안에 위치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주~~ *주*에서 재산 획득을 위해 지불한 이수 금액 이상을 고려하여 그러한 재산을 공원 및 휴양지 관리국에 주립 공원을 위한 용도로 양도하거나 어획 관리국에 어류 및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1947년 야생생물 보존법의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존 위원회에게 양도하거나 농경지 보존을 위해 주해안보존회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사용된 "해안 구역"은 1977년 1월 1일에 정의한 것과 공공자원법의 제30103조에 정의 된 "해안 구역"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6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 A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a) 주의회는 일반 교통 계정 또는 그 후속 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용하지 않으며 이 절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 이외의 목적이나 방법으로 그러한 수익을 사용하지 않는다.*

(b) 주 교통 기금 또는 그 종속 ~~그~~ 계정의 일반 교통 계정은 ~~자금은~~ *신탁 기금이다. 주의회는 일반 교통 계정의 상태를 신탁 기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일반 교통 계정의 자금은 일반 자금이나 주 재무국의 다른 자금 또는 계정에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다음의 상태에 부합할 경우에만 일반 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다:~~

(c) 세입과세법 제7102조 (a)항을 포함하여 2001년 6월 1일자 (1)목에서 (3)목에 명시된 모든 수익은 분기에 1회 이상 일반 교통 계정(공익사업법 제99310조) 또는 종속 조항에 귀속된다. 주의회는 (d)항에 설명된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해 이러한 수익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전환 또는 지출 승인하거나 일반 교통 계정으로 이러한 자금을 분기마다 귀속시키는 것을 지연, 보류, 중지 또는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d) 일반 교통 계정의 자금은 교통 계획 및 대중 교통의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c)항에 설명된 수익은 다음과 같이 할당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통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출 승인한다.

(1)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5조 (a)항에서 (f)항까지의 50퍼센트.

(2)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2조 (b)항의 25퍼센트.

(3)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2조 (c)항의 25퍼센트.

~~(a) 대출을 한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에 빌린 자금에 전액 상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법안의 입법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상환을 지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b) 대출한 금액은 대출한 시점에서 3년의 회계연도 이내에 해당 계정에 전액 상환하며 다음 중 하나가 발생.~~

~~(1) 주지사가 주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그 결과 일반 자금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선언.~~

~~(2) 주지사가 현재 회계연도의 5월에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예상했듯이 현재 회계연도의 제IV절 제12조에 따라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회계연도의 일반 자금 수익의 합계가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 자금 수익 합계보다 적다.~~

(e) (d)항 (1)목의 목적에 따라, "교통 계획"은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5조 (c)항에서 (f)항까지 설명한 용도만을 의미한다.

(f) 이 절의 목적에 따라 "대중 교통", "공공 교통" 및 "대중 통행"은 "일반 교통"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 교통"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A)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지상 운송 서비스, 42 U.S.C. 12143에서 요구한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제공된 무료 보조 교통 서비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제공된 유사한 교통편, (B) 버스, 철도, 선박 또는 고정된 노선을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한 기타 운송기구로 운영, (C) 일반적으로 요금을 부과, (D) 2009년 1월 1일자 공익사업법 제10부 제11편 제4장 제1절에 정의된 교통 구역, 포함된 교통 구역, 시 운영자, 포함된 시 운영자, 유자격 시 운영자 또는 교통 개발 위원회가 제공,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공동 운영 기관, 2009년 1월 1일자 정부법 제15975조 (f)항에 설명된 기관, 2009년 1월 1일자 공익사업법 제99260조, 제99260.7조, 제99275조, 또는 제99400조 (c)항에 따른 자금 수령자, 2009년 1월 1일자 공익사업법 제132353.1조에 정의된 통합 기관.

(2)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5조 (a)항에 따라 교통국이 제공한 지상 운송 서비스.

(3)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5조 (b)항에 정의된 것을 포함한 공공 교통 자금 개선 프로젝트.

제6.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 A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a) 이 조에서 사용한 "지방 교통 자금"은 정부법 제29530조 또는 이 법령의 종속 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다.

(b) 모든 지방 교통 자금은 신탁 기금으로 지정된다. *주의회는 지방 교통 자금의 상태를 신탁 기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c) 법률에 따라 형성된 지방 교통 자금은 폐지할 수 없다.

(d) 지방 교통 자금의 돈은 이 자금을 조성한 지방 정부만 할당하되 1997년 10월 1일자로 존재하는 규정인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2장 제11조(제29530조로 시작) 및 공익사업법 제10부 제11편 제4장(제99200조로 시작)에 따라 승인된 목적으로만 할당할 수 있다. 카운티나 주의회도 지방 교통 자금에 있는 돈을 이 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

(e) 이 조는 지방 교통 자금의 수익을 할당, 분배 및 사용하는 단독적인 방법이 된다. (d)항에 설명된 목적은 지방 교통 자금의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단독 목적이다. 주의회는 다음 중 하나를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법령을 통과시킬 수 없다.

(1) (d)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지방 교통 자금의 수익을 양도, 변환 또는 지출 승인

(2) (d)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지방 교통 자금의 수익을 지출하는 것을 승인

(3) 이러한 수익이 주 재무국의 소매 소비세 자금에 귀속되거나 다른 자금 또는 계정으로 양도되는지에 관계 없이 지방 교통 자금의 수익을 차용 또는 대출.

(f) 지방 교통 자금에 할당된 세입과세법 제7202조에 따라 부과된 세율은 2008년도에 그러한 자금으로 이체된 비율보다 낮게 감소될 수 없다. 지방 교통 자금에 할당된 수익은 세입과세법 제7204조에 따라 전달되며 2009년 6월 30일자 정부법 제29530조에 따라 지방 교통 자금으로 귀속된다.

제7.0조. 제1조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 B절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조. 주의회는 교통 투자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그 후속 계정을 차용하지 않으며 이 절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 이외의 목적이나 방법으로 그러한 수익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7.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 B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번호를 정한다.

~~제1절.~~ *제2절.* (a) 2003-04 회계연도와 그 이후 매년 해당 회계연도에 *자동차 연료 면허세법(세입과세법 제2부 제2편(제7301조로 시작))의 목적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동차 연료의 판매,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판매세 및 사용세법(세입과세법 제2부 제1편(제6001조로 시작))이나 그 종속 법률에 따라 세금으로 거둔 ~~이 법률에 따라 주 일반 자금에 귀속되는~~ 모든 ~~자금~~ *수익은* 주 재무국이 형성한 교통 투자 기금 또는 종속 자금에 ~~이체되며~~ 귀속되며 신탁 기금이 된다. *주의회는 교통 투자 기금의 상태를 신탁 기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b) (1) 2003-04회계연도에서 2007-08회계연도까지 교통 투자 기금의 돈은 2002년 3월 6일자 세입과세법 제7104조에 따라 주의회가 지출한 후 할당된다.

(2) 2008-09 회계연도와 이후 매년마다 교통 투자 기금의 돈은 다음의 목적으로만 할당된다.

(A) 공공 교통 및 대중 교통. *공공 교통 및 대중 교통을 위해 지출 승인한 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i)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의 제99312조 (b)항에 따른 25퍼센트, (ii)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2조 (c)항에 따른 25퍼센트, (iii)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5조 (a) 및 (b)항의 목적에 따른 50퍼센트.*

(B) 캘리포니아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법률 또는 종속 프로그램에 따른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

(C) 시와 카운티를 포함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거리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복구, 재건축 또는 폭풍으로 인한 파손 수리.

(D) 시와 카운티를 포함하여 카운티에서 실시하는 거리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복구, 재건축 또는 폭풍으로 인한 파손 수리.

(c) 2008-2009 회계연도와 이후 매년마다 교통 투자 기금의 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될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주의회의 지출 승인을 받아~~ *통제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지출승인된다.*

(A) (b)항 (2)목 (A)호에 명시된 목적으로 20퍼센트의 자금.

(B) (b)항 (2)목 (B)호에 명시된 목적으로 40퍼센트의 자금.

(C) (b)항 (2)목 (C)호에 명시된 목적으로 20퍼센트의 자금.

(D) (b)항 (2)목 (D)호에 명시된 목적으로 20퍼센트의 자금.

~~(d) (1) (2)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특정 회계연도에 (a)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자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 전체 또는 일부 수익을 이체하는 것이 정지될 수 있다.~~

~~(A) 주지사는 주회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a)항이 요구하는 수익금 이체 중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행한다.~~

~~(B)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2/3의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a)항이 요구하는 수익의 이체 정지를 포함하며 이 법안에 다른 관련이 없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C) (B)항에 설명된 법령의 발효일 이전에 법률로 제공되는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자금으로 이체되지 않은 총 수입금의 교통 투자 기금으로 전액 상환하기 위한 별도 법령을 제정한다. 이 전액 상환은 지불중지가 적용된 회계연도 직후부터 세 번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A) (a)항이 필요로 하는 이체는 10년 연속의 회계연도에서 2년의 회계연도 이상 지불정지되지 않으며 이 기간은 (a)항이 필요로 하는 양도가 정지된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로부터 시작된다.~~

~~(B) (a)항에 따라 필요한 이체는 (1)목 (C)호에 따라 제정된 법령이 필요로 하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a)항은 어느 회계연도에도 지불정지되지 않는다.~~

~~(e)~~ *(d)* 주의회는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2/3의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 (c)항에 명시된 점유율을 수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 단 *다음의 모두가 발생할 때까지* ~~이 법안에는 (b)항의 (2)목에 명시된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고 (a)항에 명시된 자금과 기타 관련 없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 주 교통 위원회는 주의 다양한 장소에서 4회 미만의 공개 청문회를 열어 공공 교통, 대중 교통,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 거리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등의 수요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법률 할당금에 대한 수정이 지역 일반 계획, 구역 교통 계획, 캘리포니아 주 교통 계획에서 공공 교통, 대중 교통, 교통 자본 개선, 거리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율하는 방법을 기술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3) 캘리포니아 주 교통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행한지 90일이 경과되었다.

(4) 이 항에 따라 주의회가 제정한 법령은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2/3의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야 하며 이 법안에는 관련이 없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으며 (a)항에서 설명한 수익은 (b)항 (2)목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f)~~ *(e)* (1)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자 이 조에 따라 수익의 양도 지불정지 때문에 주 일반 자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 이체되지 않은 수익의 총액에 상응하되 정부법 제63048.65절에 따라 교통 이연 투자 기금에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교통 2016년 6월 30일까지 일반 자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 이체된다. 이 총 금액이 이체될 때까지 매년 회계연도에 지불할 이체 금액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체해야 하는 총 금액의 1/10보다 커야 한다. 이체된 수익은 수익금 이체 지불중단을 하지 않아 수령한 경우, 이 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할당해야 한다.

(2) 주의회는 (1)목이 요구하는 최소 이체 납부금으로 확보된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의 판매 수익은 (b)항의 (2)목에 따른 할당금의 대상일 경우 이 조에 명시된 용도로만 할당된다.

(f) 이 조는 (a)항에 명시된 수익을 할당, 분배 및 사용하는 단독적인 방법이 된다. (b)항의 (2)목에 설명된 목적은 (a)항에 설명된 우익을 사용할 수 있는 단독 목적이다. 주의회는 다음 중 하나를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법령을 통과시킬 수 없다.

(1) (b)항 (2)목에 설명된 목적 이외에 (a)항에 설명된 수익의 양도, 변환 또는 지출 승인

(2) (b)항 (2)목에 설명된 목적 이외에 (a)항에 설명된 수익의 지출을 승인

(3) 이러한 수익이 교통 투자 기금에 귀속되거나 주 교통 자금의 신탁 기금인 일반 교통 계정과 같은 다른 자금 또는 계정으로 양도되는지에 관계 없이 (a)항에 설명된 수익을 차용 또는 대출.

(g) 이 절의 목적에 따라 "대중 교통", "공공 교통" 및 "대중 통행"은 "일반 교통"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 교통"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A)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지상 운송 서비스, 42 U.S.C. 12143에서 요구한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제공된 무료 보조 교통 서비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제공된 유사한 교통편, (B) 버스, 철도, 선박 또는 고정된 노선을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한 기타 운송기구로 운영, (C) 일반적으로 요금을 부과, (D) 2009년 1월 1일자 공익사업법 제10부 제11편 제4장 제1절에 정의된 교통 구역, 포함된 교통 구역, 시 운영자, 포함된 시 운영자, 유자격 시 운영자 또는 교통 개발 위원회 또는 교통 개발 위원회가 제공,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공동 운영 기관, 2009년 1월 1일자 정부법 제15975조 (f)항에 설명된 기관, 2009년 1월 1일자 공익사업법 제 99260조, 제99260.7조, 제99275조, 또는 제99400조 (c)항에 따른 자금 수령자, 2009년 1월 1일자 공익사업법 제 132353.1조에 정의된 통합 기관.

(2)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5조 (a)항에 따라 교통국이 제공한 지상 운송 서비스.

(3) 2009년 7월 30일자 공익사업법 제99315조 (b)항에 정의된 것을 포함한 공공 교통 자금 개선 프로젝트.

(h) 주의회가 (a)항에 설명한 세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그러한 세금에서 파생되는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대안적인 수익 출처를 채택할 경우, 대체 수익은 (b)항 (2)목에 열거된 용도만을 위하며 (c)항에 따라 할당된 교통 투자 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절의 다른 모든 조항은 주의회가 (a)항에 설명된 세금에서 파생된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채택한 수익에 적용된다.

제8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X C절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XIX C절

제1조. 제XIX, XIX A, 또는 XIX B절을 위반한 행동을 무효화하기 위한 시도가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로 최종 판결되거나, 결산되거나 해결에 성공한 경우,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일반 자금에서 통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지출 승인이 되며 수익이 불법적으로 인출되거나 재정적 상태로 변환된 자금 또는 계정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불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2조. 제XIII절 제24조 또는 제25.5조를 위반한 행동을 무효화하기 위한 시도가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로 최종 판결되거나, 결산되거나 해결에 성공한 경우, 불법적으로 인출 또는 변환한 금액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일반 자금에서 지방 정부로 지속적으로 지출승인된다.

제3조. 수익금이 불법적으로 인출되거나 변형된 날짜부터 조성 기금(Pooled Money) 투자 자금에서 계산한 투자금은 이 조에 따라 복원해야 할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발생시킨다. 도전에 성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제기관은 지속적인 지출승인에 필요한 이체를 하며 이체가 완료되었음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4조. 이 조에 따라 도전이 있을 경우, 복원 명령 또는 예비 이행명령이 발행되며 원고 또는 청원자는 복원 명령 또는 예비 이행명령이 유발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정부 옹호자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옹호자를 면책하는 채권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

헌법 제XVI절 제16조는 매년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의 지정된 부분은 재개발 지역 내의 황폐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도록 재개발 기관에게 할당한다. 제XVI절 제 16조는 주의회가 세금의 특정 부분 전체를 재개발 기관 대신 주, 주 기관 또는 기타 과세 관할구역에 재할당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의회는 최근에 재개발 기관이 세금의 일부를 재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이외의 용도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제XVI절 16조를 불법적으로 기만했다. 이 법안에 의해 마련된 개정의 목적은 주의회가 세금을 재개발 기관에 할당한 후에 세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주 또는 관할구역에 양도하도록 하거나 세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주, 주 기관 또는 관할지역의 혜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10조. 지속적인 지출 승인.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통제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지출 승인을 해야 하는 이 법의 제6조, 6.1조, 7조, 7.1조, 8조의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절 제7조에서 의미하는 "법에 의한 지출 승인"을 의미한다.

제11조. 포괄적 해석.
이 법의 조항은 그 목적을 발효시키기 위해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제12조. 대립하는 법령.
주의회가 2009년 10월 21일부터 이 법안의 유효일 사이에 법령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이 제정된 날짜에 발효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법안의 효력 개시일은 철회된다.
제13조. 상충되는 투표 법안.
지방 정부나 교통 프로젝트 또는 서비스 또는 양쪽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금을 확보할 목적의 수익의 지도 또는 재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법안과 다른 법안이 동일한 투표 용지에 기재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이 이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 이 법안의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법안들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제14조. 가분성.
이 법안의 조항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그의 적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가 된 조항 또는 적용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들은 그러한 무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향이다.

발의안 제23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보건안전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추가 발의된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제1조. 사실 확인 설명
(a) 2006년에 주의회 및 주지사는 환경법 AB 32를 제정한다. 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규정과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를 보호하는 능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b)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은 4.8퍼센트였다.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이후 12퍼센트 이상 급상승했다.
(c) 다양한 경제 연구 결과 AB 32를 준수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가솔린, 전기, 식품 및 물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소비자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d) 새로운 규제에 수십억이 지출되고 비용이 추가될 경우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게 된다.
(e) 실직하고 임금이 삭감되고 일시 해고된 캘리포니아 주 가족들은 현재 입법의 결과 인상된 가격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2조. 목적 진술
시민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이 법안 채택 시점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AB 32의 운영 및 실행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를 원한다.
제3조. 제25.6부(제38600조로 시작)은 보건안전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25.6부. AB 32 실행 중지

38600. (a) 이 부의 발효일 이후 보건안전법 제25.5부(제38500조로 시작)는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이 3분기 연속 5.5퍼센트 이하인 기간에 실행 중지된다.
(b) 중지된 동안 주 기관은 제25.5부(제38500조로 시작)를 실행하는 규정을 제안, 또는 채택하지 않으며 이 부의 효력 개시일 이전에 채택된 규정은 무효가 되고 실행 정지가 완화될 때까지 무효가 되고 집행 불가능하게 된다.

발의안 제24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발의 법안은 세입과세법의 조를 수정하고 폐지하므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의 규정은 ~~삭선 형식~~으로 인쇄되며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안은 "법인세 허점 폐지법"이라고 명명한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을 확인하며 밝힌다.
1. 캘리포니아 주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주 수입은 급감했고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실직했으며 수 많은 캘리포니아 주 주택이 차압 부동산 매각으로 사라졌다. 캘리포니아 주와 주민들의 상황이 회복되려면 수 년이 걸린다고 예상되고 있다.
2.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2008년과 2009년에 주의회와 주지사는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개인 소득세, 주소비세, 자동차 면허세 등의 세금을 인상했다. 동시에 대기업에게 주 수입에서 연간 약 20억 달러를 제공하는 3가지의 특별 법인세 혜택을 통과시켰다.
3. 주의회에서 이러한 법인세 혜택을 통과시키기 전에 공개 청문회나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주지사가 입법화시켰다.
4.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거나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아무런 요건 없이 이러한 세금 혜택을 얻고 있다.
5. 이러한 허점은 총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연구 결과 첫 번째 허점에서 얻는 혜택의 80퍼센트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 전체의 0.1퍼센트에게만 돌아간다고 추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금 혜택으로 인한 혜택의 87퍼센트는 229개 회사로 집중되며 각각 총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6. 이러한 법인세 허점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주의회와 주지사는 주 예산에서 310억 달러 삭감을 법제화함으로써 공립학교와 대학을 위한 자금 경로를 차단하고 극빈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없앴으며 주립 공원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일시 해고하고 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7. 첫 번째 법인세 허점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세 대상인 수익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두 가지의 규칙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기업들이 주에 세금을 덜 내는 쪽의 규칙을 선택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8. 두 번째 법인세 허점으로 기업들은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세금 환급금을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금 환급금으로 주에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9. 세 번째 법인세 허점으로 기업들은 순 운영 손실을 환급하고 이미 부과되어 이전 연도에 납부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10. 공립학교는 이러한 지원금 삭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주에서는 K-12 학교 체제에서 17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다. 학교에서는 2만 명 이상의 교사와 교육 관련자를 일시 해고했다. 초등학교 학급 규모는 한 반에 20명에서 3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중고등학교의 학급 규모는 40명이 일반적이며 일부 60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몇 년 동안 새로운 교과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미술, 음악, 직업 교육, 체육 프로그램 등도 사라졌다. 주 전체의 학교는 5일 먼저 수업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11. 1981년 이후 납부된 법인 소득세는 이러한 특별 세금 혜택을 주기 전부터 절반으로 줄었다.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있다.

12. 캘리포니아 주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없애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대기업을 위한 세제의 허점을 입법화해서는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공평하지 않다. 올해 공교육에 대해 90억 달러를 삭감했을 때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은 125억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별 법인세 혜택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대기업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자신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

제3조. 의도와 목적

2008년과 2009년에 기업에게 제공된 3가지 세제 혜택을 폐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한다. 2009년 ABx3 15 및 SBx3 15에 포함된 선택 단일 판매 요인 조항(elective single sales factor provision), (2) 2008년 AB 1452에 포함된 순 운영 손실 환급 조항, (3) 2008년 AB 1452의 세금 공제 규정.

제4조. 세입과세법 제1727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7276. 제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17276.7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 운영 손실 공제와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조에 제공된 공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1)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한 순 운영 손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순 운영 손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는다.

(b) (1) (2)목과 (3)목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금액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2)조의 규정을 수정하여 과세 연도에 대한 순 운영 손실금액의 대항 비율이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의 목적에 따른 해당 비율은 다음과 같다.

(A)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50퍼센트.

(B) 2000년 1월 1일 이후와 2002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55퍼센트.

(C) 2002년 1월 1일 이후와 2004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60퍼센트.

(D)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100퍼센트.

(2) 1994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과세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처음 3년의 과세 연도에 발생한 각 손실에 다음이 각각 적용된다.

(A) 순 운영 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 손실과 같거나 적을 경우, 순 운영 손실의 100퍼센트은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B) 순 운영 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 손실보다 클 경우, 순 운영 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 신규 사업의 순 손실과 같은 금액은, 이 금액의 100퍼센트가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ii) 신규 사업의 순 손실을 초과하는 순 운영 손실의 부분은, 이 금액의 해당 비율이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C) 내국세입법 제172(b)(2)조의 목적에 따라 (B)호의 (ii)항목에 설명된 금액은 (B)호의 (i)항목에 설명된 금액으로 통합된다.

(3) 1994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과세 연도에 적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의 경우, 다음의 각각이 적용된다.

(A) 순 운영 손실이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과 같거나 적을 경우, 순 운영 손실의 100퍼센트는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과세 연도로 이월된다.

(B) 순 운영 손실이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보다 클 경우, 순 운영 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과 같은 금액은, 이 금액의 100퍼센트가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ii)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을 초과하는 순 운영 손실의 부분은, 이 금액의 해당 비율이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C) 내국세입법 제172(b)(2)조의 목적에 따라 (B)호의 (ii)항목에 설명된 금액은 (B)호의 (i)항목에 설명된 금액으로 통합된다.

(4) 1994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과세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가 이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 또는 적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을 한지 처음 3년의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신규 업체로 대우한다.

(5)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나 이상의 사업체가 이 조에 따른 신규 사업 또는 적격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목 (B)호의 (i) 항목을 적용한 후 순 운영 손실에서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목이 우선 적용되며, 순 운영 손실의 나머지 부분이 전체 순 운영 손실을 구성하므로 순 운영 손실의 나머지 부분에 (3)목이 적용된다.

(6)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순 손실"이란 내국세입법 제465조 및 469조를 적용한 후 순 손실을 의미한다.

(c) 순 운영 손실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e) 순 운영 손실 환급 및 이월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조와 손실이 이월된 연도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순 운영 손실 환급은 2011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 연도에 대한 운영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2)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은 여기에 제공된 기간을 대신하여 이전의 과세 연도 2년에 대해 각각 순 운영 손실 환급이 된다.~~

~~(A) 2011년 1월 1일 이후와 2012년 1월 1일 이전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의 경우, 과세연도의 환급액은 순 운영 손실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B) 2012년 1월 1일 이후와 2013년 1월 1일 이전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의 경우, 과세연도의 환급액은 순 운영 손실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C) 2013년 1월 1일 이전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의 경우, 과세연도의 환급액은 순 운영 손실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2)목에도 불구하고 REIT의 특별 규정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B)조와 기업 주식 감소 이자 손실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E)조 및 제172(h)조는 다음에 설명한 대로 적용된다.~~

~~(4) 순 운영 손실 환급은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d) (1) (A) 1987년 1월 1일 이후 및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의 순 운영 손실에 대해 순 운영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연도와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A)(ii)조는 (2)목과 (3)목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의 과세 연도" 대신 "5년의 과세 연도"로 대체되도록 수정한다.

(B) 2000년 1월 1일 이후 및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의 순 운영 손실에 대해 순 운영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연도와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A)(ii)조는 "20년의 과세 연도" 대신 "10년의 과세 연도"로 대체되도록 수정한다.

(2) 200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의 경우, "신규 사업"의 경우, (1)목의 "5년의 과세 연도"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8년의 과세 연도".

(B) 신규 사업의 두 번째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7년의 과세 연도".

(C) 신규 사업의 세 번째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6년의 과세 연도".

(3) 제17276.3조에 의해 공제가 거절된 순 운영 손실의 이월의 경우, 이 항에 명시된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A) 1991년부터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1년씩.

(B) 1991년 1월 1일부터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2년씩.

(4) 1987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은 제11편의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납세자에게 손실이 발생했거나 소득 연도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 다음 10년의 과세 연도에 매년 순 운영 손실이 이월이 된다. 앞 문장에서 제공한 손실 이월은 제11편 또는 유사한 경우에 납세자가 관할 법원 소속이 아닌 때부터 발생한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이 조의 목적:

(1) "적격 소규모 사업"이란 과세 연도에 수익과 공제를 제외한 백만 달러($1,000,000)보다 적은 총 매출을 올린 업체를 의미한다.

(2) (f)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이란 199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개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3) "제11편 또는 유사한 경우"란 내국세입법 제368(a)(3)조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이 실시하는 업무 활동의 경우, 해당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에는 (1) 및 (2)목이 적용된다.

(f)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사업 활동이 (e)항 (2)목에 따라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제23101조가 의미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존 사업체(법인 형태와 관계 없음)의 자산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 또는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인수 자산(부동산, 직원, 유형 및 무형의 자산 포함)의 공정 시장 가치가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총 자산의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목의 목적으로만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 취득한 자산과 총 자산의 상대적인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취득한 사업 자산을 업무 활동에서 처음 사용한 최초 과세 연도의 첫 번째 날에 한다.

(B) 이전자가 취득한 내국세입법의 제1221(1)조에 설명된 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인수하는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내국세입법 제1221(1)조에 설명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사업에서 취득한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나 이상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36개월 이내("사전 사업 활동")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나 이상의

사업에 참여했으며 그 후 추가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한 경우, 추가 사업 활동이 현재 또는 이전 업무 활동이 분류된 것과 미국 행정관리 예산국이 발행한 1987편 표준 산업 분류(SIC) 매뉴얼의 부문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납세자(또는 관련자)의 경우에만 신규 사업으로 처리된다.

(3) 모든 관련자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사업 활동에 참여하며 1993년 12월 31일 이후((1)목에 설명된 매입 또는 기타 인수 제외) 캘리포니아 주(제23101조의 의미)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사업 활동은 (e)항 (2)목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처리된다.

(4) 사업 활동의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 양식이 변경된 경우 양식의 변화는 무시되며 사업 활동의 신규 여부는 이 항의 (1)목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기존의 사업의 자산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 또는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결정한다.

(5) "관련자"란 내국세입법 제267조 또는 제318조에 따라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6) "취득"에는 선물, 유산, 이혼으로 인한 이전, 대가 여부에 관계 없이 실행된 기타 양도가 포함된다.

(7) (A)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세 연도의 경우, "신규 사업"에는 미국 행정관리 예산국이 발행한 1987편 표준 산업 분류(SIC) 매뉴얼을 포함하여 법안 2833 - 2836에 설명된 생물 약제학적 활동 또는 기타 생물기술 활동에 참여하며 미국 식약청 으로부터 제품에 대해 규정 승인을 받지 않은 납세가 포함된다.

(B) 이 목의 목적:

(i) "생물약제학적 활동"이란 인간 또는 동물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제약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기물에서 파생된 유기물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생물 제약학적 활동은 상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살아 있는 유기물을 사용하지만 제약 활동은 화학 합성물을 사용하여 상용 제품을 생산한다.

(ii) "기타 생물 공학 활동"이란 상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는 활동과 약 납품 속도, 기간, 장소에 대한 통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약 납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g) 내국세입법 제172(d)(2)조에 따라 수정할 때 기업이 아닌 납세자의 자본 소득 및 손실과 관련하여 제18152.5조에서 제공하는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h) 이 조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17276.7조에 명시된 대로 "유자격 납세자"에게 공제가 허용된다.

(i) 지방조세국은 분할, 폐각 회사, 파트너십, 계층적 소유 구조 등을 통해 이 조의 목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조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지시할 수 있다.

(j) 지방조세국은 이 조의 목적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 후 (b)항의 (1)목에 따라 순 운영 손실 이월로서 (b)항의 (2) 또는 (3)목 중 하나에 따라 결정된 순 운영 손실 이월을 재분류할 수 있다.

(k)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법령 제107장에 의한 수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대한 순 운영 손실에 적용된다.

제5조. 세입과세법 제17276.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7276.9. (a) 이 법령의 제17276, 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17276.7조와 내국세입법 제172조에도 불구하고2008년 1월 1일 이후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순 운영 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 (a)항에 의해 공제가 거부된 순 운영 손실의 순 운영 손실 또는 이월의 경우, 내국세입법 제172조에 의한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와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년씩.

(2)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2년씩.

~~(c) (a)항에도 불구하고 순 운영 손실 공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한 환급을 허용한다.~~

~~(d)~~ *(c)* 이 조의 조항은 해당 과세 연도의 순 사업 소득이 50만 달러($500,000)보다 적은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에 따른 사업 소득의 의미:

(1)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도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소득. 이 목의 목적에 따라 "도관 법인"이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2) 임대로 인한 소득.

(3) 농업으로 인한 소득.

제6조. 세입과세법 제17276.10조는 다음과 철회된다.

~~17276.10. 제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또는 17276.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귀속되는 순 운영 손실은 손실 연도 다음의 20년 동안 매년 과세 연도로 순 운영 이월이 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귀속되는 순 운영 손실은 손실 과세 연도 이전의 2년의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순 운영 손실 환급이 된다.~~

제7조. 세입과세법 제23663조는 다음과 철회된다.

~~23663. (a) (1) 다른 법인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의 경우 이 장에 따라 납세자에게 허용된 환급금으로서 "적격 환급" ((b)항 (2)목의 의미)은 납세자가 "적격 수탁자" ((b)항 (3)목의 의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1)목에 따라 양도된 환급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격 수탁자의 "세금"에 대해 적격 수탁자만 적용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른 적격 환급금을 양도한 후 적격 수탁자는 양도된 환급금을 처음부터 받은 것처럼 처리한다.~~

~~(b) 이 조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 "제휴 업체"란 제251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그룹 중의 한 업체를 의미한다.~~

~~(2) "적격 환급금"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납세자가 수령한 환급금.~~

~~(B)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수령한 환급금으로서 이 편의 조항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납세자의 최초 과세 연도로 이월 가능한 것.~~

~~(3) "적격 수탁자"는 적격 환급금을 양도하는 납세자와 같은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통합된 보고 그룹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처리된 제후 업체를 의미한다.~~

~~(A) 환급금을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수령한 경우.~~

~~(i) 2008년 6월 30일 및~~

~~(ii) 적격 환급금이 양도되는 납세자의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

~~(B)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환급금을 수령.~~

~~(i) 환급금이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최초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 및~~

~~(ii) 적격 환급금이 양도되는 납세자의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

~~(c) (1) (a)항에 따라 환급금을 양도하는 선택을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양도한 후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의 원래 수익금에 대해 환급금을 허용.~~

~~(2) 이 조에 따라 환급금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이 조에 따라 양도된 환급금의 액면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환급금 금액을 공제하며 양도된 환급금의 금액은 과세 연도에 납세자의 "세금" 양도에 대해 적용할 수 없고 양도하는 납세자의 환급금 이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조에 따른 환급금의 적격 수탁자는 양도가 발생한 과세 연도 이후 과세 연도에 양도된 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월 기간 한도와 (a)항 (2)목의 제한사항에 따르는 "세금" (제23036조에 정의)에 대해 양도된 환급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4) 적격 수탁자는 양도된 환급금을 배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양도된 환급금을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d) (1) 적격 수탁자가 납세자에게 이 조에 따른 환급금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

~~(2) 적격 수탁자가 납세자에게 이 조에 따른 환급금을 양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경우:~~

~~(A) 이 편에 따라 적격 수탁자에게 지불 금액에 대한 어떠한 공제도 하지 않는다.~~

~~(B) 양도하는 납세자가 수령한 금액은 이 편에 따라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 (1) 지방조세국은 이 조에서 필요로 하는 선택을 하는 형식과 방법과 환급금을 적격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납세자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결정한다.~~

~~(2) 이 조에 따라 환급금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이 선택 사항에 따라 할당된 환급금을 구체화하고 양도된 환급금의 양도 및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조세국이 지정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보고한다.~~

~~(3) 정부법 제2편 제3부 1편 제3.5장(제11340조로 시작)은 (1)과 (2)목에 따라 지방조세국이 마련하거나 발행한 표준, 기준,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지방조세국은 이 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양도의 처리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조의 목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예를 들어 납세자의 적격 수탁자는 (b)항의 (3)목에 명시된 날짜에 동일한 통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는다.~~

~~(f) (1) 납세자와 적격 수탁자는 이 조에 따라 양도된 적격 환급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인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과태료 또는 벌금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이 조에 따라 양도된 적격 환급금과 관련하여 지방조세국이 양도 납세자 또는 적격 양도인을 감사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g)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지방조세국은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 법률 분석가, 상하 양원의 관련 규정 위원회에게 이 조의 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적격 납세자의 2010 및 2011 과세 연도의 예상 환급금 사용.~~

~~(2) 이 환급금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사업 활동을 확장하는 것에 미치는 이 조의 영향 분석.~~

~~(3) 주의 세금 수입 손실 예상액.~~

~~(4) 이 보고서는 이 조에 포함된 모든 환급금을 다루지만 연구 및 개발, 경제 인센티브 영역, 저소득 가구 등과 관련된 환급금에 초점을 맞춘다.~~

제8조. 세입과세법 제2441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4416. 제24416.1, 24416.2, 24416.4, 24416.5, 24416.6, 24416.7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4341조에 따른 순 수입을 계산할 때 순 운영 손실 공제가 가능하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세입법 제172조에 따라 결정된다.

(a) (1)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한 순 운영 손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순 운영 손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는다.

(b) (1) (2)목과 (3)목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금액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2)조의 규정을 수정하여 과세 연도에 대한 순 운영 손실금액의 대항 비율이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의 목적에 따른 해당 비율은 다음과 같다.

(A)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50퍼센트.

(B) 2000년 1월 1일 이후와 2002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55퍼센트.

(C) 2002년 1월 1일 이후와 2004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60퍼센트.

(D)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100퍼센트.

(2) 1994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과세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처음 3년의 과세 연도에 발생한 각 손실에 다음이 각각 적용된다.

(A) 순 운영 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 손실과 같거나 적을 경우, 순 운영 손실의 100퍼센트은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B) 순 운영 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 손실보다 클 경우, 순 운영 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 신규 사업의 순 손실과 같은 금액은, 이 금액의 100퍼센트가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ii) 신규 사업의 순 손실을 초과하는 순 운영 손실의 부분은, 이 금액의 해당 비율이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C) 내국세입법 제172(b)(2)조의 목적에 따라 (B)호의 (ii)항목에 설명된 금액은 (B)호의 (i)항목에 설명된 금액으로 통합된다.

(3) 1994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과세 연도에 적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의 경우, 다음의 각각이 적용된다.

(A) 순 운영 손실이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과 같거나 적을 경우, 순 운영 손실의 100퍼센트는 (e)항 (1)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과세 연도로 이월된다.

(B) 순 운영 손실이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보다 클 경우, 순 운영 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과 같은 금액은, 이 금액의 100퍼센트가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ii) 적격 소규모 사업의 순 손실을 초과하는 순 운영 손실의 부분은, 이 금액의 해당 비율이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된다.

(C) 내국세입법 제172(b)(2)조의 목적에 따라 (B)호의 (ii)항목에 설명된 금액은 (B)호의 (i)항목에 설명된 금액으로 통합된다.

(4) 1994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과세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가 이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 또는 적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을 한지 처음 3년의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신규 업체로 대우한다.

(5)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 연도에 순 운영 손실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나 이상의 사업체가 이 조에 따른 신규 사업 또는 적격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 목 (B)호의 (i)항목을 적용한 후 순 운영 손실에서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목이 우선 적용되며, 순 운영 손실의 나머지 부분이 전체 순 운영 손실을 구성하므로 순 운영 손실의 나머지 부분에 (3)목이 적용된다.

(6)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순 손실" 이란 내국세입법 제465조 및 469조를 적용한 후 순 손실을 의미한다.

(c) 납세자가 제25110조에 따라 워터스 에지 선거의 영향을 받는 회계 연도에 제25110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대해 워터스 에지 선거가 효력을 개시한 경우, 통합된 보고서에서 소득과 분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제휴 기업의 소득과 요소를 고려하여 순 운영 손실 이월을 결정한 범위에 한해 순 운영 손실 이월의 공제가 거부된다.

(d) 순 운영 손실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d) 순 운영 손실 환급 및 이월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조와 손실이 이월된 연도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순 운영 손실 환급은 2011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 연도에 대한 운영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2)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은 여기에 제공된 기간을 대신하여 이전의 과세 연도 2년에 대해 각각 순 운영 손실 환급이 된다.~~

~~(A) 2011년 1월 1일 이후와 2012년 1월 1일 이전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의 경우, 과세연도의 환급액은 순 운영 손실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B) 2012년 1월 1일 이후와 2013년 1월 1일 이전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의 경우, 과세연도의 환급액은 순 운영 손실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C) 2013년 1월 1일 이전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의 경우, 과세연도의 환급액은 순 운영 손실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2)목에도 불구하고 REIT의 특별 규정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B)조와 기업 주식 감소 이자 손실과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E)조 및 제172(h)조는 다음에 설명한 대로 적용된다.~~

~~(4) 순 운영 손실 환급은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e) (1) (A) 1987년 1월 1일 이후 및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의 순 운영 손실에 대해 순 운영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연도와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A)(ii)조는 (2)목, (3)목, (4)목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 대신 "5년의 과세 연도" 로 대체되도록 수정한다.

(B) 2000년 1월 1일 이후 및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소득 연도의 순 운영 손실에 대해 순 운영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연도와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A)(ii)조는 "20년의 과세 연도" 대신 "10년의 과세 연도" 로 대체되도록 수정한다.

(2) 200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소득 연도의 경우, "신규 사업" 의 경우, (1)목의 "5년의 과세 연도" 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8년의 과세 연도" .

(B) 신규 사업의 두 번째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7년의 과세 연도" .

(C) 신규 사업의 세 번째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6년의 과세 연도" .

(3) 제24416.3조에 의해 공제가 거절된 순 운영 손실의 이월의 경우, 이 항에 명시된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A) 1991년부터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1년씩.

(B) 1991년 1월 1일부터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해 2년씩.

(4) 1987년 1월 1일 이후,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경우 손실 연도 이후 10년의 각 과세 연도로 순 운영 손실 이월이 된다.

(A) 제11편 또는 유사한 경우의 법원 관할권에 따라 1994년 1월 1일 이전의 유사한 경우. 전술한 조항에서 제공된 손실 이월은 기업이 제11편 또는 유사한 경우의 법원 관할권에 따르지 않는 과세 연도 이후 소득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내국세입법 제368(a)(1)(G)조에 따른 면세 개편의 자격을 갖춘 거래로 발생한 자산의 수령.

(f) 이 조의 목적:

(1) "적격 소규모 사업" 이란 소득 연도에 수익과 공제를 제외한 백 만 달러($1,000,000)보다 적은 총 매출을 올린 업체를 의미한다.

(2) (g)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 이란 199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개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3) "제11편 또는 유사한 경우" 란 내국세입법 제368(a)(3)조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파트너십 또는 "S 법인" 이 실시하는 업무 활동의 경우, 해당 파트너십 또는 "S 법인" 에는 (1) 및 (2)목이 적용된다.

(g)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사업 활동이 (e)항 (2)목에 따라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제23101조가 의미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존 사업체(법인 형태와 관계 없음)의 자산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 또는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인수 자산(부동산, 직원, 유형 및 무형의 자산 포함)의 공정 시장 가치가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총 자산의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목의 목적으로만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 취득한 자산과 총 자산의 상대적인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취득한 사업 자산을 업무 활동에서 처음 사용한 최초 과세 연도의 첫 번째 날에 한다.

(B) 이전자가 취득한 내국세입법의 제1221(1)조에 설명된 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인수하는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내국세입법 제1221(1)조에 설명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사업에서 취득한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납세자(또는 관련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나 이상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36개월 이내("사전 사업 활동")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나 이상의 사업에 참여했으며 그 후 추가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한 경우, 추가 사업 활동이 현재 또는 이전 업무 활동이 분류된 것과 미국 행정관리 예산국이 발행한 1987편 표준 산업 분류(SIC) 매뉴얼의 부문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납세자(또는 관련자)의 경우에만 신규 사업으로 처리된다.

(3) 모든 관련자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사업 활동에 참여하며 1993년 12월 31일 이후((1)목에 설명된 매입 또는 기타 인수 제외) 캘리포니아 주(제23101조의 의미)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사업 활동은 (e)항 (2)목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처리된다.

(4) 사업 활동의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 양식이 변경된 경우 양식의 변화는 무시되며 사업 활동의 신규 여부는 이 항의 (1)목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기존의 사업의 자산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 또는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결정한다.

(5) "관련자" 란 내국세입법 제267조 또는 제318조에 따라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6) "취득" 에는 대가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가 포함된다.

(7) (A)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세 연도의 경우, "신규 사업" 에는 미국 행정관리 예산국이 발행한 1987편 표준 산업 분류(SIC) 매뉴얼을 포함하여 법안 2833 - 2836에 설명된 생물 약제학적 활동 또는 기타 생물기술 활동에 참여하며 미국 식약청 으로부터 제품에 대해 규정 승인을 받지 않은 납세가 포함된다.

(B) 이 목의 목적:

(i) "생물약제학적 활동" 이란 인간 또는 동물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제약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기물에서 파생된 유기물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생물 제약학적 활동은 상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살아 있는 유기물을 사용하지만 제약 활동은 화학 합성물을 사용하여 상용 제품을 생산한다.

(ii) "기타 생물 공학 활동" 이란 상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는 활동과 약 납품 속도, 기간, 장소에 대한 통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약 납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h) 총 소득이 제17장(제25101조로 시작)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기업을 위해 제25108조가 다음 각각에 적용된다.

(1) 과세 연도에 발생한 순 운영 손실 금액은 다른 과세 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2) 과세 연도에 공제 가능한 손실 이월 금액.

(i) 상업 은행의 대손상각비와 관련된 내국세입법 제172(b)(1)(D)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j) 지방조세국은 분할, 폐각 회사, 파트너십, 계층적 소유 구조 등을 통해 이 조의 목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조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지시할 수 있다.

(k) 지방조세국은 이 조의 목적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 후 (b)항의 (1)목에 따라 순 운영 손실 이월로서 (b)항의 (2) 또는 (3)목 중 하나에 따라 결정된 순 운영 손실 이월을 재분류할 수 있다.

(*l*)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법령 제107장에 의한 수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대한 순 운영 손실에 적용된다.

제9조. 세입과세법 제24416.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4416.9. (a) 이 법령의 제24416, 24416.1, 24416.2, 24416.4, 24416.5, 24416.6, 24416.7조와 내국세입법 제172조에도 불구하고2008년 1월 1일 이후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순 운영 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 (a)항에 의해 공제가 거부된 순 운영 손실의 순 운영 손실 또는 이월의 경우, 내국세입법 제172조에 의한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와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년씩.

(2)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2년씩.

~~(c) (a)항에도 불구하고 순 운영 손실 공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세 연도에 속하는 순 운영 손실에 대한 환급을 허용한다.~~

~~(d)~~ *(c)* 이 조의 조항은 해당 과세 연도의 이 편에 따른 세금의 영향을 받는 소득이 50만 달러($500,000)보다 적은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세입과세법 제24416.10조는 다음과 철회된다.

~~24416.10. 제24416.1, 24416.2, 24416.4, 24416.5, 24416.6 또는 24416.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귀속되는 순 운영 손실은 손실 연도 다음의 20년 동안 배년 과세 연도로 순 운영 이월이 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귀속되는 순 운영 손실은 손실 과세 연도 이전의 2년의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순 운영 손실 환급이 된다.~~

제11조. 세입과세법 제25128.5조는 다음과 철회된다.

~~25128.5. (a) 제38006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세 연도에 제 25128조 (b)항에 설명된 지출 승인 사업 이외의 모든 지출 승인 사업은 제25128조가 아니라 이 조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지방조세국이 지시한 방식과 형식으로 원래 기간에 접수한 수익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 연례 선택을 할 수 있다.~~

~~(b) 제38006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a)항에 설명된 선택을 하는 분배 사업체의 모든 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에 배출을 곱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제공된다.~~

~~(c) 지방조세국은 이 조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만들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제25113조에 따라 선택하기 위한 규칙에 따른 규정이 포함된다.~~

제12조. 가분성

이 법안의 조항 또는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성이 위헌이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사실은 이 법안을 나머지 조항이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법안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3조. 대립하는 발의안

이 법안과 이러한 세금 조항과 관련된 다른 법안이 동일한 투표 용지에 기재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이 이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 이 법안의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법안들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발의안 제25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조를 수정하므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의 규정은 ~~삭선 형식~~으로 인쇄되며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안은 “2010년 정시 예산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을 확인하며 밝힌다.

1. 20년 이상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6월 15일에 예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수 년 동안 주의회는 2008년 8월까지 예산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예산법은 3개월 이상 늦은 9월 16일에 통과되었다.

2. 뒤늦은 예산 통과는 개별적인 캘리포니아 주민과 사업체에 갑작스럽고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개인과 가족들은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사업체는 주에 제공한 서비스 대금을 늦게 받았다.

3. 주의회가 예산을 제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정당 대표들은 주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2/3 찬성이라는 요건을 이용하여 예산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정치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특별 사용권을 활용했다.

4. 캘리포니아 주, 로드 아일랜드 주, 아칸사 주는 주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2/3의 찬성이 필요한 유일한 주이다.

5. 주의회가 예산을 제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한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개별적인 입법가에게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을 제시간에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유권자들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의회가 주 예산을 제시간에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입법가가 예산을 제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급여 지급이나 생활비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안은 예산이 지연되는 일 수만큼 급여나 경비를 영구적으로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의도와 목적.

1. 이 법안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의회 투표를 2/3 찬성에서 과반수로 변경하고 주의회가 예산을 제시간에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입법가의 급여를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지연을 단절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법안은 발의안 제13호 재산세 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주의회가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2/3의 찬성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4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V절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a) 주지사는 매년 연초에 10일 이내에 주의 권장 지출과 주 예상 수익에 대한 상세 설명이 포함된 회계 연도의 예산을 설명서와 함께 주의회에 제출한다. 권장 지출이 예상 수익을 초과할 경우 주지사는 추가 수익을 충당할 방안을 추천해야 한다.

(b) 주지사와 주지사 선출을 위해서 주 기관, 공직자 또는 직원은 예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1) 예산은 권장 예산을 세분화한 예산 법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 예산 법안은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 회장이 상하 양원에게 즉시 소개한다.

(3) 주의회는 매년 6월 15일 자정까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다.

(4) 예산 법안이 입법화될 때까지 주의회는 예산 법안이 통과될 회계 연도에 지출을 위한 자금의 지출 승인을 하는 법안을 고려하도록 주지사에게 발송되지 않으며 주지사가 권장한 비상 법안 또는 주의회의 급여 및 경비를 위한 지출 승인은 제외된다.

(d) 예산 법안을 제외한 어떠한 법안에도 한 가지 이상의 지출 승인을 포함할 수 없다. 공립학교를 위한 지출 승인을 제외한 주 일반 기금에서의 지출 승인과 *예산 법안의 지출 승인 및 예산 법안과 관련된 지출 승인을 위해 제공되는 기타 법안*은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2/3의 상하 양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된다.

(e) (1) 다른 법률 조항 또는 이 헌법에도 불구하고 예산 법안과 관련된 지출 승인을 위해 제공되는 예산 법안 및 기타 법안은 의사록에 기재되는 호명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할 수 있으며 주지사가 서명한 직후 또는 입법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개시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의 (d)항과 이 절의 제8조 (b)항에 포함된 공립학교를 위한 지출승인의 투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예산 법안과 관련된 지출 승인을 위해 제공되는 기타 법안"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예산 법안의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법안으로 구성된다.

~~(e)~~ *(f)* 주의회는 예산의 제출, 승인, 집행을 비롯하여 모든 주 기관을 위한 클레임 접수를 관리할 수 있다.

~~(f)~~ *(g)* 2004-05 회계연도 또는 이후 회계연도의 경우 주의회는 해당 회계 연도의 일반 기금에서 지출 승인이 될 예산 법안, 예산 법안 통과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회계 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지출 승인이 된 총 금액, 제XVI절 제20조에 따라 해당 회계 연도에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체된 일반 기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주지사에게 발송할 수 없으며 주지사도 입법화할 수 없다. 일반 기금의 예상 수익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예산 법안에 명시한다.

(h) 이 조의 (c)항, 이 절의 제4조와 제III절의 제4조 및 제 8조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헌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자정까지 주의회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연도에 일반 기간 또는 6월 15일 자정부터 예산 법안이 주지사에게 제출되는 날까지의 특별 기간에 주의회 구성원을 위한 급여, 여행 또는 생활 경비의 환급을 충당하기 위한 현재 예산 또는 미래 예산에서 지출 승인하지 않는다. 이 조에 따라 몰수된 급여 또는 여행이나 생활 경비의 환급은 소급하여 지불한다.

제5조. 가분성.

이 법안의 조항 또는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성이 위헌이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사실은 이 법안을 나머지 조항이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법안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의안 제26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조를 수정하므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의 규정은 ~~삭선 형식~~으로 인쇄되며 새로운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사실 확인 및 선언의 목적.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을 확인하며 밝힌다.

(a) 1978년에 발의안 제13호를 대대적으로 승인한 이후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주의회의 상하 양원이 선출한 구성원의 2/3 이상이 주 세금 인상을 채택하도록 했다.

(b) 1996년 발의안 제218호를 입법화한 이후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유권자가 지방세 인상을 승인하도록 했다.

(c)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주 개인 소득세율, 주 및 지방 소비세 및 사용세, 주 및 지방 법인세 등은 항상 높았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를 적용 받고 있다.

(d) 최근에 운전사, 구매자, 모든 소득자 등이 지불할 새로운 세금으로 120억 달러를 추가했다.

(e) 이러한 세율 인상은 주의회 및 지방 정부가 헌법에 의한 투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 납세자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수수료"로 위장한 최근의 현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규정"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 규정의 적절한 비용을 초과한 수수료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과된 수수료 및 인가 또는 허가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수수료는 실제로 세금이며 세금 부과에 해당되는 제한사항을 따라야 한다.

(f) 이 헌법 제한사항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은 주 및 지방을 위한 "세금"을 정의하여 주의회나 지방 정부가 새로운 또는 확장된 세금을 "수수료"로 정의하여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비켜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 A절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a)* ~~이 절의 효력 개시일 이후부터 징수한 세금 수익을 인상하기 위해 통과된 주 세금의 모든 변경 사항은~~ *납세자가 높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주 법령의 변경 사항은* ~~세율 인상 또는 세금 산출 방법의 변경과 같은~~ 주의회의 상하 양원이 선출한 모든 구성원의 2/3이 찬성한 ~~법~~ *법안*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새로운 종가 재산세 또는 재산에 대한 양도세 또는 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b) 이 조에서 사용한 "세금"이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에서 부과한 징수금, 수수료 또는 강제 징수를 의미한다.

(1)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된 특별 혜택 또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으로서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과하거나 특권을 부여하는 적절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세금.

(2)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된 정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으로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세금.

(3) 면허나 허가서 발생, 조사, 검사 및 감사, 농업 마케팅 명령 이행, 행정 집행 및 판결 등과 관련하여 주에 발생하는 적절한 규제 비용으로 부과된 수수료.

(4) 주 소유지 입장 또는 사용, 제XI절 제15조가 관리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 주 소유지의 매입, 임대 또는 대여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

(5) 정부 또는 주의 관할 기관이 법률 위반에 대해 부여한 벌금, 벌칙금 또는 기타 부과금.

(c) 2010년 1월 1일 이후이지만 본 법의 효력 개시일 이전에 채택된 세금으로서 이 조의 요건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법은 해당 세금을 주의회에서 재입법화하거나 이 조의 요건에 따라 주지사가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의 효력이 개시된 지 12개월 후에 무효가 된다.

(d) 징수금, 부과금 또는 기타 강제 징수금은 세금이 아니며 적절한 정부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의무와 공정하고 적절한 관계가 있으며 정부 활동에서 받은 혜택이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 C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a) "일반 세금"이란 정부의 일반적 용도로 부과된 세금을 의미한다.

(b) "지방 정부"란 카운티, 시, 헌장 도시나 카운티를 포함한 시 겸 카운티, 특별 지구 또는 기타 지방 또는 지역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c) "특별 구역"이란 학군과 재개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관을 포함하여 제한된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형성된 주 기관을 의미한다.

(d) "특별세"란 일반 기금에 속하는 특별 용도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특정 용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한다.

(e) 이 절에서 사용한 "세금"이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정부에서 부과한 징수금, 수수료 또는 강제 징수를 의미한다.

(1)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된 특별 혜택 또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 정부 부과금으로서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과하거나 특권을 부여하는 적절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세금.

(2)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된 정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으로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세금.

(3) 면허나 허가서 발생, 조사, 검사 및 감사, 농업 마케팅 명령 이행, 행정 집행 및 판결 등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에 발생하는 적절한 규제 비용으로 부과된 수수료.

(4) 지방 정부 소유지 입장 또는 사용, 지방 정부 소유지의 매입, 임대 또는 대여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

(5)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관할 기관이 법률 위반에 대해 부여한 벌금, 벌칙금 또는 기타 부과금.

(6) 소유지 개발 조건으로서 부과된 부과금.

(7) 제XIII D절의 조항에 따라 부과된 평가 및 재산 관련 수수료.

징수금, 부과금 또는 기타 강제 징수금은 세금이 아니며 적절한 정부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의무와 공정하고 적절한 관계가 있으며 정부 활동에서 받은 혜택이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되는 방식으로 지방 정부가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대립하는 법안.

세금 또는 수수료 입법화를 위해 필요한 주의회 또는 지방 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안과 다른 법안이 동일한 투표 용지에 기재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이 이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 이 법안의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세금 또는 수수료 입법화를 위해 필요한 주의회 또는 지방 투표와 관련된 다른 법안들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제5조. 가분성.

이 법의 어느 조항이나 그 일부가 무효이거나 위헌이 될 경우 나머지 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 법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의안 제27호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8조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이 주민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고 정부법의 조들을 폐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기존의 조항들은 ~~횡선~~을 그어 인쇄하고, 추가가 발의된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제1조. 명칭.

이 법은 "선거구재조정 재정책임법" 또는 "FAIR법"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사실 확인 및 목적.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FAIR법을 제정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우리를 실망시켰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례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주민들(정치인이 아닌)은 부족한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우리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단지 교대로 정치적인 공직을 얻기 위해 다수의 새 관료적 제도를 만드는 데 수백만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단순한 낭비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의하면,

누적 급여가 연간 100만 달러에 달하는 한 그룹의 비선출직 위원들이 주정부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때에도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을 관장한다. 이 개혁은 단지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불필요한 관료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낭비적 지출을 삭감한다. 이 주민 발의 개혁은 이러한 종류의 지출에 영구적인 상한선을 규정하고, 유권자들의 승인없이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 개혁은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것이다.

(b) 현행법에 의하면, 무작위로 선정된 3명의 회계사들이 주민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결정할 권한을 행사하는 관료적 제도를 시행할 14명의 비선출직 위원들을 선정한다. 이 개혁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의 모든 결정에 대해 유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c) 유권자들이 항상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부당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유권자의 권리가 거부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유권자들이 주의회의 결정에 "반대"하고, 유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 주민 발의 개혁은 유권자들이 선거구 재조정 계획(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계획 포함)에 반대할 권리를 항상 보유하고, 정부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일반대중의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d) 1인 1표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표를 10퍼센트 더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거의 백만 명의 주민들을 더 보유할 수 있다. 이것은 공정한 대표권의 행사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역사적으로, 인구가 매우 적은 선거구는 "부패 선거구"라고 불려왔다. 이러한 관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이 개혁은 모든 선거구가 정확하게 같은 규모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표가 동등하게 집계되는 것을 보장한다.

(e) 임명된 무책임한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믿을 수 없다. 지난 번에 비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구 경계를 설정했을 때, 그들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설정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도시들을 분할했다. 이러한 도시의 분할은 지역사회의 파워를 축소한다. 이 개혁은 카운티와 도시를 분할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방지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한데 묶어두어 모든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f) 새크라멘토는 임기가 제한된 현직 정치인이 한 공직에서 최대 임기를 채운 후에 당선이 확실한 다른 공직에 입후보하는 교대로 공직을 차지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주 하원의원들이 주 상원에 입후보할 때 본거지의 이점을 제공하고, 주 상원의원들이 주 하원에 입후보할 때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각 주 상원의원이 2개의 주 하원 의석을 100퍼센트 대표하고, 각 주 하원의원이 한 주 상원 선거구의 50퍼센트를 대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이미 로비스트와 특별이익단체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후원을 받고 있다. 선거구들을 불공정하게 조정하여 새크라멘토의 현직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단체의 헌금을 받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주택소유자 그룹, 소기업, 환경 및 지역사회 활동가 그룹)에게 더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 개혁은 이러한 관행을 종료시킨다.

(g) 유권자를 차별하는 선거구는 끔직한 과거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다. 인종, 계층, 라이프스타일 또는 부에 근거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패한 현행법을 통과시킨 바로 그 지지자들이 또한 "유사한 생활 수준"에 따라 모든 선거구를 분리하고, 선거구에 "유사한 취업 기회"가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완곡한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 "부유층" 선거구 또는 "빈곤층" 선거구로 가르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개혁은 이러한 선거구들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에 대한 개정.

제3.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a) 주민투표는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유권자의 권한이다(긴급한 법률, 선거를 요구하는 법률, 과세 또는 주정부의 일상적인 경상비 지출 승인을 규정하는 법률은 제외). *이러한 예외 조항은 연방하원, 주상원, 주하원 또는 주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경계선이 명시된 최종 지도를 승인하는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주민투표 법안은 가장 최근의 주지사 선거에서 모든 주지사 입후보자가 얻은 득표 수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유권자들이 서명했다는 것이 증명된 청원을 해당 법률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발의할 수 있다. 주의회가 2년 간의 주의회 회기의 2차 역년에 의회를 재소집하기 전에 양원 합동 휴회를 하는 날짜 이전에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의해 발효되었고, 그 날짜 이후에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청원의 사본을 제II절 제10조 (d)항에 따라 1월 1일 이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그 청원이 발효된 다음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c) 그 후 총무처장관은 이 법안을 이 법안이 투표에 대한 자격을 얻은 뒤 최소한 31일 이후에 실시되는 다음 총선거 또는 그 총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주 전체 특별선거에 제출한다. 주지사는 이 법안을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주 전체 특별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에 대한 개정.

제4.1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매 10년이 시작될 때마다 연방의회의의 주도에 따라 전국 인구조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해에, 주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및 과정에 따라~~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는 지도 작성 과정에 따라* ~~연방하원,~~ *연방하원, 주상원, 주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경계선을 조정한다.

(a) 각 ~~연방 하원~~ 의원은 단일 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b) *선거구는 연방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인구는 ~~적절하게 동일~~ *같은 공직의 다른 선거구와 정확하게 동일해야 한다. 인구의 정확한 동일성 유지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한 사람 이상 또는 이하의 인구 차이는 허용된다.* ~~주의회는 이 기준을 따른 후에 제2조 (d)항 (2), (3), (4) 및 (5)목에 기술되었고 우선순위가 결정된 기준에 따라 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 주의회는 최종 지도를 작성한 후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 보고서에 최종 지도 작성에 사용된 용어와 기준의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c)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이후)과 선거구 조정 계획을 채택할 당시에 유효한 모든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d)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

(e) 이해관계가 있는 시, 카운티, 시 겸 카운티, 또는 지역사회의 지리적 통합성은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b)항에 의해 결정된 적절한 인구보다 주민 수가 적은 인접한 시, 카운티, 시 겸 카운티는 인구의 동일성 또는 인접성을 달성하거나, 또는 모든 연방 헌법과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이후)을 포함하는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지 않는다.

~~(c)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f) 같은 공직에 대한 선거구에는 이 주의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남쪽 경계선에서 끝나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d) 주의회는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와 협조하여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대중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주의회는 정부법 제8253조 (a)항 (1), (2), (3), (7)목 및 (b)항, 또는 법률의 승계 조항들의 공청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2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a)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주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대해 새 선거구 경계선을 정한다 ("선거구 재조정"이라고도 함). 이 위원회는 2010년과 그 후에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해야 한다.~~

~~(b)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칭함)~~*주의회는:* (1) 선거구 경계선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일반대중의 의견을 완전히 고려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수행하고, (2) 이 절에 명시된 선거구 재조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경계선을 정하고, ~~그리고~~ (3) 이러한 직무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완전무결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4) 이 절을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b) 주의회는 선거구 재조정을 처리하는 각 회의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지해야 한다. 연방하원, 주상원, 주하원, 또는 주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대한 경계선이 명기된 법안은 최종 형태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통과되기 3일 전에는 수정할 수 없다.

(c) 주의회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와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일반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주의회의 기록과 주의회가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공공기록으로 간주되고, 일반대중이 즉시,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e) 주의회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이후)과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연방과 주의 법적 요건을 시행 및 집행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최소한 1명의 법률고문을 고용해야 한다.

(f) 법률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이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주의회 회기 또는 청문회에서 견해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그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해고한다고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된다.

(g) 주의회는 일반대중의 의견 제시와 검토를 위한 공개 청문회 과정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선거구 재조정 검토 과정에 대한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청문회를 공지하고, 철처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청문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방 인구조사국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10년 단위 인구조사의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일반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 (2) 주의회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일반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 (3) 지도를 작성 및 게시한 후에 일반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 또한 청문회는 일반대중이 검토 과정을 참관하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적절한 다른 활동들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주의회는 제안된 지도를 일반대중이 가장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일반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일반대중의 의견은 지도를 최초로 게시한 날로부터 최소한 14일 동안 청취해야 한다.

(h) 2010년 11월부터 시작되는 2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9로 끝나는 연도에 시작되는 각 3년의 기간 동안, 주의회는 이 절에서 요구하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1) 이백오십만 달러($2,500,000), 또는 (2) 직전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이 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 이하를 지출해야 한다.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각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해, 위의 금액은 이 항에 의한 지출 승인 직전의 날짜 이후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이를 승계하는 지수의 누적 변동치에 따라 조정된다. 이 조항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이 절이 요구하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시행하는 비용에 대해 주의회의 공적 자금 지출에 대한 절대적인 지출 상한선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 (1) 위원의 선정 과정은 주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주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대표하는 주정부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제정해야 한다.~~

~~(2)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한 5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한 5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앞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4명.~~

~~(3) 각 위원회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 같은 정당에 등록했거나 정당에 등록하지 않았고, 위원 임명 날짜 직전의 5년 이상 동안 정당을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이어야 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신청 직전의 마지막 3번의 주 전체 총선거에서 2번 투표를 했어야 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를 승계하는 위원회의 첫 위원을 임명하는 날짜에 종료된다.~~

~~(5) 이 위원회는 9명의 의원이 정족수를 이룬다. 9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 투표를 하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건의 최종 지도는 최소한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한 각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와 이러한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하지 않은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를 포함하는 최소한 9명의 찬성 투표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

~~(6) 각 위원회 위원은 편파적이 아니고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절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이 주에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선출직 공직을 보유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연방, 주 또는 지방의 임명직 공직을 보유하거나, 주의회 또는 개별 의원의 유급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또는 이 주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다.~~

~~(d)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기술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는 지도 작성 과정에 따라 상원, 하원 및 조세형평국에 대한 단일 의원 선거구를 재정한다.~~

~~(1) 선거구는 연방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주상원, 주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는 같은 공직에 대한 다른 선거구와 동일한 적절한 인구를 보유해야 하나,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못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선거구는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이하)을 준수해야 한다.~~

~~(3)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

~~(4) 이해관계가 있는 시, 카운티, 시 겸 카운티, 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지리적 통일성은 전술한 항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까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에는 정당, 현직 의원 또는 정치 입후보자와의 관계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5)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크리고 위의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선거구 경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인구를 우회하지 않도록 지리적으로 밀집시킬 것을 권장하도록 정해야 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크리고 위의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각 주상원 선거구는 2개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인접한 주하원 선거구로 구성되고, 각 조세형평국 선거구는 10개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인접한 상원 선거구로 구성된다.~~

~~(e) 현직 의원 또는 정치 입후보자의 거주지는 지도 작성에 고려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직 의원, 정치 입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

~~(f) 주상원, 주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 주의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남쪽 경계선에서 끝나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g)~~ *(i)* 2011년과 그 후 1로 끝나는 각 연도의 9월 15일까지, ~~위원회~~ *주의회는 연방하원,* 주상원, 주하원 및 조세형평국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경계선을 별도로 표시한 ~~3~~*4건의* 최종 지도를 ~~승인해야 한다~~ *승인하는 1건 이상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법률은 이 헌법의 제 II절 9조에 따라 주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3건의 승인된 최종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해야 한다.~~

~~(h) 위원회는 3건의 최종 지도와 함께, 위원회가 (d)항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 보고서에 각 최종 지도 작성에 사용된 용어와 기준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i) 인증된 각 최종 지도는 제 II절 9조에 따라 법률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최종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한 날짜는 제 II절 9조의 목적상 제정일로 간주되어야 한다.~~

~~(j) 위원회가 최소한 필수 찬성 투표에 의해 최종 지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에서 인증된 최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즉시 대법원에 (d), (e) 및 (f)항에 기술된 선거구 재조정 기준 및 요건에 따라 그 지도의 경계선을 조정할 특별 재판관의 임명을 지시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 재판관이 조정한 지도를 승인하고, 그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하면 그 지도는 해당 종류의 선거구에 대해 인증된 최종 지도가 된다.~~

제4.3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a) ~~위원회는 인증된 최종 지도에 대한 소송에 대응할 유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공된 자금이나 다른 자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의회에 이를 통지한다. 주의회는 인증된 지도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이나 위원회가 고용한 다른 변호사가 인증된 지도에 대한 변호를 할 것인지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b) (1)~~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인증된~~ 최종 지도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주 사법* 절차에 대해 제1심 관할권과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

~~(2)~~ (b) 이 주에서 ~~주의~~ 등록 등록하는 유권자는, ~~위원회가~~ 최종 지도를 ~~총무처장관에게 인증~~ *제정*한 후 45일 이내에, 제출된 *선거구 재조정* 계획이 이 주의 헌법, 연방 헌법, 또는 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무처장관이 이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효 영장 또는 금지 영장에 대한 청원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 대법원은 (2)항에 의해 제기된 무효 영장 또는 금지 영장에 대한 청원을 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법원이 이 주의 헌법, 연방 헌법, 또는 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최종 지도가 적시에 제정되지 않거나, 또는 대법원이 최종 지도가 이 헌법, 연방 헌법, 또는 어떤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 절의 제1조에 명시된 선거구 재조정 기준 및 요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구제 조치는 주의회가 책임을 수행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제5조. 정부법에 대한 개정.

제5.1조. 정부법 제2권 1편 3.2장(제8251조부터 시작)을 폐지한다.

~~제3.2장.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8251.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일반 조항.~~

~~(a) 이 장은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관리와 위원 선정 과정을 제정하여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XI절을 시행한다.~~

~~(b) 이 장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용어를 정의한다.~~

~~(1) "위원회"란 주정부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날짜"란 역일(calendar day)을 의미하며, 법을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짜로 연기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심사 위원회"란 신청인 심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4) "적격 독립 감사인"이란 현재 캘리포니아 주 회계 위원회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신청인 심사 위원회의 임명을 받기 전에 최소한 10년 간 독립 감사인으로 개업해 온 감사인을 의미한다.~~

~~(c) 주의회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장을 개정할 수 없다.~~

~~(1) 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최종 지도를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같은 위원들의 찬성 투표를 받아 이 장의 개정을 추천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제출하는 개정안의 정확한 문안은 상하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 투표를 하여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3) 위원회가 제출하는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주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10일 전에 인쇄된다.~~

~~(4)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개정안은 0 또는 1로 끝나는 연도에는 주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8252. 주민 선거구 주정부 위원회 선정 과정.~~

~~(a) (1)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월 1일까지, 주정부 감사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개방되는 신청 과정을 다양하고 자격이 있는 신청인 풀(pool)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2) 주정부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이해의 상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신청인 풀에서 제외시킨다.~~

~~(A) 신청인 또는 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신청일 직전의 10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우:~~

~~(i)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직에 임명, 선출되었거나, 또는 입후보한 경우~~

~~(ii) 정당,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의 캠페인 위원회에 간부,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재직한 경우~~

~~(iii) 정당 중앙 위원회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iv)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등록 로비스트로 활동한 경우~~

~~(v) 연방의회, 주의회 또는 조세형평국의 유급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vi) 어떤 연도에 이천 달러(2,000달러) 이상을 연방의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에게 기부한 경우.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가격 지수 또는 이를 승계하는 지수의 누적 변동치에 따라 10년마다 조정해야 한다.~~

~~(B) 주지사, 주의회 의원, 연방의회 의원 또는 주정부 조세형평국 위원의 직원 및 컨설턴트, 그러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직계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없다. 이 항에서 사용된 그러한 사람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란 그 사람이 혈통 또는 법적 관계를 통해서 성립된 성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 주정부 감사인은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들로 구성된 신청인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청인을 선별한다. 주정부 감사인은 주정부가 고용했고 캘리포니아 주 회계 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은 모든 감사인들로 구성된 풀에서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의 이름을 무작위로 추첨한다. 주정부 감사인은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한 1명,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한 1명,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1명을 포함하는 3명의 감사인 이름을 추첨할 때까지 추첨을 계속한다. 주정부 감사인은 추첨을 완료한 후에 이름이 추첨된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에게 그들이 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통지한다.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 중에서 심사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정부 감사인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3명의 적격 독립 감사인들이 심사 위원회 위원이 되기로 동의할 때까지 무작위 추첨을 계속해야 한다. 심사 위원회 위원은 (a)항 (2)목에 기술된 이해의 상충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c) 주정부 감사인은 신청인 풀에서 이해의 상충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킨 후에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8월 1일까지 신청인 풀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하고, 그들의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 심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 신청인 심사 위원회는 신청인 풀에서 60명의 가장 적격인 신청인들을 선정하며, 이러한 신청인들에는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한 20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한 20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20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속 풀은 관련 분석 능력, 공평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다양한 인구 구성과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기준하여 구성된다. 심사 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위원회가 추천 신청인 풀을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정부 조세형평국 위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연방의회 의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지명 과정이나 신청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 신청인 심사 위원회는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0월 1일까지 추천 신청인 풀을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상원 의장 대행, 상원 소수당 원내 총무, 하원 의장 및 하원 소수당 원내 총무는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1월 15일까지 20명으로 구성된 각 부속 풀에서 각각 최대 2명의 신청인을 제외시킬 수 있고, 따라서 각 부속 풀에서 총 8명이 제외될 수 있다. 주의회 지도자들이 제외권을 행사한 후에,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은 나머지 신청인 이름으로 구성된 풀을 주정부 감사인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f) 주정부 감사인은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1월 20일까지 나머지 신청인 풀로부터 8명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무작위로 추첨한다: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3명,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3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이 8명의 개인들은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g) 2010년과 그 후 0으로 끝나는 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8명의 위원들은 신청인 풀에 포함된 나머지 이름들을 심사하여 6명의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임명한다: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최대 정당에 등록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정당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 두 번째 최대 정당에 등록한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등록자 수에 기준한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인 부속 풀에서 2명. 이 6명의 임명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최소한 5명으로부터 찬성 투표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 중 각 정당에 등록한 위원들 중 최소한 2명의 찬성 투표, 그리고 2대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위원들 중 최소한 1명의 찬성 투표. 이 6명의 임명 위원들은 민족, 인종, 지리적 특성 및 성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이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특정한 비율을 적용하려고 의도하지는 않는다. 또한 신청인들은 관련 분석 능력과 공평하게 처리하는 능력에 기준하여 선정된다.~~

~~8252.5.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공석, 해임, 사임, 불참.~~

~~(a) 위원회의 위원이 재임 중에 상당한 직무 태만이나 중대한 부정 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지사는 해당 위원회에게 이와 관련된 통지서를 전달하고 응답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재임 중에 상당한 직무 태만이나 중대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되면 법무장관에게 의뢰하여 형사 기소를 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b) 14명의 위원직에 해임, 사임, 또는 불참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풀을 구성한 연도의 11월 20일 현재 공석이 된 피지명자와 같은 유권자 등록 카테고리에 남아있는 신청인 풀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남아있는 신청인 중에서 아무도 위원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주정부 감사인은 제8252조에 따라 같은 유권자 등록 카테고리에 대해 새 풀을 구성하여 공석을 채워야 한다.~~

~~8253.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기타 조항.~~

~~(a)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회의법(제2권 3편 1부 1장 9절(제11120조부터 시작)), 또는 이를 승계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원회는 각 회의에 대해 최소한 14일 전에 공지해야 하나, 1로 끝나는 연도의 9월에 열리는 회의는 예외로서, 3일 전에 공지하고 회의를 열 수 있다.~~

~~(2)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과 위원회가 검토하는 모든 자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는 공공기록이다.~~

~~(3)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들은 공청회 외부에서 어떤 사람과도 선거구 재조정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수하지 않는다. 이 절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가 고용하는 직원, 변호사, 컨설턴트 사이에 공청회 외부에서 Bagley-Keene 공개회의법 또는 이를 승계하는 법률이 달리 허용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4)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XXI 절 2조 (c)항 (5)목에 규정된 투표 과정에 의해 위원 중 1명을 의장으로, 다른 1명을 부의장으로 선임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정당이 달라야 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 직원, 변호사 및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들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통신 프로토콜, 행동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원을 고용할 때 제8252조 (a)항 (2)목에 열거된 이해의 상충을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 총무처장관은 위원회의 직원과 사무실이 완전히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지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가 고용하는 개인들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VII절의 공무원 요건이 면제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고용하는 변호사들 중 최소한 1명이 1965년 연방 투표권법(42 U.S.C. 제1971조 이후)의 시행 및 집행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원, 변호사 및 컨설턴트의 채용, 해고 또는 계약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캘리포니아 주의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한 각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와 이러한 2대 정당 중 하나에 등록하지 않은 3명의 위원의 찬성 투표를 포함하는 9명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어야 한다.~~

~~(6)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고용인의 출석 또는 예정된 출석을 이유로 그 고용인에 대해 해고, 해고한다는 위협, 협박, 강요 또는 보복을 해서는 안된다.~~

~~(7) 위원회는 일반대중의 의견 제시 및 검토를 위한 공청회 과정을 제정 및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공청회 과정은 공지 요건의 적용을 받고 선거구 재조정 검토 과정에 대한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권유하는 철저한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해야 한다. 공청회 과정에는 위원회가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일반대중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위원회 지도의 작성 및 게시 이후에 열리는 공청회가 포함된다. 또한 공청회는 일반대중이 검토 과정을 참관하고 참여할 기회를 더욱 증가시키기에 적합한 다른 활동들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지도를 가장 광범위한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일반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일반대중의 의견은 지도를 공공 장소에 게시한 날짜로부터 최소한 14일 간 청취해야 한다.~~

~~(b) 주의회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컴퓨터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지도 작성을 위한 선거구 재조정 데이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일반대중이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의회는 위원회를 설립한 후 해체할 때까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협조해야 한다.~~

~~8253.5.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보수.~~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각 날에 대해 삼백 달러($300)의 요율로 보수를 받는다. 이후의 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수의 요율을 9로 끝나는 각 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가격 지수 또는 이를 승계하는 지수의 누적 변동치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와 신청인 심사 위원회 위원들은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 경비를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의 거주지는 경비 상환 목적상 위원의 직무 수행 장소로 간주된다.~~

~~8253.6.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재정 감독.~~

~~(a) 2009년과 그 후 9로 끝나는 각 연도에,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V절 제12조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하는 주지사 예산에 주정부 감사인, 주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총무처장관에게 제공되는 자금의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금액은 각 관련 공무원 또는 조직체가 이 법이 요구하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이러한 과정에 대한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권유하는 주 전체 현장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3년 간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또한 주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의회는 예산법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이러한 예산은 전체 3년의 기간 동안 책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산에는 삼백만 달러(3,000,000 달러)와 이 항에 따라 즉시 진행되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지출되는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고, 이 항에 따라 직전에 예산을 책정한 날짜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가격 지수 또는 이를 승계하는 지수의 누적 변동치에 따라 이러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주의회는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연도에 대해 추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b) 재무부로부터 재정 감독을 받는 이 위원회는 구매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VII절의 공무원 요건이 면제되는 직원과 컨설턴트(법률 대리 포함)를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상충되는 투표 법안.

(a) 주상원, 주하원, 연방하원 또는 조세형평국 선거구의 재조정과 관련된 이 법안과 다른 법안(들)이 같은 선거에서 과반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법안이 그러한 다른 법안(들)보다 더 많은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법안(들)은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이 과반수 유권자의 찬성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다른 법안(들)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법안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b) 이 법안의 조항들이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고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은 다른 상충되는 법안의 조항들에 의해 폐지되고, 이러한 상충되는 법안이 차후에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이 법안의 조항들은 자동으로 발효되고 법률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 가분성.

이 법은 분리가 가능하다.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무효성이 그러한 무효 조항 또는 적용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총무처장관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에 대해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대형 활자체 또는 오디오 카세트 버전을 주문하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vig_altformats.htm*을 방문하거나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MP3 버전을 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audio*를 방문하십시오.

투표소 위치 확인

투표소의 위치는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이 조정합니다. 투표소 리스트는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 책자의 뒷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는 웹사이트와 무료 전화번호를 통해서 투표소 위치 확인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총무처장관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d.htm*을 방문하거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유권자의 이름이 투표소에 비치된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 내의 모든 투표소에서 잠정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정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은 유권자를 위한 투표용지입니다.

-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확신하나 공식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유권자
- 공식 유권자 등록 리스트에 정당 가입 항목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유권자, 또는
- 우편투표 유권자이나, 우편투표용지를 찾을 수 없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

잠정투표용지는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이 해당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고 같은 선거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집계됩니다. 선거관리인은 잠정투표용지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집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2010년 10월 18일 이후에 새 주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을 얻으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선거일에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하십시오.

선거관리인은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는 것 이외에도 선거일에 제공하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외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선거관리인(poll worker)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권자, 또는
- 다음과 같은 고등학교 학생:
  - 미국 시민권자
  - 봉사하는 날에 16세 이상 된 학생
  - 평균 성적(GPA)이 2.5 이상인 학생, 그리고
  - 품행이 방정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학생

선거 관리인이 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주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서에 적절히 통지하고, 감독자가 그러한 신청을 승인하면 직장을 결근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관리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

유권자 등록은 간단하고 무료입니다. 등록 양식은 *www.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정부 사무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실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또는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여 등록 양식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겸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하고,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 아니어야 하며,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입니다. 유권자가 집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편 주소를 변경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참고: 2010년 10월 18일 이후에 새 주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ALAMEDA COUNTY
1225 Fallon Street, Room G-1
Oakland, CA 94612
(510) 272-6933 또는 (510) 272-6973
www.acgov.org/rov

ALPINE COUNTY
99 Water Street
P.O. Box 158
Markleeville, CA 96120
(530) 694-2281
www.alpinecountyca.gov

AMADOR COUNTY
810 Court Street
Jackson, CA 95642
(209) 223-6465
www.co.amador.ca.us/index.aspx?page=77

BUTTE COUNTY
25 County Center Drive, Suite 110
Oroville, CA 95965
(530) 538-7761
http://clerk-recorder.buttecounty.net

CALAVERAS COUNTY
891 Mountain Ranch Road
San Andreas, CA 95249
(209) 754-6376
www.co.calaveras.ca.us

COLUSA COUNTY
546 Jay Street, Suite 200
Colusa, CA 95932
(530) 458-0500
www.colusacountyclerk.com

CONTRA COSTA COUNTY
555 Escobar Street
P.O. Box 271
Martinez, CA 94553
(925) 335-7800
www.cocovote.us

DEL NORTE COUNTY
981 H Street, Suite 160
Crescent City, CA 95531
(707) 465-0383
www.dnco.org

EL DORADO COUNTY
2850 Fairlane Court
P.O. Box 678001
Placerville, CA 95667
(530) 621-7480 또는 (800) 730-4322
www.edcgov.us/elections

FRESNO COUNTY
2221 Kern Street
Fresno, CA 93722
(559) 600-VOTE
www.co.fresno.ca.us/elections

GLENN COUNTY
516 W. Sycamore Street, 2nd Floor
Willows, CA 95988
(530) 934-6414
www.countyofglenn.net/elections

HUMBOLDT COUNTY
3033 H Street, Room 20
Eureka, CA 95501
(707) 445-7678 또는 (707) 445-7481
www.co.humboldt.ca.us/election

IMPERIAL COUNTY
940 Main Street, Suite 202
El Centro, CA 92251
(760) 482-4226 또는 (760) 482-4201
www.co.imperial.ca.us

INYO COUNTY
168 N. Edwards Street
P.O. Drawer F
Independence, CA 93526
(760) 878-0224
www.inyocounty.us/Recorder/Clerk-Recorder.html

KERN COUNTY
1115 Truxtun Avenue, 1st Floor
Bakersfield, CA 93301
(661) 868-3590 또는 (800) 452-8683
www.co.kern.ca.us/elections/

KINGS COUNTY
1400 W. Lacey Blvd.
Hanford, CA 93230
(559) 582-3211 ext. 4401
www.countyofkings.com

LAKE COUNTY
255 N. Forbes Street, Room 209
Lakeport, CA 95453-4748
(707) 263-2372
www.co.lake.ca.us

LASSEN COUNTY
220 S. Lassen Street, Suite 5
Susanville, CA 96130
(530) 251-8217
http://www.lassencounty.org/govt/dept/county_clerk/registrar/Elections.asp

LOS ANGELES COUNTY
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8350
(800) 481-8683 또는 (562) 466-1310
www.lavote.net

MADERA COUNTY
200 W. 4th Street
Madera, CA 93637
(559) 675-7720
www.madera-county.com

MARIN COUNTY
3501 Civic Center Drive, Room 121
San Rafael, CA 94903
P.O. Box E
San Rafael, CA 94913
(415) 499-6456
www.marinvotes.org

MARIPOSA COUNTY
4982 10th Street
P.O. Box 247
Mariposa, CA 95338
(209) 966-2007
www.mariposacounty.org/index.aspx?nid=87

MENDOCINO COUNTY
501 Low Gap Road, Room 1020
Ukiah, CA 95482
(707) 463-4371 또는 (707) 463-4372
www.co.mendocino.ca.us

MERCED COUNTY
2222 M Street, Room 14
Merced, CA 95340
(209) 385-7541
www.mercedelections.org

MODOC COUNTY
204 S. Court Street
Alturas, CA 96101
(530) 233-6205

MONO COUNTY
74 School Street, Annex I
P.O. Box 237
Bridgeport, CA 93517
(760) 932-5537 또는 (760) 932-5534
www.monocounty.ca.gov

MONTEREY COUNTY
1370 B South Main Street
Salinas, CA 93901
(831) 796-1499 또는 (866) 887-9274
www.montereycountyelections.us

NAPA COUNTY
900 Coombs Street, #256
Napa, CA 94559
(707) 253-4321 또는 (707) 253-4374
www.countyofnapa.org

NEVADA COUNTY
950 Maidu Avenue
Nevada City, CA 95959
(530) 265-1298
www.mynevadacounty.com/elections

ORANGE COUNTY
1300 S.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
P.O. Box 11298
Santa Ana, CA 92711
(714) 567-7606
www.ocvote.com

PLACER COUNTY
2956 Richardson Drive
P.O. Box 5278
Auburn, CA 95603
(530) 886-5650 또는 (800) 824-8683
www.placerelections.com

PLUMAS COUNTY
520 Main Street, Room 102
Quincy, CA 95971
(530) 283-6256 또는 (530) 283-6129
www.countyofplumas.com

RIVERSIDE COUNTY
2724 Gateway Drive
Riverside, CA 92507
(951) 486-7200 또는
(800) 773-VOTE (8683)
www.voteinfo.net

SACRAMENTO COUNTY
7000 65th Street, Suite A
Sacramento, CA 95823
(916) 875-6451
www.elections.saccounty.net

SAN BENITO COUNTY
440 Fifth Street, Room 206
Hollister, CA 95023-3843
(831) 636-4016
www.sbcvote.us

SAN BERNARDINO COUNTY
777 E. Rialto Avenue
San Bernardino, CA 92415-0770
(909) 387-8300 또는 (800) 881-8683
www.sbcrov.com

SAN DIEGO COUNTY
5201 Ruffin Road, Suite I
San Diego, CA 92123
P.O. Box 85656
San Diego, CA 92186
(858) 565-5800
www.sdvote.com

SAN FRANCISCO COUNTY
City Hall
1 Dr. Carlton B. Goodlett Place #48
San Francisco, CA 94102
(415) 554-4375
www.sfelections.org

SAN JOAQUIN COUNTY
44 N. San Joaquin Street, Suite 350
Stockton, CA 95209
P.O. Box 810
Stockton, CA 95201
(209) 468-2885 또는 (209) 468-2890
www.sjcrov.org

SAN LUIS OBISPO COUNTY
1055 Monterey Street, D120
San Luis Obispo, CA 93408
(805) 781-5228 또는 (805) 781-5080
www.slocounty.ca.gov/clerk

SAN MATEO COUNTY
40 Tower Road
San Mateo, CA 94402
(650) 312-5222
www.shapethefuture.org

SANTA BARBARA COUNTY
4440-A Calle Real
P.O. Box 61510
Santa Barbara, CA 93160-1510
(800) SBC-VOTE 또는
(805) 568-2200
www.sbcvote.com

SANTA CLARA COUNTY
1555 Berger Drive, Bldg. 2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
(408) 282-3005
www.sccvote.org

SANTA CRUZ COUNTY
701 Ocean Street, Room 210
Santa Cruz, CA 95060
(831) 454-2060
www.votescount.com

SHASTA COUNTY
1643 Market Street
Redding, CA 96001
P.O. Box 990880
Redding, CA 96099-0880
(530) 225-5730
www.elections.co.shasta.ca.us

SIERRA COUNTY
100 Courthouse Square, Room 111
P.O. Drawer D
Downieville, CA 95936
(530) 289-3295
www.sierracounty.ws

SISKIYOU COUNTY
510 N. Main Street
Yreka, CA 96097
(530) 842-8084
www.co.siskiyou.ca.us

SOLANO COUNTY
675 Texas Street, Suite 2600
Fairfield, CA 94533
(707) 784-6675
www.solanocounty.com/depts/rov/

SONOMA COUNTY
435 Fiscal Drive
Santa Rosa, CA 95403
P.O. Box 11485
Santa Rosa, CA 95406-1485
(707) 565-6800 또는 (800) 750-VOTE
www.sonoma-county.org/regvoter

STANISLAUS COUNTY
1021 I Street
Modesto, CA 95354
(209) 525-5200 or
(209) 525-5230 (스페인어)
www.stanvote.com

SUTTER COUNTY
1435 Veterans Memorial Circle
Yuba City, CA 95993
(530) 822-7122
www.suttercounty.org/elections

TEHAMA COUNTY
444 Oak Street, Room C
P.O. Box 250
Red Bluff, CA 96080
(530) 527-8190 또는 (866) 289-5307
www.co.tehama.ca.us

TRINITY COUNTY
11 Court Street
P.O. Box 1215
Weaverville, CA 96093
(530) 623-1220
www.trinitycounty.org

TULARE COUNTY
5951 S. Mooney Blvd.
Visalia, CA 93277
(559) 624-7300
www.tularecoelections.org

TUOLUMNE COUNTY
2 South Green Street
Sonora, CA 95370
(209) 533-5552
www.tuolumnecounty.ca.gov

VENTURA COUNTY
800 S. Victoria Avenue
Ventura, CA 93009-1200
(805) 654-2700
recorder.countyofventura.org/elections.htm

YOLO COUNTY
625 Court Street, Room B05
Woodland, CA 95695
P.O. Box 1820
Woodland, CA 95776
(530) 666-8133 또는 (800) 649-9943
www.yoloelections.org

YUBA COUNTY
915 8th Street, Suite 107
Marysville, CA 95901-5273
(530) 749-7855
http://elections.co.yuba.ca.us

우편투표

우편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우편으로 발송
2. 선거일에 카운티 내에 있는 투표소나 선거 관리 사무소로 직접 제출, 또는
3. 법으로 허용되는 제3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자매, 또는 본인과 같은 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카운티 내에 있는 투표소나 선거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위임

우편투표용지는 제출하는 방법에 상관 없이 *반드시 선거일에 투표소를 폐장하는 시간(오후 8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한 우편투표용지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모든 우편투표용지는 집계되고 공식 선거 결과에 포함됩니다. 선거 관리 담당관은 이러한 확인 과정을 28일("공식 확인" 기간이라고 함)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선거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를 위한 특별 투표 절차

연방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특별 부재자투표 절차를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특별 부재 유권자"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현역 군인(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 또는 기타 제복 착용 공무원
- 군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상선 선원, 또는
-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 미국 시민권자

해당되는 사람은 *www.fvap.gov*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특별 부재자 투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 부재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ov.htm*을 방문하십시오.

특별 부재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팩스로 보내는 경우에는 비밀투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유권자 선서(Oath of Voter)" 양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8시(태평양 표준시)에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이 접수해야 합니다. 우체국 소인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선거일 전 7일 이내에 군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소집된 카운티의 선거관리 사무소로 가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58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d.htm*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

1. 유효한 등록 유권자는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 유권자란 이 주의 주민이고,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니며, 현재의 거주지 주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2. 유권자의 이름이 투표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유권자는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투표소에 와서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유권자는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잘못 표시한 투표용지를 새 투표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재(우편) 투표자들도 잘못 표시한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를 폐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반납하면 새 투표용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권자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투표에 대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유권자는 작성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카운티의 모든 선거구로 반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에 제작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주민이 있는 경우, 선거 자료를 다른 언어로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선거 절차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거나,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담당관을 소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 때문에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위원회나 선거 관리 담당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10. 유권자는 불법 또는 사기 행위를 지역 선거 관리 담당관이나 총무처장관에게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선거 사기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 주십시오.

선거 관리 담당관은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하여 투표소의 위치와 투표용지에 기재될 쟁점 및 입후보자 같은 투표 과정에 대한 공식 정보를 유권자에게 보냅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유권자 정보는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따라 선거, 학술, 언론, 정치 또는 정부와 관련된 목적으로 공직 입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번호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유권자의 서명은 이러한 목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정보를 악용한다고 의심되어 신고하기를 원하시면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특정한 유권자들은 비밀 유권자 신분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총무처장관의 Safe at Home (가정 안전) 프로그램에 연락하거나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NONPROFIT
U.S. POSTAGE
PAID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IAL ELECTION MAIL
Authorized by the U.S. Postal Service ®

캘리포니아 주

총선거

www.voterguide.sos.ca.gov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잊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유권자 등록 최종일.

다음의 언어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해당 카운티의 선거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거나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English	(800) 345-VOTE (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日本語 **/Japanese**	(800) 339-2865
Việt ngữ **/Vietnamese**	(800) 339-8163
Tagalog	(800) 339-2957
中文**/Chinese**	(800) 339-2857
한국어**/Korean**	(866) 575-1558
TDD	(800) 833-8683

주정부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각 가구에 이 안내서를 한 부만 우편으로 보냅니다.

OSP 10 119708